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10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김원홍(")

통 일 연 구 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2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내용	3
나. 연구방법	3
II. 남북연합 추진배경	10
1. 남북연합의 의미와 방향	10
가. 남북연합의 의미	10
나. 남북연합 추진의 방향	12
2. 남북연합 추진체계 및 기능	14
가. 남북정상회의	14
나. 남북각료회의	15
다. 남북국회회의	16
라. 공동사무처	16
III. 성 관점(Gender-based)의 정책과 남북연합	18
1. 성 관점과 여성발전전략	18
가. 여성주의적 관점(Women in Development : WID)	19
나. 성인지적 관점(Gender and Development : GAD)	19
다.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	20
2. 남북연합추진과 성 관점의 여성정책 필요성	20

IV. 남북연합 추진과 여성참여	22
1. 남북한 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22
2. 남한여성의 역량 강화와 통일의식교육	31
가. 남한여성의 역량 강화	31
나. 통일의식교육	36
3. 여성평화운동	44
4. 독일과 남북예멘 사례를 통해 본 여성참여의 중요성	51
가. 독일	51
나. 남북예멘	52
V. 남북한 여성조직과 정책	56
1. 남북한 여성관련 조직	56
가. 남한의 여성관련 조직	56
나. 북한의 여성관련 조직	63
2. 남북한의 사회 및 여성정책 비교	70
가. 남북한의 사회상황 비교	70
나. 영역별 남북한 여성정책의 비교	76
V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1
1. 남북연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111
가. 남북연합단계의 성사가능성	111
나. 남북연합의 시기	111
다. 남북연합구조인 정상회담, 각료회의, 국회의원회의 및 공동사무처에 여성참여비율	112
라. 남북연합 추진과정에서 상정되는 통일국가의 체제	112
마. 남북연합과정에서 남북한간 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때의 장단점	113

바. 남북연합 추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일	114
사. 외국의 사례에서 여성의 참여 및 역할에 대한 시사점	115
2. 남북연합과 여성의 역할	115
가.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116
나. 남북한 교류협력	117
다. 여성평화운동	118
3. 남북연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119
VII.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125
1. 남북연합 추진시의 여성정책 방향	125
가. 기본방향	125
나. 기본전제	125
2. 남북연합 추진단계에서 여성정책 과제	126
가.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제	126
나.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과제	127
다.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128
라.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 과제	128
3. 여성정책 강화방안	129
가. 정부의 역할	130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131
다.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134
VIII. 요약 및 결론	136
1. 요약	136
2. 결론	140
참고문헌	142
부 록	147

표 차 례

<표 I- 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4
<표 I- 2>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5
<표 IV- 1> 통일관련위원회 여성참여 현황(2000년 현재)	34
<표 IV- 2> 북한동포 및 북한이탈 여성 돕기	49
<표 V- 1> 남북한의 사회상황 비교	75
<표 V- 2> 남북한의 여성관	77
<표 V- 3> 남북한의 여성관련법 I	80
<표 V- 4> 시대별 남북한의 여성관련법	81
<표 V- 5>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관련법규	85
<표 V- 6> 남북한의 가족정책	88
<표 V- 7> 시대별 남북한의 여성교육정책	93
<표 V- 8>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교육정책	95
<표 V- 9> 시대별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	98
<표 V-10>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	101
<표 V-11>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	104
<표 V-12> 남북한의 여성의원 수 및 비율	105
<표 V-13> 남북한의 여성지위 관련정책	107
<표 V-14> 남북한의 여성관련 행정조직	108
<표 V-15> 남북한의 여성관련 통일정책	109
<표 VI- 1>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 해야 할 일	114
<표 VI- 2> 남북연합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18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절차	8
<그림 V-1> 여성정책 관련 기구간 연계도	57
<그림 V-2> 여성부 조직 및 기능	59
<그림 V-3>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조직기구	6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세계의 국가들이 이념대립을 종결하고 탈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평화 공존체제로 전환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오랜 동안의 분단상황은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고착과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 등의 단절을 심화시켜 남북한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그 고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6.15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과 그 중요성을 갖게 하였고 구체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후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은 통일기반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구체적으로 남한정부는 통일국가를 위한 3단계로서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국가단계를 상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한은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2단계인 남북연합을 위한 제도적 기구의 구성과 동시에 경제사회공동체를 실현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구축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남한의 통일운동은 사회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여성들의 통일운동은 군축 및 방위비 삭감, 북한동포돕기, 남북여성교류, 북한이탈여성주민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평화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여성들이 통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은 통일관련 주

2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요정책과 통일을 위한 참여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교류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재인·장혜경 (2000)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연구』는 통일과정에서 여성과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특히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다움과 여성성이 오히려 전통적이며 이상적인 이미지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주요 매체가 되어 여성들이 남북연합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추진단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고 강조되는 여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한정부의 통일정책기조가 남북대결에서 신뢰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한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나아가서는 통일국가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통일주체로 인식하여 여성들 특유의 강점을 활용할 때 통일을 보다 빨리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한 여성대표배경의 이질성과 상호방문기회의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남북여성들간의 교류와 협력의 한계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남북연합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및 이를 강화하는 것과, 여성들이 남북연합환경 조성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남북연합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여성역할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연합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여성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연합추진 배경을 통해 남북연합의 의미와 방향, 그 추진체계와 기능을 알아본다.

둘째, 남북연합과 여성참여 주제하에 남북연합단계에서 성 관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통일외교교육,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그리고 여성평화 운동측면에서 살펴본다. 더불어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발굴해 볼 것이다.

셋째, 남북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여성정책의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다.

넷째,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방안을 모색한다.

나. 연구방법

(1) 국내·외 관련자료 분석

남북연합단계에서 여성정책방안 수립의 시사점을 얻고자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 남북연합 관련 정책과 남북한 여성정책등을 파악하였다. 특별히 남북한여성정책은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2) 전문가 설문조사

남북연합단계에서 여성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여성교류를 제외한 여성단체,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정당 여성국장,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전문가 집단 등),

4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그리고 평화 및 통일관련 전문가 및 관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통일업무 관련 정책결정자 및 담당자와 관련 학자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응답자는 총 35명으로 (학자 21명,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6명, 정부관련자 2명, 북한이탈주민 6명) 87.5%의 응답율을 나타냈다(<표 I-1>).

<표 I-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구 분	조사대상자수(명)	응답자수(명)
관련 학자	21	21
여성비정부기구 담당자	6	6
의원 및 정부 관련자	7	2
북한이탈주민	6	6
계	40 (100.0%)	35 (87.5%)

조사내용은 남북연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남북연합과 여성의 역할(통일 의식과 통일교육, 남북한 교류, 여성평화운동), 남북연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2>와 같다.

<표 I-2>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내 용		구체적 항목
남북연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통일단계-유사점과 차이점, 성사가능성 ◦ 남북연합의 구조-시기, 여성참여정도 ◦ 바람직한 통일국가체제 ◦ 남북한간 자유로운 주민이동 여부 ◦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남한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해야 할 일 ◦ 외국사례의 시사점
남북 연합과 여성의 역할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합 추진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 남북연합단계에서의 통일의식교육-유형 및 특성화, 목적 ◦ 통일의식 함양-교육내용, 교육적 과제
	남북한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간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여성평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의 개념과 중요성-평화, 평화운동의 개념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이 갖는 중요성
남북연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합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성정책적 과제 ◦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과제 ◦ 남북연합과 평화공존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여성정책

3) 국내 워크숍 개최

통일단계에서 여성의 역할과 정책방안모색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시각에서 조명해 보조사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5인 (2001년 9월 24일)과 국내 전문가 1인 및 연구진 중심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한에서의 여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동질성과 이질성이 무엇이고, 이의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여성들이 남한에 와서 경험해 본 바에 비추어 앞으로 남한방식으로 통

6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 일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될만한 것과 이의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남북한에서 생활해본 바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할 앞으로 바람직한 통일방향
 - 통일과정인 남북교류협력과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간 상호신뢰, 남북한 수뇌의 의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
 -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관련하여 남북연합 구조인 정상회담, 각료회의, 국회의원 회의 및 공동사무처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성의 역할증대가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
 - 해외에서 활약하는 화교여성들의 역할이 중국과 대만의 여성교류 및 화해협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중국동포여성들은 어떠한가?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 남한에서는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증진을 위해 의식변화와 교육 그리고 여성단체의 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개방적이지 않은 북한사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4) 국제 워크숍 및 학술회의 참가

(가) 한·러 워크숍

러시아 및 독일학자와의 워크숍은 러시아(구소련) 및 독일의 연방제 경험을 통한 남북연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러·북 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의 전개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자 다양한 주제하에 2001년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었다. 동 워크숍을 통해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경우 정당들이 지도부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성의 몫’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무엇보다도 개별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성과가 컸음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우리의 경우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정상회담,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 등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여성들이 통일관련 정책입안 및 정책 결정에 보다 많은 역할의 필요함이 새삼 확인하였다.

(나) 한·중 학술회의

한중 워크숍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달성하고, 특히 남북한 사이에 확인된 남북연합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여성분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국 내 동포학자들과의 학술교류가 개최되었으며 동 학술회의를 통해 여성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3국 특히 연변 여성 및 중국동포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5) 국내학술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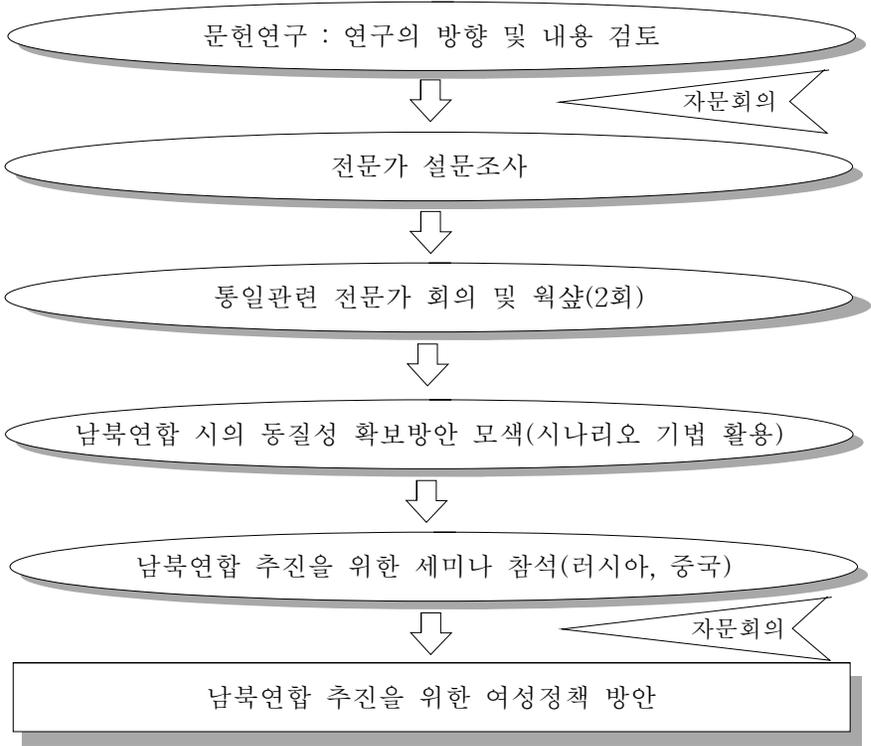
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의 주재로 국내학술회의가 2001년 11월 2일에 개최되었고 참가자와 토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본 연구결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6) 자문회의

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통일부 관계자, 통일연구 전문가, 여성단체 실무자, 그리고 여성학 연구자 등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진행과정과 방법,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과 구체적 항목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여성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 하에 본 연구가 추진되었던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특별히 남북한 여성정책비교를 위해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 보았다.

8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그림 I-1> 연구절차

본 연구가 북한여성정책 및 여성관련기구의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직접적인 의견청취나 이를 지원해야 할 북한정부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문제관련전문가와 귀순여성 및 연변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이차적인 의견을 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와 대비될 수 있는 북한 여성비정부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여성교류의 상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구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측 여성 및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 또한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및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들 기구들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미약하여 역량파악을 통한 통일방안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점이다.

II. 남북연합 추진배경

1. 남북연합의 의미와 방향

가. 남북연합의 의미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확립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3단계—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냉전구조와 대결의식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며,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는 ‘남북연합현장’등을 만들어 남북한이 중간단계적 성격의 통일과도체제를 형성, 잠정적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가지면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인 것이다.

남북연합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르는 과도기동안 남북한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형성을 그 목표로 한다. 남북연합은 남북한간의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 공동생활권의 형성,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갖는 과도적인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남북연합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한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란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연합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구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남북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남북 간에 경제적·사회적·문

1)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1989년 겨울, pp.248-256.

화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정치적 결합도가 증진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이 마련되면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정치통합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고, 남북 의회대표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헌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연합은 국제법상의 국가연합(confederation)과의 차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연합은 국제법상 독립국가가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조약에 의해 합의된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국가결합의 형태이다. 따라서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그들의 주권과 독립권을 국가연합에 이양하지 않는 단순한 연합에 불과하므로 구성국은 완전한 주권국가로 남아 있는 이와 같은 국가연합은 4가지 국제법상의 지위를 갖는다. 첫째, 대외관계에서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 국가연합의 구성국에 대한 관계는 국제법적 질서에 구속된다. 셋째, 국가연합의 구성국 국민들은 각자의 구성국 국적을 보유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각기 국제법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남북연합의 구성국인 남북한은 국제적으로 각기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는 있지만, 남북한의 양자관계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미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의 범주속에서 포함시킬 경우, 남북연합의 구성국인 남북한의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가 아니라 주권국가와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 역시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단계로서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가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과 다르고,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독립된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국가연합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주체간의 관계가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을 굳이 국가연합의 범주속에서 포함하느냐 배제하느냐라는 논쟁보다는 남북연합이 갖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는 창조성에 역점을 두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²⁾

나. 남북연합 추진의 방향

남북연합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전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다음 3가지 차원에서 그 추진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내적 차원으로서 민주적인 국민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연합은 튼튼한 국내적 지지기반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국내적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연합대상과의 거래는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 남북연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성단체와 같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이들과 쌍방향식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북관계적 차원으로 북한의 통일방식과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연합은 북한이라는 연합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호응이 있더라도 남북한이 각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동상이몽식으로 추진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은 「6.15공동선언」 제2항의 정신에 따라 서로의 통일방안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점의 모색은 먼저 차이점을 좁히고 나중에 유사점을 발전시키는 방

2) 유석렬(2001.4.30), “남북연합 개념 및 추진방안”, 2001년 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집, pp.11-22 참조.

식보다는 유사점을 먼저 찾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차이점을 해결해 나가는 先同後異式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남측의 ‘남북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측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방제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고집하거나 남측이 남북연합제를 북측이 비난하는 제도 통일로서의 완전통합단계를 위한 중간단계로 설정할 경우 양자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점이 부각되는 사안은 가급적 피하거나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국제적인 차원으로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의미하는 남북연합이 가져올 파급영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연합은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의 해체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변국들의 호응과 지지가 없이는 남북연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도 어렵고, 설사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와 결부된 산적한 국제적 사안들이 순탄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추진은 주변국들에게 해보다는 득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고, 주변국들을 호응과 지지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외교적 자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³⁾

이러한 추진방향에 있어서 아무리 효과적인 방안이 있더라도 남북연합 추진의 성패여부는 북한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연합의 전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러한 신뢰기반의 구축은 교류와 협력의 수적 확대보다는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교류와 협력을 하나 하나씩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제도화가 바로 남북연합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조민(2001.4.18), “남북연합 형성과 추진과제”, 2001년 협동연구 제1차 워크숍 자료집, pp.11-22.

2. 남북연합 추진체계 및 기능

남북연합의 체계는 이전 단계인 화해와 협력의 단계에서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남북연합 헌장」에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즉, 남북연합 헌장은 남북연합의 법적 토대가 된다. 남북연합 헌장의 주요 내용에는 남북연합 기구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남북한 단일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다. 남북연합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은 부속합의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다.

남북한 정상간에 남북연합 헌장이 합의·발표되면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각자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비준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남북연합 헌장과 그 부속합의서에 의거, 남북연합 기구들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국회회의, 공동사무처가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연합은 명실상부한 조직체계를 완비하게 된다. 남북연합은 완전통합단계로 가기 위한 정치통합의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를 기초로 정치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험들이 시행될 것이다. 이러한 시험들을 거친 결과,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은 완전통합의 형태이든 연방제의 형태이든 어떤 식으로든 정치통합의 형태를 담은 통일헌법을 제정·선포함으로써 남북연합의 단계가 종식될 것이다.

민족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진 남북연합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의, 쌍방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국회회의, 업무지원과 협의사항 이행기구인 공동사무처로 조직된다.⁴⁾

가. 남북정상회의

남북정상회의는 남북연합에서만 존재하는 기구로서 국가연합과 차이점

4) 양현모(2001.6.28-29), “남북연합의 정부·행정 체제 구축방안”, 『2001년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 중간보고서』, pp.30-33.

을 보여주는 기구이며 독립된 국가로서의 개별적 연합체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서 연합을 이룬다는 원칙 하에 향후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의는 남북연합 현장의 준수와 이행을 보장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기반 조성과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협의·조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정상회의는 남북한의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기구로서 남북연합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⁵⁾ 남북정상회의는 남북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최종승인하며, 승인된 사항에 대한 시행지침을 하달하고, 각료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고 제시되고 있다. 즉, 정상회의에서는 민족문제, 통일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⁶⁾ 또한 국회회의의 의결사항을 심의하고, 이의 수요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각료회의의 합의사항을 승인함으로써 그 집행여부를 감독하는 기구이다.

나. 남북각료회의

남북각료회의는 사실상의 집행기구로서 남북쌍방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남북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으로 구성한다. 각료회의는 남북연합 현장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조성·수립한다. 더불어 각료회의는 남북정상회의에서 부과한 사업을 조직·수행하고 남북 간의 모든 현안문제와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며, 그 실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⁷⁾

남북각료회의는 인도, 정치 및 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5개 분야에 각각 상임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사업의 진전과 진행을 시도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임명하는 1명의 공동위원장 및 1명의 공동 부위원장과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

5) 김국신(1994), 「남북연합 형성 및 방안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p.6.

6) 유석렬(2001), 위의 논문, p.11.

7) 노태우(1989년 9월 11일), “민족통일과 관련한 국회특별연설”.

서」에 의해 구성된 남북한 공동위원회들의 기능이 분과별 각료회의로 이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분야별 상임위원회와 그 기능 그리고 개최시기, 장소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의 집행기구로서의 수행을 위한 세부적 방안과 조직적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다. 남북국회회의

남북국회회의는 남북 국회에서 선출된 100명 내외의 남북 동수 대표로 구성한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회의가 인구별 위원선출이 아닌 지역 대표성에 의거하여 동수 대표로 구성되는 것은 남북연합의 설립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국회회의는 남북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토의·의결하여 이를 정상회의에 회부한다. 남북국회회의는 남북연합 상정 시 초기에는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통일국가 건설 시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며 통일국가의 헌법초안을 작성하고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일헌법에는 통일국가의 정치이념, 국호, 정부형태 등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은 물론 통일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절차와 시기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남북국회회의 역시 남북각료회의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 개최하며 일방에 요구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남북연합의 초기 국회회의는 큰 권한을 갖지 못하나 통일 지향적 민족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짐과 함께 남북정부는 헌법상 그 주권의 일부를 국회회의에 이양하게 될 것이다.

라. 공동사무처

남북공동사무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들이 합의·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행정적인 기구이다. 양측에서 같은 수의 사무요원을 보내어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하며 각자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는 것이다.

공동사무처장은 쌍방이 각기 각료급으로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차장과 직원을 두면 될 것이다. 공동사무처는 남북연합기구에서 위임된 실무적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이며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사무처는 남북연합에 있어 민족의 공동이익을 중립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서,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은 점차 업무 수행상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점차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연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연합현장에 합의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고 고위급회담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결단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오면 언제든지 남북연합 현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남북연합단계를 앞당기기 위해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상설화된 상주연락사무소는 남북한간의 제반 사안들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남북연합'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성 관점(Gender-based)의 정책과 남북연합

1. 성 관점과 여성발전전략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7)에서도 ‘여성부문’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회의 이후 1995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유엔여성 10년(1975-1985) 설정, 1979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의 제정, 1980년 코펜하겐 국제회의와 1985년의 나이로비대회 등 세계적 추세가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동안 유엔의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 권장과 함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여성정책적 관심을 관철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해왔다. 1995년 북경에서 있었던 세계 제4차 여성회의의 행동강령(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은 각 국의 정부와 여성활동가들에게 “성 시각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속에서 주류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분석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성 영향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1996년 2월의 공약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성 주류화에 대해 EU의 공약(commitment)에 효력을 주기 위한 첫 단계로 주류화에 대한 공약(Communication on Mainstreaming)을 채택한 바 있다. 1997년 2월에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기회에 대한 서비스집단간에 의해 동의된 다음의 전략문서(Strategic Paper)에서 공약에서는 성 영향력 평가가 중심문제로 언급되었다.

유엔은 여성발전 전략으로서 ‘발전의 여성통합’에서 ‘국가발전의 중요

한 항목으로서의 성(gender)'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을 주류화 시키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주의적 관점(Women in Development : WID)

여성주의적 관점의 여성발전전략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채택된 전략이었다. 그것은 '유엔여성 10년'기간으로부터 시작되며 여성을 위한 특정사업에 초점을 둔다.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중심에 두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활동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을 발달의 과정 속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항상 발달과정에 참여하여 왔으나 정책결정자들이나 여성들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은 소외집단이고, 여성이 발전과정에서 도구화되고 소외되었으므로 보상되어야 하며, 따라서 여성을 특수집단으로 상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접근의 정책사례는 여성 대상의 활동 및 사업(프로젝트)로 나타나며 가족계획, 여성할당제, 편부모 세대 지원,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 보호, 여성 보건관리, 출산휴가, 영양, 식수, 여성통계, 여성교육, 여성노동, 여성소득 창출 사업 등의 사업이 있다. 그리고 여성전담 국가기구들이 설립되어 사업을 시행한다.

나. 성인지적 관점(Gender and Development : GAD)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성인지적 접근은 문제의 핵심에 있는 행위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발전에 참여하는 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접근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가 여성을 발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성인지적 접근에서는 젠더(Gender)와 발달(Development)이란 두 용어가 병행되고 있다. 즉 여성이 발전에 참여해왔으면서도 이를 정책결정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낸 것이다. 따라서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증진, 여성과

남성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하게 되었다.

1995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교육연수와 학력분포를 성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평균 교육연수에서 전체적으로는 10.2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상자들의 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때 여자는 9.37년이고 남자는 11.18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의 평균 교육연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여성들에 비하여 남성들의 경우 직장을 얻기가 더 용이하고 나아가 동일한 학력을 가졌을 경우에서도 남성들의 보수가 여성들보다 높으므로 부모들은 가정의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경우 딸보다는 아들들을 공부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

주류화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별도의 이슈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이슈를 정책의 주류에 통합시켜 다루어 나간다는 관점이다. 주류화는 두 가지의 분리된 그러나 상호 연관된 과정이 포함되며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MW)’와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MG)’이다. 즉, 주류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하다. 첫째, ‘여성을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정치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성(역할)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더 기술적인 용어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2. 남북연합추진과 성 관점의 여성정책 필요성

여성이 기존에 수행하여왔던 역할에만 초점을 둔다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즉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평등사회의 실현은 남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 받고, 능력을 개발, 활용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서 비롯될 수 있다. 즉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주어지고,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향상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성 차별적 사고와 편견에서의 탈피와 제 사회적, 심리적인 모순의 제거가 여성정책의 우선적인 해결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연합을 위해서도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남북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성들이 생활과 사회활동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남북연합 정부에서의 여성역할 강화를 위해 여성들이 일정비율 할당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 정부에서는 ‘여성’ 영역을 설치하여 관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셋째, 남북연합 정부부처에도 여성담당관실이 설치되어 남북한 주민 모두가 양성평등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남북한 여성간의 상호 이해와 현실에 맞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이해교육 실시 등 여성의 삶에 기초를 둔 교류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생활문화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성정책이 이루어져 통일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남북연합 추진과 여성참여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여성인구는 절반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남북한 정치대결구조에서 오는 한계점, 둘째, 북한의 여성교류제외나 성사되는 과정이 전적으로 당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점, 셋째, 북한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한계점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들 수 있다. 남북연합의 추진은 이러한 여성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운동에 여성이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연합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참여공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여성동맹'이라는 확실한 카운터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 명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연합단계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상부에서 하부단위에 이르기까지 형성될 것이다. 위로부터는 남북한 각료회의와 남북국회회의, 밑으로는 시민단체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제반 조직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 여성의 지속적인 교류확대이고, 둘째는 남한여성들의 통일준비를 위한 역량강화와 통일의식교육이며, 셋째는 남한여성들간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각도의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1. 남북한 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도되거나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성교류의 출발은 '88년 7.7선언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88년 이후 학생, 학자, 제반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언론기관, 정당 등 각계 각층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 제의가 이루어졌고 주로 여성단체나 여성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여성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제의한데서 비롯되었다. 1988년이래 1999년 9월까지 남한여성들이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낸 건수는 총 39건으로 특히 '91년 이후 주민접촉신청수가 크게 신장하였는데, 성사된 건수는 총 15건이다. 1988년이래 남한과 북한이 제의하고 여성교류가 성사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8년 1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남북기독교자모임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측이 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인 고기준목사 앞으로 북측참석자들에게 북한여성에게 보내는 안부편지를 전달요청하고 남북교회여성교류를 제의한 바도 있었으나, 북한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후 북한은 1989년 3월 27일 24개 정당·단체들 명의로 “남북대화는 남북간 당국이 외에도 민간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과 남한과 해외 동포·여성·종교인·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 및 그 단체들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급 대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대화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같은 해 9월 28일 “민족통일협상회의”의 정준기 준비위원장 명의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측에 “남북이 제각기 내놓은 통일방안들을 서로 보완하고 완성하여 하나의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개최하고자 제의하고 12월 7일 보다 구체적으로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월까지를 예비회담기간으로 설정,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1990년 1월 17일경 남·북이 각기 1-2명의 당국·정당·단체 대표들을 파견하여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들의 제의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여 성사되지는 못하였다.⁸⁾

이후 '90년 9월 2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측이 동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7회 전국여성대회』에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성애위원장을 초청하고, 남북한 여성단체의 교류를 제의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91년 7월 다시 서신을 보내 제27회 전국여성대회에

8) 통일원(1995.5), 『남북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관련 주요일지』, pp.97-98.

제차 참석을 요청하고, 남한여성 또한 북한에 초청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91년 1월 <한국부인회>측은 「남북여성 토속음식경진대회 및 공예품전시회」 개최와 같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성애위원장에게 제의하였고, 그후 '91년 3월 20일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 강점숙서기장이 다시 한국부인회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앞으로 서신을 발송하여 3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부인회가 제의한 문제들 뿐 아니라 투옥된 애국여성들·민주인사·통일지사들의 석방문제를 함께 토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장소는 평양이어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에 대해 남한정부측에서 정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서신을 북측에 되돌려 보냄으로서 결렬되었다.

여성교류가 처음 성사된 것은 1991년 5월 31일 - 6월 2일까지 동경 고배에서 일본부인회의가 중심이 되어 <일본 YWCA연합회>, <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부인교풍회> 등 기독교관련 여성단체가 주최한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여연구부의장 등 3인과 남한의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씨와의 만남이었다. 이 경우는 오랫동안 기독교여성운동을 해온 이우정씨가 1990년 여름 일본부인회의 시미즈 스미코 會長을 만났을 때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부인회의와 일본기독교관련 여성단체가 아시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지 않고는 아시아의 평화가 없다는 인식 하에 향후 남한 - 북한 - 일본 여성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1991년 4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효재회장과 2인명으로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여연구부의장 앞으로 동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수락함에 따라 만나게 된 것이다. 당시 세미나에는 남북한 및 일본 여성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종군위안부 보상,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 조·일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으며 이 모임에서 이우정씨가 제2차 세미나의 서울 개최를 제안했고 이를 받아 여연구씨가 서울 다음에 평양 개최를 제안하였다. 동 제안에 따라 1991년 7월 10일 이우정대표는 서울에서의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냈고 통일원에서는 8월 27일 동

세미나의 정치성 배제 및 범여성계 대표의 참여를 조건부로 북한 주민접촉을 승인 받은 후 일본부인회 경유하여 대북초청장 발송하였다. 이에 10월 28일 북한측 여맹 여연구 중앙위상무위원은 “서울여성세미나” 참가와 관련하여 대남전문문을 통하여 실무문제들과 북한측 대표단이 서울에 나가는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0월 31일 10:00시에 「통일각」에서 남북 각기 3명의 여성대표가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북측이 제안한 예비접촉은 관례상 민간인 차원의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동 세미나 주제와 일정 등을 서신으로 알려주었다. 이에 대해 11월 1일 북한 여연구 여맹 중앙위상무위원은 “서울여성세미나” 개최시기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우정대표는 다시 보다 구체적인 실무문제협의를 위해 11월 6일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자고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11월 5일 “지금 남조선에서 대화와 통일에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이 끝난 후 11월 9일 중감위 회의실에서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여 11월 9일 중감위 회의실에서 남북 여성들간의 “서울여성세미나” 개최 관련 남북 여성실무 접촉을 가졌다. 당시 남한측 대표로는 이우정 KNCC 전 부회장, 이효재 “한국여련” 회장,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가 참석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회장, 김선옥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정명순 “조평통” 서기국 참사가 참석하였다. 이어 11월 21일 “서울여성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하여 우리측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 및 북측 참가자 명단을 접수하였다. 그후 11월 25일 - 30일까지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선옥 해외동포 영접부 부부장, 정명순 “조평통”참사, 최옥희 평양신학대학 대학원생, 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 등 15명의 대표단은 판문점을 거쳐 남한에 왔으나 11월 28일 북측 참가자의 신변위험을 구실로 조기 귀환을 발표하고, 11월 29일 이대방문 및 문익환-임수경 가족면담이 거절되자 11월 28일 오후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당초(11월 30일)보다 하루 앞당겨 귀환하였다. 그 이후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측과 사전에 대화를 통하여 만나고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를 1992년 9월 1일 - 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남북한 및 일본여성대표 25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주제로는 “민족의 대 단결과 여성들의 역할”, “일제의 조선침략과 전후 보상문제”였고 이 세미나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남북한 및 일본이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하였고 이 세미나를 계기로 남한 - 북한 - 일본에서 돌아가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의 정례화를 합의하는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후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주요의제로 1993년 4월 22일 - 29일까지 동경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남북한 및 일본여성대표 1,00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남한측은 이우정 국회의원과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김윤옥 기독교 여성평화연구원이 북한은 최금춘 김일성 종합대학 강좌장과 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실장 등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세미나를 통해 북측에서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문제를 앞세우는데 비해 남한측은 종군위안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부터 하지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 후 1993년 10월 11일 이우정 국회의원 등 서울여성세미나 실행위원회가 제5차 “여성세미나” 개최 장소를 서울에서 “민족화해와 여성”이란 주제로 북한의 여연구 외 19명의 대표를, 일본은 시미즈 스미코외 19명을 초청할 것을 확정하고 북한측을 초청하였으나 11월 1일 “여성세미나” 북측 실행준비위원회가 일본을 통해 동 세미나를 '94년 4월경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해왔고,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남한측의 대한미용사회 회장이 '91년 5월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성애위원장과 조선민주직업총동맹 원동구위원장 앞으로 '91년 11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미용경연에 북한미용인 참가 및 '92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월드참피온쉽 미용대회에 남북한 미용인 단일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91년 8월 <보라꽃꽃이> 오부자 회장이 북측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 백인준위원장에게, 1992년 8월과 1994년 12월 2차에 걸쳐 여맹 김성애 위원장에게 꽃꽃이 남북교류를 제의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 1991년 10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운영애씨 외 3인 명의로 서울세미나 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 선교적 차

원에서 평양 봉수교회 성가대를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2년에 들어와서는 1992년 5월과 10월 두차례 <한국부인회> 박금순회장의 7인이 북측 여맹 중앙위원회 강점순 서기장 앞으로 “남북 토속음식경진대회” 개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2년 5월 <여성신문사> 이계경 사장이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남북한 수공예품 교환전시”를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2년 2월에 <YWCA 연합회> 김숙희 회장직무대행이 북한측의 고기준 독교 연맹위원장 앞으로 “YWCA 70주년 행사에 북한의 기독교 여성”을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1994년 5월 YWCA 최만자 실행위원명으로 “미래의 세계와 여성문화에 북한 초청관련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다시 8월 YWCA 이종경 사무총장 명의로 “미래의 세계와 여성문화에 북한 초청모임”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1992년 9월 남한측의 김영자 성모수녀회 총원장에 1명이 북한의 장제철 조선 천주교인 협회장 앞으로 북한 장충성당에서 미사봉헌 및 수녀과견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1992년 8월 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장은 여맹 중앙위 여연구상무위원에게 “정신대 문제 아시아연대 회의”에 북한을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후 1993년 10월 21일 - 23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남·북한 등 7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성사를 이루었고, 1993년 11월 7일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종태위」)가 “일본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발생한 종군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주제로 11월 7일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한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여성 토론회”에 남·북한,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종군위안부 관련 민간단체가 참석하였는데 남한측은 이효재·윤정옥 공동대표 2명이 참석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오무환·강정길·최금춘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그후 1994년 1월 윤정옥 정대협공동대표가 북한의 종군위안부 관련 북한여성계 인사들에게 제3차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에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1995년 1월 재차 남한측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가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 상무위원 7인 앞으로 제3차 종군위

안부 아시아연대회의에 초청하였으나, 북한측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3년 7월 디자이너 홍미화씨가 불란서주재 북한 대표부 문화담당관에게 “한국패션문화를 북한에 소개”하고자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1994년 2월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정자 회장은 조총련 여성동맹 대판부 위원장 앞으로 “조총련 어머니 합창단”을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반대로 북한은 1994년 2월 3일 북한측의 강관선 “여맹” 서기장 명의로 “한국여련” 공동대표(한명숙, 이영순, 이미경)에게, 2월 7일은 한국부인회 임명순 회장앞으로, 2월 10일은 북한 「종태위」 박명옥 부위원장이 「정대협」 공동대표(이효재, 윤정옥, 김희원)에게, 3월 29일은 조국해방 50돌 경축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위원회가 이우정 국회의원 등 5명 앞으로 판문점이나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8.15 민족공동의 경축행사를 계기로 남과 북·해외의 여성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민족회의를 열고, 여기서 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할 것을 제의한바 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1995년의 경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정옥대표가 “제3차 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에 북측을 초청하여 성사되었고, 자영업자인 원운연씨가 북한여성과 결혼을 추진하였으나 남한정부측에 의하여 불허되었다. 그리고 <월간 말>지의 신준영기자가 북한여성의 실태 취재협의를 위하여 교류신청을 냈으나 남한 정부측에 의하여 불허되었다. 국립창극단원인 안숙선씨 외 2명이 “판소리의밤 연주회” 출연을 제의하여 성사되었다. 통일희년 여성교회협의회 윤문자사무총장이 북한교회 여성초청협의차 교류신청을 하였으나 정부측에 의하여 불허되었다. 정신대대책협의회의 강창일씨 외 4명은 종군위안부관련 국제세미나에 참가신청을 내 승인되어 북측과 함께 참가하여 성사를 이루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유소정 총원장 등 6명이 1995년 7월과 1996년 7월 2차례에 걸쳐 장충성당에 수녀과견을 위하여 북한측에 교류제의를 하였으나 성사를 이루지 못하였다. 1995년 이대동창 오순정 문인회 회장이 북측에 노천명 시비를 북한에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5년 함명철 등 14명이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하여 북

한측 대표를 만나 성사를 이루었다. 겨레하나합창단 김춘옥단장 등 53명이 “제11회 One Korea Festival”에 참석하여 북한측과 성사를 이루었다.

1996년의 경우 <전문직 여성클럽> 이정자회장 등 2명이 <조총련 여맹>과 학술교류를 협의의 제의하고 성사를 이루었다. <대한 YWCA연합회> 사무총장 등 49명이 북측에 “세계평화와 여성연대 모임”에 북측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성교육원> 지은희원장 등 4명이 버클리대학 주최로 “한반도 평화통일심포지움”에 북측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한국NGO 위원회> 공동대표가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북한측을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겨레하나합창단> 김춘옥단장은 제12회 One Korea Festival에 북측의 참석을 요청하고 성사되었다.

1997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은희공동대표 등 3명이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에 북측을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었다.

1998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공동대표 등 3명이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 북측의 홍선옥 실장을 초청, 성사되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서미숙 회장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백주년 기념 회원대회”에 북한교회 여성 초청문제를 협의의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의원연구모임> 회장인 이미경의원이 『여성과 성폭력』 국제심포지움에 북측을 초청하여, 성사된 바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진성 실행위원 등4명이 일본 전시하의 강제연행에 관한 동경 심포지움(7.30~8.1)에 북측의 참가를 요청하여 성사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공동대표 등 6명이 종군위안부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가하여 북측의 여성대표를 만난 바 있다. 한국부인회 남인숙 부회장이 남북한 여성단체 교류를 협의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1999년에의 실시된 남북한 여성교류의 시도로는 정대협의 윤정옥, 김윤옥 공동대표가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협의의 시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길녀박사 등 4명의 관계자가 남북여성계교류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하

여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1999년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때까지 여성교류추진현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⁹⁾

이렇게 볼 때 남북한여성교류가 성사된 것은 1999년 8월까지 안건별로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 4번과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2번, “판소리의 밤 연주회” 1번, “One Korea Festival” 1번, “중군 위안부관련 국제세미나” 1번, “제4차 북경여성대회” 1번과 “조총련 여명과 학술교류협약”, “버클리대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움 참석” 등 국제세미나에서 남북한여성의 만남 4번, 북한여성에 대한 대북 지원차원에서의 만남 1건이 전부였다. 북한측은 '91년 한국부인회측이 제의한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진대회”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중군 위안부아시아 연대회의”는 남북한이 공동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는 측면과 교류방법에 있어 남북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과 기타 국가들이 함께 한 국제행사이어서 남북관계가 침체화되지 않았으며 국제회의이므로 상호자제가 가능했던 점, 남한의 주최측이 재야단체였던 점 그리고 주최측의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사 성사의지 및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소리의 밤 연주회”와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진대회”의 경우는 비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분야로서 북한측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진대회”의 경우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은 남한 정부측이 북측이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통일방안에 대한 제의까지 포함하도록 한데 대해 경직성을 보인데서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북여성교류를 시도한 예와 성사된 예를 분석하여 볼 때,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계획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의지와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방법상으로는 남북왕래 행사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제3국 접촉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개인적 신뢰를

9)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김원홍(1997),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한국정치학회주최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서울: 한국정치학회, 1997. 11. 8)에서의 재인용과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1999년까지 정리 한것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만의 행사는 정치적 갈등 또는 성사 가능성 여부의 불확실 등 무리가 있어 다국간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나 제3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사회의 변화가 없는 한 초기단계에는 북한이 선호하는 대상, 주제, 행사 등을 자신있게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북한이 그 기회를 정치선전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과민반응을 삼가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북한 스스로 자연스럽게 교류자세가 수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남한여성의 역량 강화와 통일의식교육

가. 남한여성의 역량 강화

금년 8월 15일 북한 방문단의 김일성 동상에서 일어난 돌연 행동에서 보았듯이 아직 남한사회 내 북한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남한사회 내 일치되지 못한 행동은 북한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남북연합이란 새로운 통일과정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연합을 이르는데 있어서 남한여성들은 확고한 통일의식 과 나뉘는 통일에 대한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독일이나 예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행여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제도적, 관습적 차별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연합 단계의 추진을 위한 남한여성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계내의 합의를 이룰 민간여성단체들의 조정협의기구가 필요하다. 해방이후 우리 나라의 여성단체들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좌우협상에 실패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여성단체들간에 통일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의 양길을 걷고 있다. 즉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절감하고 있지만 그 접근방

법에 있어서는 여성단체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여성단체가 정당의 외곽단체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남한도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북한여성과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여성간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남북여성통일을 준비하는 민간여성단체들의 조정·협의기구의 설치일 것이다. 최근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1998년에 범국민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구성되고, 협의회 내에 24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보다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외에도 우선적으로 여성계내의 합의를 이룰 민간여성단체들의 조정·협의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이후 전개될 사회갈등의 주요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일통일 경험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실업문제는 결국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체제 전반의 안정을 침해하며 새로운 갈등구조와 새로운 충격과장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경우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의 경우 다른 정책에 밀려 희생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특히 여성부는 통일부와 노동부와 함께 통일과정에서 여성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여성의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정책적 차원에서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하겠다. 현재 정부의 여성관련 통일정책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가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이 지향하는 방향은 여성의 통일역량 확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여성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추진하는 통일정책이 여성의 참여 확보 및 여성권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여성부와 협조하여 통일관련 여성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통일교육원을 통해 여성단체 간부와 전업주부가 대다수인 학부모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여성 간부위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무엇보다 여성관련

통일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여성전문인력을 발굴·양성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성문제 및 대책방안을 연구하며 남북여성의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¹⁰⁾

우리나라의 통일이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 주민이 모두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방식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계층간 여성의 갈등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통일후 많은 여성들은 실업 뿐 아니라, 주택난, 탁아소 문제, 빈부격차 문제, 사회보장문제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성통일기금 뿐 아니라 여성복지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결정과정과 교류협력기구에 일정비율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00년 제16대 총선 시 정치권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은 방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제 30% 할당제를 도입한 결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5.9%(16명)로 지난 15대 총선 시의 여성의원 비율 3.0%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비례대표제 할당제 도입에 있어 의무 조항을 두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30%이상 여성후보를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공천한 정당은 한 당에 불과했으며, 각각 민주당 32.6%(14명의 여성후보 중 5명 당선/전체후보 43명), 한나라당 23.9%(11명의 여성후보 중 5명 당선/전체후보 46명), 자유민주연합 19.4%(6명의 여성후보 중 당선된 사람 없음/전체후보 33명)였다. 한편,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경우 이미 1998년 '6. 4 제2차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주요 정당들은 이미 비례대표제에 30%이상(새정치국민회의 33.8%, 한나라당은 36.1%, 자유민주연합 16.3%, 국민신당은 25%)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있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의 공천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정당은 헌법에 여성할당제의 합헌성을 보장하는 노력과 함께, 2000년 프랑스에서 통과된 '남녀 동수, 후보공천법'처럼 우리나라의 각급 공직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비율을 국회의원 30%, 지방의회 50%이상

10) 여성부(2000), 「여성백서」, pp. 336-339.

으로 높이고, 지역구의 경우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당의 주요당직에 있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제 및 지역구에 여성의원 당선율과 정당 내 주요당직에 여성비율을 평가하고, 정당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공된 기금 중 일부를 여성정치인 육성 또는 남성정치인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이 요구된다.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멘의 상황에서 여성이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권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지위향상의 조건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후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정치참여가 좀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통일과정과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간 정부는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통일문제와 대북정책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관련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와 그 비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실제 여성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통일관련 위원회 등에 대한 여성의 참여수준은 2000년도 정부의 목표율인 25%에 미치지 못하고 수준으로,¹¹⁾ 여성은 통일고문회의 25%, 정책자문회의 25.0%, 통일정책평가회의 0%, 통일교육자문위원회 12.5% 참여하고 있다.

<표 IV-1> 통일관련위원회 여성참여 현황(2000년 현재)

(단위 : 명)

구 분	여성위원수(A)/ 위원총수(B)	비율(B/A)	여성위원수(A)/ 위원총수(B)	비율(B/A)
통일고문회의	6/29	20.0%	7/29	25.0%
정책자문회의	4/48	8.3%	12/48	25.0%
통일교육심의회위원회	3/25	12.0%	3/24	12.5%

※ 통일부 내부자료

11) <http://www.moge.go.kr/>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남북기본합의서』의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중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 1998년부터 여성부의 국장급 여성공무원 한 명이 겨우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대표단구성이나 실무 혹은 각종 정부 관련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를 높여 나가는 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의 도입과 함께 통일부에 남북한 여성 교류와 협력, 여성의 통일교육 등 통일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정책부서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배제됨으로서 여성들은 통일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멘과 한반도가 처한 국제환경과 내부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 정치적인 환경은 상이하여 남북예멘의 사례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예멘이 겪은 실패의 요인¹²⁾들은 우리에게서 통일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선 이슬람의 남녀 불평등적인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예멘에 비해 한국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의 폐습, 남녀 불평등적인 사고를 속히 없애야 한다.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통일이후의 여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의식개혁을 통한 남녀평등의 가치확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이후 남북한 여성의 이질감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북한 관련 여성문제, 남북여성교류와 협력문제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강의할 통일관련 여성인력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경험을 놓고 볼 때 특히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통일이 되면 막연히 잘살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실제 통일되고 나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

12) 통일전과 통일후 예멘의 여성정책은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통일전후 별다른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정권의 지지기반에 단지 동원되었지 독자적인 영향권을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예멘여성의 문제는 단지 예멘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멘의 다른 사회 각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경제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시민사회는 형성조차되지 못한 제3세계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 하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동서독 지역 여성들의 이질감은 상당한 것이었다. 실제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2등 국민으로의 낙인이 찍혔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서독지역의 여성들의 우월감에 좌절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질성회복을 위하여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치교육의 제1목표는 서로 귀기울이고 진지하게 대함으로써 수십년 간 축적된 정보 및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전에는 남북한 여성의 이질화 극복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북한여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이질화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 여성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여성통일교육학교’와 같은 형태의 특수교육기관을 여성부와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철학적 확신과 정책적 비전을 갖고 설립·운영해가야 한다. 여기서 각급 여성공무원, 시민단체활동가, 교육자, 사업가, 종교인,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와 회사원, 나아가 고교생과 대학생에 이르는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통일의식교육

(1) 통일교육의 체계와 방향¹³⁾

(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등의 사례와 국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제정, 그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3) 통일부(2000), 『통일백서』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정책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설치(1999년)되었다. 이 위원회를 통해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2000년 통일교육기본 지침서」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나)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는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은 ①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②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확립 ③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의지 형성 3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6대 중점추진과제로 ①종합적·체계적 통일교육 실시기반 구축 ②학교통일교육 활성화 ③사회통일교육 활성화 ④대중매체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⑤정부의 통일교육지원 강화 ⑥통일교육 실시 체계 정립을 선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교육기관의 2000년 통일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다)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및 기본교재의 발간

통일부는 1990년대 들어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1999년에는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성과를 반영하고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의 발달로 대표되는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매체를 확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열린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개설 추진은 첫째, 직접 교육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 국민 통일교육 서비스 기능을 확장, 둘째, 통일교육에 관한 통합 「정보자료지원센터」로서 기능 확충, 셋째, 일선 통일교육요원의 역량 강화와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통일부, 2000). 특히 ①통일교육에 관한 종합 교육정보 인프라 조성 ②통일/북한 관련 포털 서비스(Portal

Service)지향 ③하이퍼미디어 방식의 효과적인 정보자료 제공 ④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응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열린 교육으로, 통일교육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통합을 위한 열린교육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통일교육의 방향¹⁴⁾

(가) 여성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낮은 편에 속하며, 연령 및 학력에 따라 다양한 통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로 하여금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교육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다양성을 고려한 통일교육을 펼쳐야 한다.

여성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일소하고 통일의 경제성을 강조하는데 두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이며, 국제경쟁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 사회적 안정 도모의 순이다. 여성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러한 여성의 통일의식의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 및 홍보방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 통일교육 경험은 그 비율이 극히 낮음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떠한 내용을 교육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에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여성은 교

14) 함인희·한정자 외(2000), 「여성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통일부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경우도 매우 낮은 수준의 교육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대상 통일교육은 처음부터 기초를 다져 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성들의 경우 일단 통일교육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과반수 집단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의 기회를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교육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한 집단에 대해서는 교육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여성대상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며(한국여성개발원·통일부, 2000), 여성들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형태로는 교양강좌로 1-2시간,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종합교육,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1-2과목 선정, 단체 교육 시 1-2과목 포함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 여성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형태는 기존의 여성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행 가능한 형식이므로 앞으로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주며, 북한 체제 및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요구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로 인해 야기될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효과가 제고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 및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식을 현실적 인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조사에서 통일 및 북한 관련 홍보 자료를 접해본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거나 나머지 40%에 이르는 여성들은 홍보에 접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홍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기억하는 통일 및 북한관련 실상 홍보는 주로 매스컴을 통해 전달된 바, 북한의 경제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그리고 북한의 풍경이 주를 이루고 다음은 북한이 저지른 다양한 사건과 만행이다. 따라서 통일 및 북한실상 관련 홍보의 경우 한편으로는 통일의 의미나 당위성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

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사에서 통일 및 북한실상 관련 홍보의 효과는 70%가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나아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통일 홍보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과반수에 이르는 여성들이 통일논의에서 여성 스스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을 통일논의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작업이 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시에 앞으로 통일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거리감은 앞으로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과정의 완급을 조정하면서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감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 여성대상의 통일교육 시 고려할 사항

여성대상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와 여성들의 특성으로 무관심, 냉소적 태도, 부정적 태도, 통일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낮은 통일교육 경험 등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구민회관, 문화회관, 농촌지역의 농업 기술센터 등을 교육장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여기서 정부 및 지방행정기관들은 이들 기관들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전업주부를 고려하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시간대를 활용한다든지, 취업여성들 대상교육은 밤 시간대를 활용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 시간대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교육대상집단은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하여 동창생 집단, 지역모임단위, 어울리는 가족 단위,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통일교육, 학교 어머니회를 통

한 통일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일상생활과 연계하는 통일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자원봉사단체들은 통일교육과 탈북자 돕기, TV·라디오 모니터 회원은 TV프로그램을 통한 북한관련자료 모으기·발표하기, 학교어머니 교실을 통한 통일교육에 “자녀통일교육소개 및 통일대화 나누기”등 통일교육과 실생활을 연결시킴으로써 통일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여성통일교육의 내용

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교육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여성통일교육 내용 구성 시 고려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2001년도 통일기본교육지침』참조).

(가) 여성들이 통일교육을 받아야 하며 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 통일과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은 그 속성상 남북한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영역이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서도 이 분야의 내용이 빠질 수 없다.

(다)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통일방안은 통일의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 화해·협력, 제2단계 남북연합, 제3단계 통일국가 완성으로 분류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라) 2000년 현재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토대로 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실천원칙으로 대북 정책-정부가 북한을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교육추진에 있어 그 영역을 인도적 지원과 경제지원, 남북당국교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합리적 범위 내의 무조건 자원, 정경분리,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마)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바)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사)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되, 기본적이며 폭넓은 내용을 수용토록 한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침서를 참조하여 프로그램 편성시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는 다음과 같다(통일부, 2001).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인식
- ▶객관적인 북한 인식-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과 문화, 북한주민의 생활 알기
- ▶북한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알기
-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 ▶대북 포용정책 알기
-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여성의 통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여성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대상 선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1) 여성통일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집단으로서 여성 단체장, 각급 행정기관장, 여성사회교육기관장, 교육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대상의 통일교육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2) 기존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44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 (3) 각급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 (4) 전문 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2) 여성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는 교육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한다.
- 3) 여성 통일교육의 내용은 여성 통일의식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현실생활과 밀착된 내용을 담도록 한다.
- 4) 여성 통일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전문강사의 확보에 있음을 인식하여, 여성 대상 통일교육 전문강사 확보를 위한 장·단기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5) 여성에게 적합한 통일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 6) 여성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도록 한다.
- 7) 여성단체 및 여성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통일 관련사업 수행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망된다.
- 8) 여성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의식의 고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 9) 여성 대상의 통일 관련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 10)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11) 여성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기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3. 여성평화운동¹⁵⁾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은 우리 나라 여성계 내에서 보통 국내 여성평화운동의 출발점(정현백, 2000b)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자폭탄 피해

15) <http://wmp.jinbo.net>(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양희·양애경·정숙경(2000)의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한국여성개발원)의 관련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자 지원활동'이 전개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논의된다.

1970년대 여성평화운동이라 지칭될 만한 움직임은 주로 기독교 여성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 해온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활동'이 그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희생자 2만 여명이 병고와 빈곤으로 고통받으면서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있던 터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70년대 중반부터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일본의 전후처리 미결문제로 꾸준히 여론화하는 한편 피폭자에 대한 치료와 생계 지원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여성들에 대해서는 치료와 생계비 외에도 자녀들의 교육비 보조문제까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이러한 활동이 종교단체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바탕으로 하였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고, 1975년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에 또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전쟁의 희생자로서 피폭자들의 문제, 특히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여성피해자는 물론 피해가족을 돌보는 여성 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던 것과도 흡사하다. 어쨌든 '70년대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활동'은 활동의 주체라든가 내용 등과 관련해서 보면 이후 한국사회의 여성평화운동에 있어 사실상 모태와도 같아서, 가히 우리나라 여성평화운동의 기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1980년대의 운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다양하고 성숙한 내용으로 전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평화'가 지칭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활동의 면면으로는, '70년대 '원폭 피해자 지원활동'에 그 맥이 닿아 있을 '반전·반핵운동'을 비롯해 '여성평화 한마당'과 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의 마련, 그밖에도 '여성평화 알뜰장'과 같은 기금조성행사라든가 '전쟁문화 퇴치운동'처럼 일반 여성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루탄 추방운동'과 같이 당시의 한국사회를 고려할 때, 어쩌면 지극히 한국적인 여성평화운동도 있었다. 즉, '80년대 전반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일반 민중의 민주화 열망에 의한 '민주화 요구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최루탄에 의존하여 저지함으로써, 경찰의 피해는 물론이고 최루가스의 독성

문제나 인명피해, 생태계 파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추방하지는 요지로서, 그 자체로서 곧 하나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80년대,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여성평화운동의 보폭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우선 주목해야 할 활동은, '90년대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쉼 없이 전개해 온, 정신대 즉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일제가 식민지 조선여성을 '성 노예'로 전시 동원한 '전쟁범죄'인 만큼 그 정확한 실상 규명과 그에 따른 국가배상 등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유엔에 이 문제를 제소하여 국제 여론화하는데도 성공함으로써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괄목할 성장으로 기억될 만 하다. 아래의 표는 정대협이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해온 국내·외 활동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1990년 11월 37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결성.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 요구, 강연회, 위령비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 정신대신고전화 개설 등 활동 시작.
- 1991년 1월 일본 수상의 방한 반대, 문제해결촉구, 규탄집회.
-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 시위' 시작. '정신대할머니돕기 국민 운동본부'를 조직하여 모금활동 전개, 생활 지원금 전달.
- 1992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참석,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발언. 이후 매년 이 문제에 대해 회의 참석하여 홍보함.
- 1993년 임시국회에서 '일제 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제정의 통과로 생존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 1994년 인권소위원회에 전쟁중 성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좌관 임명됨.
- 1994년 상설중재재판소에의 제소노력이 일본정부의 협조거부로 실패함. 이후 국제노동기구 (ILO)에 이 문제 홍보.
-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의 홍보·여론화.
- 1996년 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가 보고서 제출함.
- 1996,7년 ILO전문가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보고서 작성되었으나, 일본정부의 로비에 의해 ILO 총회에 상정되지 못함.
- 1998년 10월 북한의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의 제안으로 북경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 여성의 3자 회합이 개최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독립된 의제로서 다룸.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문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요청서를 공동합의문 형식으로 채택함.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북한이 협력하여 함께 공동조사 벌이기로 결정함.
- 1999년 북한에 '2000년 일본군 성 노예전범 국제법정'에 공동기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자고 제의함(2000년 7월 마닐라 준비회의에서 이에 대한 회답을 받은 바 있음).

정대협의 이 같은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무성의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여타 아시아국들에게 운동모델로 제시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의 남북한 정상회담기간 동안 실시된 사회 각 분야별 남측 수행인사들과 북측 관계자간의 교류

에서, 여성계는 정신대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매개로 한 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이 언급된 적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90년대에 들어 국내 여성평화운동은 국제적으로도 그 시야를 넓히고 있음이 주목된다. 1991년 미국과 유엔의 다국적군에 의한 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반 생명적·반 평화적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전쟁 중지를 호소하였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각계 여성단체들이 함께 주관하여 '페르시아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 발표를 비롯하여, '걸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을 결성하고 '걸프전쟁과 전쟁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외에도 '어머니 편지 보내기'나 전단배포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로써 국내 여성평화운동은 세계여성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적 차원에까지 인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외관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충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공감의 틀을 형성하고 이로써 국제적 연대 확보의 가능성 등에 주목하게 되었음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여성평화운동은 '방위비 삭감운동'에서 보듯 방위비 지출예산의 삭감을 통한 사회복지, 특히 여성복지비용의 확대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전제된 대안제시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을 보다 피부에 접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7,80년대의 반전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운동이 지속화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일레이기도 하다.

한편 '90년대 초반 무렵은 기존의 경직된 남북관계에 전환이 모색되던 시기로, 1991년의 남북합의서 채택 및 1993년 초기 '문민정부'의 대북 유화책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경우건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역시 제한적이긴 했지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넓어진 활동공간을 여성평화운동이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북여성교류'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의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둔 일본의 여성단체를 매개 고리로 하여 1991년 남·북·일 여성에 의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도쿄에서 제1차로 개최된 이래 1993년 도쿄에서 제4차 토론회가 개최되기까지, 남과 북의 여성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종군위안부라는 공동의 여성관심사를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동 토론회도 중단되고 말았지만, 분단 후 최초의 남북 간 민간교류이자 아시아 평화 관점에서의 여성 이해 등 그 의미의 중대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지난 6월의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 토론회를 통한 남북한 여성교류를 다시 복원하려는 준비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0년대 후반 들어 남북관계는 정부의 '햇볕정책'이 의도하듯, 공존공영을 대전제로 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초점이 모아지고 이를 위해서는 기왕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던 상호주의 원칙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정부의 공식창구에 의한 교류창구 일원화라는 기존 방침의 변화에 따른 민간교류의 활성화 등 전진적 변화가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같은 인도적 견지에서 여성평화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이밖에 북한을 이탈한 여성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여성의 생활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이탈 여성주민을 위한 활동'도 눈에 띈다.

<표 IV-2> 북한동포 및 북한이탈 여성 돕기

연도	활 동 내 용
1997년	<p><북한동포돕기운동: 평화의 쌀 나누기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6년의 홍수피해에 이은 '97년의 가뭄 및 해일피해, 만성적인 사회기간시설의 폐쇄화, 영농기술의 낙후, 외환보유량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평화의 쌀 나누기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단체 및 가두 캠페인을 통해 모금운동 전개 -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을 위한 분유 보내기
1998년	<p><북한이탈 여성주민을 위한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9월까지 북한이탈여성의 수는 115명, 그중 96명이 국내에 거주함 - 환난위기 이후 열악한 생활형편과 남한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 곤란으로 고통받음 - 단기적이고 생활지원에 토대를 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통일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방안 모색될 필요 - 서울시의 지원 아래 남북여성들간의 대화모임 마련, 상호이해 높임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국내 여성평화운동은 그 시원적인 '70년대 중반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활동'을 거쳐 '8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평화'를 기치로 전개되기 시작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전문화·국제화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1990년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면서 국제사회로 활동의 공간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경우는 가히 한국사회의 독특한 여성평화운동으로 자리 매김 될 만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저변에는 그야말로 근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온갖 종류의 억압과 질곡의 상징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민족모순을 비롯해 여성으로서의 성모순, 피지배계급으로서의 계급모순 그리고 해방 이후에 들어서는 분단모순 등 현재에 이르러서까지 여전히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제반 반 평화적 요소 등이 종합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북한여성들과 공감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 이미 당면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남북 간 교류의 시대에 북한여성들과의 협력활동을 매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런가 하면 '90년대 후반 들어 우리는 주목할 만한 여성단체의 출현을 보게 되는데, 바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다. 평화란 지켜지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정현백, 2000b)임을 국내의 다른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앞서 인식한 동 단체의 활동을 통해 국내 여성평화운동도 이제 전문화의 지평을 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당연하게도 '7·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초·중반을 거치면서 성숙해 온 여성평화운동의 내부역량의 성숙에 기인하는 것이다. '평화'라는 공동선 아래 제 외국여성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외에도 여성평화운동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 속에서,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내 평화공존체제의 정착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 동 단체의 역할에 대한 주목과 기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21세기 발전, 안보와 평화 수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평등과 인간안

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비전은 배제와 폭력을 촉진하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민중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인 토대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가진 여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수립과 정책결정의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4. 독일과 남북예멘 사례를 통해 본 여성참여의 중요성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의 중요성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경험에서 그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가. 독일

독일은 1972년 동서독 기본법 체결 이후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예술, 방송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통일을 이루었으나 너무 빠르게 진전된 통일과정에서 통일협상회의에 여성참여를 이루지 못하여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없이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우선 노동법상의 규정이나 낙태에 관한 규정 등이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들은 통일된 이후 실업자의 우선 대상이 되었고, 정부는 노력은 하였으나 부족한 사회보장 정책 하에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독 지역의 여성들은 자유주의 시장체제로의 급작스러운 변화과정 속에 우선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였고, 심리적으로도 2등 국민이라는 열등의식에 빠지고 말았다. 현재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2~3년 기간의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독일 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려면 1~2세대는 지나야 가능하리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경험에서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발전을 위한 동서독 여성의 조화 형성을 위한 교류와 자발적인 여성단체 조직을 지원하는 교류에서 배우는 바가 크다. 특히 급속하게 이루어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

는 독일 통일 후의 여성문제를 교훈 삼아 우리 남북한 여성은 통일 전에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과 정부 등 각계 각층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 가운데 여성 교류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남북예멘

남북연합 단계를 겪었던 남북예멘의 경우도 남북한 여성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어주고 있다. 실제, 1990년 5월 22일 통일을 성취한 예멘은 4년 여만에 다시 분리되어 2개월여의 내전을 거쳐 1994년 7월 7일 북예멘군의 아덴 함락과 더불어 무력에 의해 재통일되었다. 예멘의 통일은 역사에서 선례가 없는 독특한 유형인데 1990년의 통일은 합의에 의한 대등 통일로 불려졌고 1994년의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남북예멘은 1988년 국경근처에서 유전이 발견되자, 남북예멘이 상호 협력해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하에 1988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1990년 국가연합의 행태로서 남북연합을 하고, 1993년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과도기간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에는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이, 부통령에는 남예멘의 알비드 사회당서기장이 맡도록 했다. 각료직은 21개에서 34개로 늘려 북예멘 19, 남예멘 15로 배분했다. 각료직은 장관이 북쪽출신 인사일 경우에는 차관을 남쪽출신이 맡도록 하는 등 지역적으로 안배, 어느 한쪽이 독주를 못하도록 했다. 각료직이 늘어난 것은 통일로 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때문이다. 신설부처는 관광부, 국방부, 도시개발부, 교민부, 외무담당 국무부, 수상실 담당 국무부, 의회담당 국무부 등이 만들어 졌으며 경제분야에서의 통합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경제통합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화폐통합으로 이루어졌는데, 북예멘의 화폐는 리알이고 남예멘은 디나르인데 두화폐 모두 통용시키고 있다. 완전통합이 되면 디나르로 통일될 예정이다. 현재의 교환비율은 1디나르 대 20리알,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 통화가 통용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뒤따르고 있으나 예멘국민들은 이들 통일을 위해 치루어야 할 희생의 하나로 생각, 혼란을 잘 견디어 내고 있다.

이밖에 군부와 외교도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이다. 통합된 군은 수도지역을 벗어나 주로 국경을 비롯한 군사지역에 재배치되고 있다. 외교 면에서는 아덴에 공관을 두고 있던 국가들은 사나로 옮기거나 철수했으며 일부국가들은 장래에 대비, 철수시키지 않고 영사관이나 무역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나로 공관을 이전시킨 국가 중에는 체코와 쿠바도 있다. 예멘정부측도 해외에 있던 남북의 공관들을 사실상 하나로 통합했다.

사회적 통합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중 가장 민감한 문제중의 하나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¹⁶⁾로 당시 여성들은 각료나 정부에 참여하여 통일이후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남예멘은 1967년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국가차원에서 여성해방을 위해 여성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슬람교의 영향이 큰 가운데 남예멘의 경우 초등학교의 무교육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취학 연령비 36%만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은 통일이후에는 심화되었다. 따라서 남예멘의 경우 여성의 지위는 사회주의 이전보다 나후하였고, 북예멘도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하에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었다. 남북예멘은 1993년 총선을 통하여 북예멘이 승리하여, 북예멘 중심의 통일을 이루었으나, 남예멘에서도 다른 유전이 발견되자. 남예멘의 실권 사회당의 알비드 서기장이 남예멘의 수도 아덴으로 돌아가면서, 남북통일이 다시 깨지고 1994년 무력으로 인하여 북예멘중심의 재통일을 이뤘다. 한편 남북예멘간의 1994년의 무력충돌과 재통일을 겪으면서 예멘의 여성지위는 더욱 반동적인 회귀를 보였다. 결국 북예멘의 무력에 의한 재통일이 달성되면서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던 남예멘의 여성정책에 대한 목소리는 완전히 보수적인 주장 속에 묻히고 말았다. 여성정책의 재이슬람화가 빠르게 진전된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가 알려지지 않아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살레대통령의 담화 속에는 상당히 강한 종교적인 어투가 등장하게 되었다. 재통일과 더불어 곧 정권의 이슬람화를 표방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여성

16) 허성순(2000, 7), “남북예멘통일”, 『자유공론』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행정부에서 여성공무원을 축출하였고, 남자국민학교에서 여교사의 임용을 금지하였다(Taheri 1994, 220). 결국 국민회의당은 연정의 동반자였던 예멘사회당이 제거됨으로써 좋은 싫든 이슬람개혁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국이 안정되고 속히 무력충돌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치세력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국민회의당은 재이슬람화를 통해 이슬람개혁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게 되었고 여성정책은 재이슬람화의 과정 속에서 반동적인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국가의 노동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정치에의 참여는 억제되는 분위기였다.

남예멘은 혁명의 동반자로 여성을 계급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여성조직까지 구성하고(예멘여성총동맹) 의회와 각급 위원회에서 여성의원과 의원을 일정비율 할당으로 총원하고 있었지만 정책결정과정에 진입은 어려웠다. 정계에 진출해 있는 여성의 수가 워낙 적기도 하였고 남예멘 정부에서 여성을 총원하는 것이 여성해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여성을 동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여성들의 교류가 전혀 없었고, 통일과정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일이후의 여성정책, 또 무력으로 인한 재통일이후의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을 보인 것이다. 물론 예멘의 통일방식이 기능주의적인 접근보다는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인 타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았던 데에 원인의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여성의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노력의 선행 없이 여성들은 통일로 나타난 정치적인 혼란, 사회혼란과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일과 남북예멘의 사례는 앞으로 남북연합을 추진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나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연합단계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남한의 여성통일정책은 무엇보다 남북여성교류를 확대하면서 남북한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예멘의 경

우 이런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북예멘 여성들의 의식은 서로 달랐고 서로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도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고 여성의 지위는 후퇴하였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잘 보았다. 통합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또 다른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예멘을 통해서 본 바 예상되는 이질감의 해소는 통일을 대비한 여성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통로를 거쳐서든 남북한 여성간의 교류의 필요가 강조된다. 이는 통일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길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단순히 민족의 재결합의 의미가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보다 많은 자유와 복지의 보장 속에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발전의 계기가 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여성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여성의 임무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측은 남북회담이나 교류협력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여성단체의 재정지원, 북한연구지원, 아울러 각 여성단체들도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지를 갖고 북한 여성단체의 자율적 조직을 지원할 만큼 발전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있으며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그 동안 남북여성이 이루어 놓은 것을 상호 존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을 앞둔 한반도는 체제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요청되고, 여성들의 통일논의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남북한 여성조직과 정책

1. 남북한 여성관련 조직

가. 남한의 여성관련 조직

(1) 남한 여성정책 추진과정¹⁷⁾

남한에서의 여성정책은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과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진되고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진 여성운동으로 여성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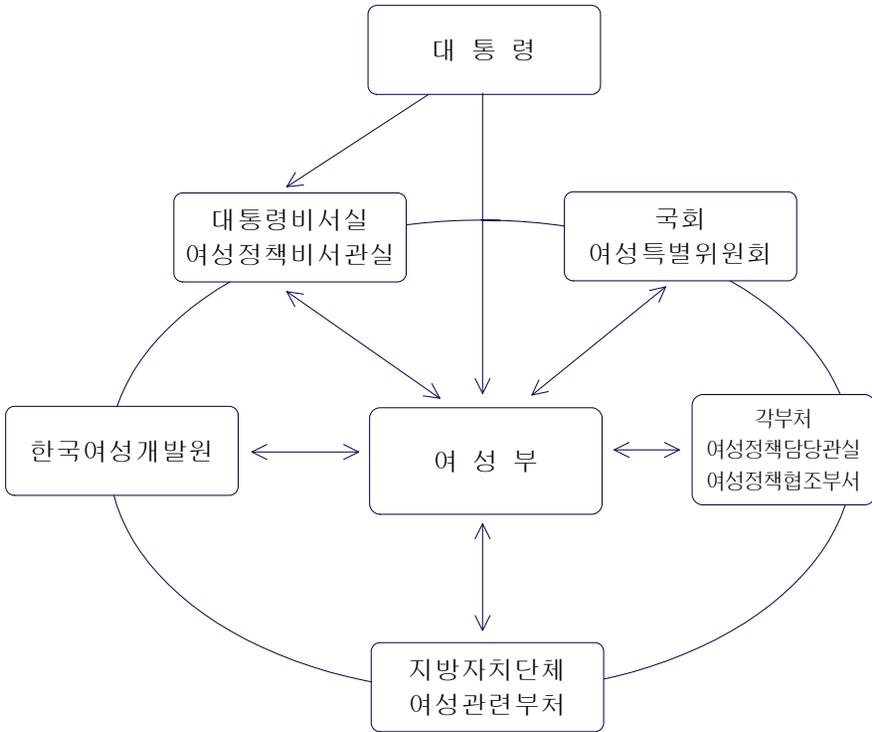
일반화된 여성정책이 마련된 것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7)에서도 ‘여성부문’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회의 이후 1995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제시하여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001년 여성부로 오기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남한의 여성정책관련 정부기구

여성정책관련 기구의 생성과정을 연대순으로 보면,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88년의 정무장관(제2)실, 가정복지국, 1994년의 여성특별위원회(국회), 1997년 정무장관(제2)실

17) 김재인·유희정·양애경(1999),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개발」(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일부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은 폐지되고,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여성부로 설치되었으며 이와 함께 6개 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 운영되어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 실행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여성정책 관련 기구간 연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여성정책 관련 기구간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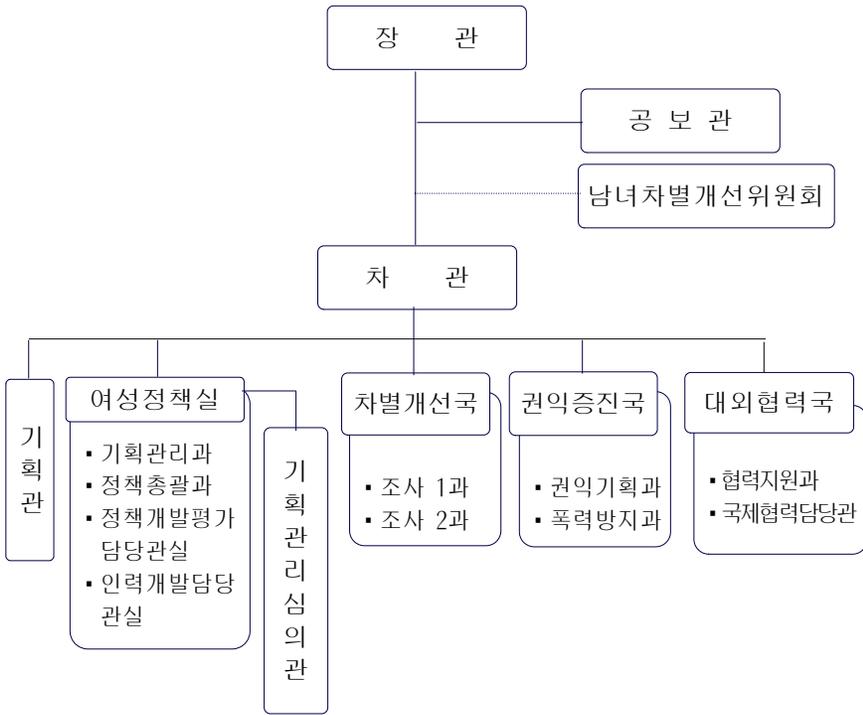
입법부인 국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어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성정책을 심의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행정부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있어 여성정책의 개발,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민간으로부터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 개발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6개 부처에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어 여성정책의 실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자아실현과 지위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과제를 심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단체 등은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특히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남북화해협력과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문제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통일고문회의 6명(29명중 20%), 정책자문회의 4명(48명중 8.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3명(25명중 12%)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통일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여성통일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일준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⁸⁾

여성부에서 통일관련 업무는 주로 협력조정관실에서 맡고 있으며, 그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그림 V-2> 여성부 조직 및 기능

(가) 여성부의 정책기조(2001년)

2001년 1월 29일에 발족한 여성부는 남녀평등한 민주 인권복지국가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권의 보장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양성·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권의 보장은 남녀차별적 법 및 제도와 관행의 개선과 여성의 권익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여성정책의 주류화 및 생활화, 여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문제를 국가정책에서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증진하는데 두고 있다. 여성정책의 생활화

60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를 위해서는 법제상(de jure)의 남녀평등을 넘어 의식과 문화속에 정착하는 실질적인(de facto) 평등정책을 추진해가는데 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정책을 추진하고, 일반주부, 소외계층 등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두고 있다.

소관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 등 5개 법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나) 주요업무 현황¹⁹⁾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에의 여성의 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디지털 시대의 여성 정보화 능력개발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여성 권익보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피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로 국민의 만족도 제고 - 성희롱 예방정책의 체계화로 건강사회 구현 -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일본군위안부 지원 및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 생활속의 평등문화 뿌리내리기 사업 추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강화 - 여성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강화 - 국제협력체제 강화

(다) 여성정책 현황 및 과제

1995년 한국의 여성정책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가 마련되었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이루어졌다.²⁰⁾

19) 여성부(2001), 「주요업무현황」

20)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과제」.

단기과제는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한 것으로는 ①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②방과후 아동

1998년 여성정책기본계획 (20대 정책과제)의 목표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 중점 추진과제의 특성으로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것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과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여성고용의 촉진,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여성의 평생 교육 지원),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 불균형 해소,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여성 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자원봉사 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통일에의 기여) 등이 있다.

통일관련 여성정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 통일정책에의 여성참여 확보 및 여성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관련 통일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여성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통일전후에 발생할 여성문제 및 대책방안을 통해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9).

지도제도 도입, ③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이다. 그리고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 마련으로서 ④여성의 공직참여비를 제고목표 설정과 ⑤공기업 신규채용 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있다.

중기과제는 ⑥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식 확립과 여성취업능력의 개발 및 여성관련 정보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⑦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개선과 ⑧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성차별 관행 및 인식개선을 위한 법 체제 정비 등 여건조성, ⑨「여성발전기본법(가칭)」제정 추진, ⑩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현 정부의 여성정책의 과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의 여성문제의 주류화, 기존 국가기구의 기능 강화 및 여성정책 담당 행정조직의 주류화, 모든 국가정책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정치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차별의 극복정책 (감정적 우대조치의 구체적 개발과 여성의 경력 발전 지원 정책,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여성단체활동의 지원으로 여성의 영향력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3)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²¹⁾

남한 여성NGO의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허가법인체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1999).

중앙부처 허가법인인 여성비정부기구를 보면,²²⁾ 현재 활동중인 여성단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단체, 특수법인조직부, 재단법인 등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정식 법인이 79개, 그 회원 수는 700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단체는 각 시·도에는 1개의 여성단체협의회, 임의단체,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다.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는 여성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적 단체들로서 대표적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12월 25개 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서 현재 42개 회원단체와 14개의 협동회원(시·도여협)으로 구성되어 회원수는 310만명에 달한다. 설립목적은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는데 있다. 여협은 법

21) 남한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현황은 윤석인 (2000), “한국 여성NGO의 민주성과 조직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7의 글을 참조하였다.

22)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여성단체현황』에서는 형태별로 볼 때 사단법인 112개, 재단법인 3개, 공법단체 1개, 특수법인 3개, 대학교부설 15개, 사회단체 9개, 그리고 기타 57개로 총 200개가 있다. 등록단체도 중앙정부에 101개로 되어있다.

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해왔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오유석, 2000:41).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1987년 2월에 발족하여 현재 28개 회원단체와 5개의 지부가 있으며 회원 수는 24,022명이다.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 여성복지, 민주통일사회실현 추구를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남녀불평등해소와 여성의 사회 정치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남한사회의 근본적인 계급문제나 민주주의 문제해결을 통해 여성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나. 북한의 여성 관련조직

북한사회는 자율적인 여성들의 사회조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어 여성비정부기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만의 조직은 조선로동당 외곽단체인 사회단체로서 북한최대의 여성단체이며 근로대중단체의 하나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 있다.²³⁾ 그리고 1998년 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표조직으로서 조선여성협회를 창립하여 대외적 사업을 맡게 하였으며, 여맹은 내부 사상 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 여성 관련 주요단체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들 수 있다.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었으며 1951년 1월에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되었다. 초기의 여맹 임무는 여성들과 여성들을 통하여 가족 세대 내에서 자본주의, 봉건주의 사상을 제거하며 여성들의 사상을 계몽하고 비문해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여맹 조직은 당의 다른 외곽 단체와 마찬가지로 가정주부들을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인민군대 원호 등 당 정책 관철을 위해 동원되는 역할을 맡고 있다(정유진, 1999). 그 후 여맹의 임무는 ①사회주의 생활양식확립 위해 투쟁 ②여성들의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사업

23) 대외단체로서 ‘아시아여성들과 련대하는 조선여성협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추진 ③공산주의 교양강화 ④천리마작업반운동 ⑤후대들에 대한 교양강화 ⑥인민군원호사업 강화 등으로 확정되었다.

여맹기구는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리·군·도·중앙에 여성동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²⁴⁾ 중앙부서로 조직부, 지방지도부, 선전선동부, 아동교양부, 생활문화부, 노동여성부, 통제부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관지 『근로녀성』과 기관잡지 『조선녀성』을 발간하고 있다. 여맹의 위원장은 박정애(제1,2차대회), 김옥순(제3차대회), 김성애(제4,5차대회), 천연옥(제6차대회), 박순희(제5기 34차)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맹조직이 결국 북한정권의 여성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유일한 ‘독점적인’ 여성조직으로 위세를 떨치던 여맹은 가입대상이 한정 (원래 18세에서 55세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에서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가입 연령이 30세에서 55세까지의 가두여성으로 그 자격이 제한) 되어 직맹이나 사로청, 농근맹과 같은 다른 근로단체에 이미 가입된 여성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조직이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여맹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영향력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사회 전반에서 여맹의 지위가 격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⁵⁾ 따라서 이러한 여맹의 지위변화는 여맹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4대 근로단체 가운데 하나이며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동원이라는 과제를 떠맡고 있는 유일한 여성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여전히 여맹이 핵심적 여성조직으로서 여성대중의 동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24) 손봉숙(1998), “조선민주여성동맹연구,” 이종석(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서울: 세종연구소).

25) 이러한 여맹의 위상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pp.188-189.25);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분석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참조.

(1) 여성전담조직 :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²⁶⁾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었으며 1951년 1월에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되었다.

초기의 여맹 임무는 여성들과 여성들을 통하여 가족 세대 내에서 자본주의, 봉건주의 사상을 제거하며 여성들의 사상을 계몽하고 비문해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여맹 조직은 당의 다른 외곽 단체와 마찬가지로 가정주부들을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인민군대 원호 등 당 정책 관철을 위해 동원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유진, 1999).

그 후 여맹의 임무는 ①사회주의 생활양식확립 위해 투쟁 ②여성들의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사업 추진 ③공산주의 교양강화 ④천리마작업반운동 ⑤후대들에 대한 교양강화 ⑥인민군원호사업 강화 등으로 확정되었다.

여맹기구는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리·군·도·중앙에 여성동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V-3>).²⁷⁾ 중앙부서로 조직부, 지방지도부, 선전선동부, 아동교양부, 생활문화부, 노동여성부, 통제부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관지 『근로녀성』과 기

26) 통일부(2000),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0』, 서울: 통일부.

▶조선민주여성동맹 : (1)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 부위원장 강관선, 강점숙, 김경옥, 로찬실, 오연옥, 왕옥환, 정명희, 한계옥, 허창숙, 홍선옥 (2) 상무위원 중앙위원, 서기장, 탁아소 및 유치원사업부, 국제부, 평양시(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 사동구역, 만경대구역, 형계산구역, 용성구역, 역포구역, 중화군, 남포시(강서구역), 개성시(개풍군), 평안남도(덕천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사리원시), 강원도 위원장(철원군)이 있음.

▶여성전담조직으로 <아세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 초기명칭>가 있는데 여맹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조직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 동 협회의 활동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의 실행위원회로서, 그리고 ‘중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의 북측대표로 참가하였다.

27) 손봉숙(1998), “조선민주여성동맹연구,” 이종석(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서울: 세종연구소).

관잡지 『조선녀성』을 발간하고 있다. 여맹의 위원장은 박정애(제1,2차대회), 김옥순(제3차대회), 김성애(제4,5차대회), 천연옥(제6차대회), 박순희(제5기 34차)²⁸⁾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맹조직이 결국 북한정권의 여성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맹 지도자들의 면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충원과정에서의 문제이다. 대체로 여맹의 고위간부들은 김일성의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주요 당 간부들의 친인척들이다. 1970년대 이후 여맹 간부들은 대체로 고위 당·국가 간부들의 아내였다. 다음으로는 여맹 간부들 중에서 북한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서열 가운데 여맹 출신이 아닌 인사들이 주요한 여성지도자로서 활약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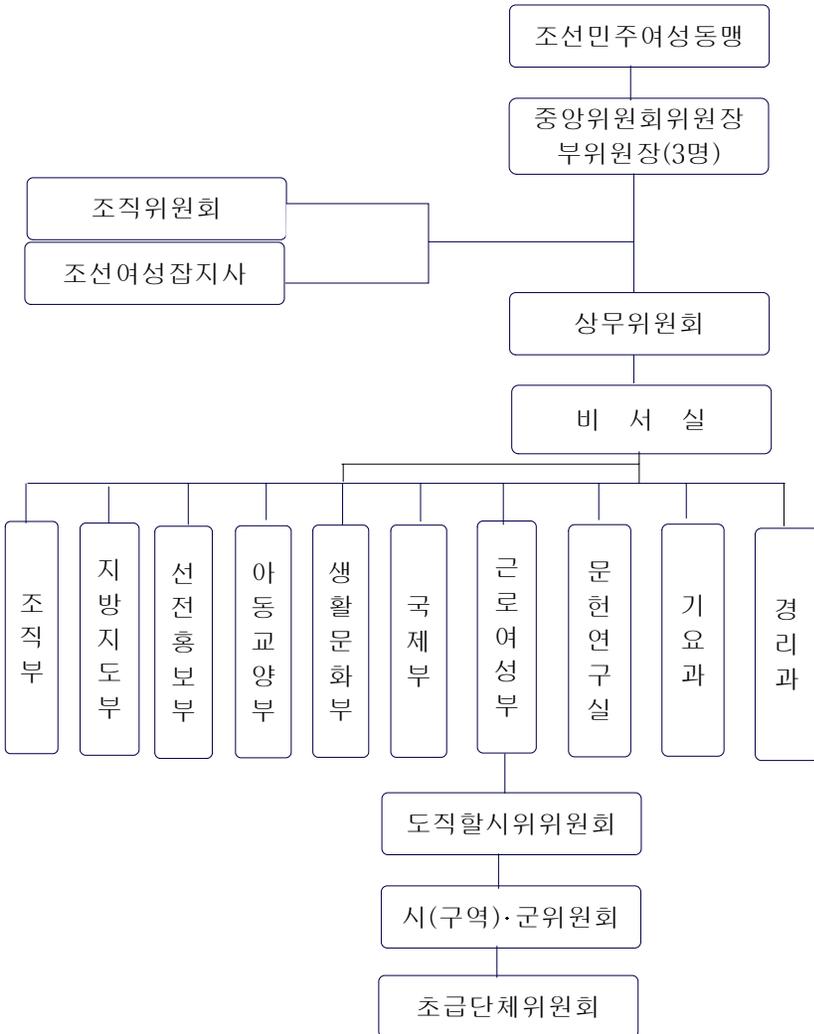
여맹 조직구성의 특징은 북한의 모든 여성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나 다른 외곽단체에 가입한 직업여성들을 제외한 가정주부들만 가입돼 있다는데 있다.²⁹⁾ 즉 여맹은 농촌을 제외한 전국의 가정주부들로만 조직된 조직이며 청년동맹 생활을 하던 여성들도 시집을 갈 경우 직업이 없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여맹에 가입된다. 한때 여맹의 수는 250만명에³⁰⁾ 이른다고 추정되었는데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조직이 축소되어 98년 10월말 현재 여맹원 수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

28) 주식회사 연합뉴스(2000), “연합뉴스”

29) 북한 여성은 누구나 18세 이상 (55세 까지)이 되면 여맹원이 될 수 있는데 1980년 중반이후부터 그 회원은 가정주부와 어머니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1983년 제 5차 여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에 따라 다른 사회단체 (여맹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로단체에 참여하여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만 14-30세 이상 여성은 <사회주의노동자청년동맹>에, 만 30세 이상의 여성노동자와 사무원은 <조선직업총동맹>에, 만 30세 이상의 농업여성노동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가입해야 하고 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만 18이상-55세까지의 여성들은 <여맹>을 중심으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에 가입한 여성들이 여맹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서 여맹은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에서 가두여성(도시나 로동지구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원료와 자재를 집에 가지고 와서 가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가내 작업반의 형태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한다) 과 전업주부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되었다. 오유석(2000) 참조

30) 내외통신사(1998) 『내외통신』, 종합판, p.388

다. 여성동맹의 임무는 여맹 규약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여성들 속에서 당의 유일 사상교육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여성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김정일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 바쳐 옹호 보위하는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림 V-3>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조직기구

그러므로 여맹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여맹 조직들이 정치학습을 통한 교양사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여성들을 김정일에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만들고 여성들 속에서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북한은 1968년에 ‘가정 혁명화’란 구회를 제시하고 가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로부터 사상개조를 해야 한다면서 여성들 속에서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생산현장에 적극 투입시키기 위하여 각종 선전 선동 수단들을 총동원한 바 있다.

그러나 73년 김정일에 의한 여맹 비판 및 기구개편 이후 여맹의 활동은 지금과 같이 충성의 꺾기모임 및 학습이나 회의, 생활총화, 인민군대 원호사업, 외화벌이, 폐품수집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맹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를 계기로 강관선 여맹 서기장 등 여맹 관계자들과 전국 여맹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 전국 여맹 일꾼들의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한바 있다. 이날 모임의 보고 및 토론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첫째, 김일성의 사회주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데 있으므로 모든 여맹원들은 김정일을 목숨으로 받들어야 한다. 둘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민민이 김정일의 영도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하다. 셋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강해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동맹원들을 군민 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계속 활짝 꽃피우며 인민·군대 원화사업에 여맹 조직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맹은 98년 10월 29일 여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여맹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맹중앙위원회 제 5기 2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전원회의에서는 여맹 중앙위원장 천연옥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보고와 토론에서는 김정일이 98년 10월 1일 자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제시한 ①감자농사의 획기적 전환 ②축산업의 대대적 발전 ③농촌 전기화 실현 ④국토관리 강화 ⑤군지도 일꾼들의 역할배가 등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독려했다.³¹⁾ 이렇게 볼 때 여맹의 활동

은 여성특유의 문제나 성차별보다는 북한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위해 여성을 동원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이로 인해 가부장적 특성을 내적 모순으로 안고 있는 수령론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여성관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가부장제적 역할을 강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 정책에 위반하여 남편의 권위만을 주장하거나 부인을 학대하는 등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인된 여성권익이 침해될 때 강력한 비판과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오유석, 2000). 사업 면에서는 독자성과 책임성을 갖는 조직이기도 한데(조선여성, 1989:27), 즉 여맹 일꾼들이 사업을 주동적으로 설계하고 자체의 힘으로 집행해나가기 때문에 여맹이 당적 지도를 받으면서도 독자성과 책임성을 갖고 자기 사업을 하는 조직인 것이다(이승희, 1994). 그러므로 여맹은 앞으로 북한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가부장제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의 등장(백남룡, 1992)과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 사회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북한에서 유일한 '독점적인' 여성조직으로 위세를 떨치던 여맹은 가입대상이 한정 (원래 18세에서 55세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에서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가입 연령이 30세에서 55세까지의 가두여성으로 그 자격이 제한) 되어 직맹이나 사로청, 농근맹과 같은 다른 근로단체에 이미 가입된 여성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조직이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여맹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영향력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사회 전반에서 여맹의 지위가 격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따라서 이러한 여맹의 지위변화는 여

31) 북한 중앙방송, 98.10.31 (『내외통신』, 98.11.2 제 11411호), 정유진, p.95에서 재인용

32) 이러한 여맹의 위상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김정일과 김성애의 권력갈등의 산물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여맹의 위상변화를 북한 사회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나온 조직체계 재편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다. 여맹의 필요성은 오히려 감소

맹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4대 근로단체 가운데 하나이며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동원이라는 과제를 떠맡고 있는 유일한 여성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여전히 여맹이 핵심적 여성조직으로서 여성대중의 동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제5기 34차 전원회의에서 조직문제를 상정하고 여맹의 중앙위원장에 박순희가 새로 임명되었다.

2. 남북한의 사회 및 여성정책 비교

가. 남북한의 사회상황 비교

(1) 남북한의 이질성

남북한 민족 이질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가) 정치상황

8.15해방과 한반도를 미소 양군이 분할 점령하게 되면서 남북 분단의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는 다원적 민주주의(3권 분립과 국민참여)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이식되었고 소련이 점령한 북한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 1당 독재의 사회주의 제도가 이식되었다.

된 반면 직장단위의 조직생활의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pp.188-189.32));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분석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참조

(나) 경제상황

남한의 경제체제는 ①의사 결정의 분권화 ②시장 제도 ③사유재산권 ④ 동기유인 ⑤자유 개방 경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인 반면 북한은 ①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②관료제도 ③집단적 소유 ④통제 및 명령체제 ⑤비경쟁 ⑥자급자족의 폐쇄 경제를 골격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지니고 있다.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은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사적 소유 배제)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이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①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②중공업 우선 정책 ③군사, 경제 병진 정책이며 경제 관리의 원칙은 ①당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②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 ③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 ④‘원에 의한 통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독립재산제 실시의 원칙 등이다.

(다) 사회문화 상황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근대화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 성격도 각기 달라졌다. 남한은 자유주의적 근대화를 지향하여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통해 상당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간·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정치적 저 발전과 더불어 사회규범의 혼란을 가져왔다. 북한의 경우 근대화에 따른 사회·문화가 공산주의 동원 체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통제됨으로써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이념 실현의 명목 하에 개인과 특정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체제로 발전되었다.

(라) 언어 상황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비교적 언어 영역에 있어서는 이질성 보다 동질성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은 북한의 경우 ①표준어를 문화어로 표현 ②한글 전용과 외래어 사용 금지 ③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새로운 어휘를 신조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의 언어 격차(김민수, 1992:98-103)는 첫째, 남북한 표준어는 그 명칭과 규정부터 전혀 다르다. 둘째, 남북의 맞춤법은 그 원칙에 있어 주시경을 계승한 일제하의 <통일안>을 다 같이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

(마) 교육상황

남북한의 교육은 교육의 이념에서부터 교육 체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 제 부문에 걸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조기교육의 원리를 수용하여 취학전 교육을 강화, 보편화 시켜왔고, 일하면서 배우는 사회주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인교육 체제를 중시하고 있다. 교육 이념과 목표에 있어서 남한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두고 전인교육, 민주주의, 세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개인 차원의 인격 완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헌법 제4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단주의에 바탕한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목적을 우선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정치를 우선하여 교육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수단화하려는 특성이 강하다.

(바) 가치체계와 의식구조 상황

한 연구(문용린, 1993)에 의하면 남한의 가치체계가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자유, 경쟁, 사유재산, 자아실현, 사생활 존중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공산,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평등, 협동, 공유, 집단 이익 등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어 남한에서는 개인 가치가 존중되고, 북한에서는 집단 가치가 강조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 체계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남한은 사고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강조하고, 북한은 획일성과 폐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2) 남북한의 동질성

민족의 공통적인 특성은 정치체제나 경제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틀로서 형성되기도 하며, 문화, 예술, 교육과 같은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하게 된다.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우선적으로 사회제도와 같은 일정한 틀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민족 내부의 삶을 규정하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남북한 민족 동질성들의 단면이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가) 단일 민족성

남북한은 한 핏줄을 나눈 단일 혈연의 동족 국가이며, 단일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비록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상이한 경제 체제로 인해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역사관을 지니게 되었으나, 삶의 양식과 의식구조를 포함하는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이질화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공유하는 민족성으로 한민족 특유의 기질인 ‘강인함으로 표방되는 고난 극복의 의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 ‘패기와 호탕함’, ‘가무를 즐기는 성향’ 등이 상정되곤 한다. 이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세계 도처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특유의 민족적 기질로 간주되고 있다.

(나) 전통문화의 공유

전통문화는 남한의 경우는 서구 외래 문화의 유입과 그로 인한 성업적 대중문화의 형성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상당 부분 붕괴, 외해되었고 북한 역시 김일성 주체 사상과 혁명 사상의 보급으로 거의 대부분의 민족 고유전통 문화가 왜곡되고 외해되어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는 전통 문화를 봉건적 잔재로 규정하여 폐지, 말살 시켰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통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민족명절을 보면, 북한의 명절은 8대 국가 명절과 4대 민속 명절(음력 설, 한식, 단오, 추석)로 되어 있으나, 남한과 같이 얼마전부터 추석이나 단오, 설날 같은 전통 명절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부활을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시 풍속과 민속놀이를 보면, 남한의 경우는 서구의 대중문화 유입과 함께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대체되면서 약화되었으나 최근에는 고유의 민속놀이를 부활시키려는 복고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한의 경우 민속놀이는 건전한 취미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성’, ‘인민성’, ‘집체성’의 의미를 지니며, 가무 놀이, 경기놀이, 겨루기, 아동놀이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남한과 유사한 형태로 계승되어 통용되고 있는 전통 문화로서의 민속놀이로는 씨름, 윷놀이와 장기, 농악, 널뛰기와 그네 등이 있다.

(다) 유교적 도덕규범과 미풍양속

도덕규범 중 전통적인 도덕 규범은 ‘유교적 가치 체계’를 기초로 하는 장유유서나 군신유의, 남존여비, 명분 주의 등은 남북한 사회 구성원들에 아직까지 면면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남북한 사회의 공통적인 공동체 의식으로는 강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속성, 가부장적 권위주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커다란 관심,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강력한 권력과 지위 지향성, 관존 민비, 남존여비 등이 지적된다. 물론 이러한 의식 중 남존여비 같은 부정적인 의식은 동질성의 요소라 하더라도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는 답습되거나 수용될 필요가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전 근대적 잔존 구습이기는 하나 가치 판단을 떠나 남북한의 동질적 요인으로는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측면 일 것이다.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도덕적 규범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동질화 가능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미풍양속과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전통을 자랑하는 예의범절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표 V-1>는 남북한의 사회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표 V-1> 남북한의 사회상황 비교

구분		남한	북한	
정치	이념	자유민주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주체사상	
	체제	다당주의 원칙하에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1당독재, 1인 수령지배체제	
	선거	출마와 투표행사의 자유 보장	1인 출마 하에 가부 표시	
	입법부	독자적 국회 활동 보장	형식적 입법기관인 최고 인민회의가 있으나 주요 권한은 주석에게 이양	
	사법부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제도적으로 당과 국가의 지도 감독	
	행정부	행정집행 업무 권장	입법 및 사법적 권한까지 행사	
	정당	창당과 정당활동 보장	조선 노동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정당	
경제	소유제도	사유재산제도	사회적 소유제도	
	배분원리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 통제와 계획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계획 경제	
	경제원리	이윤동기에 입각한 분권적 관리	이념 동기에 입각하여 중앙집권적 관리	
	경제정책	성장정책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토대로 중화학공업화와 정보산업화 추진	자립적이고 폐쇄적인 민족경제 건설 정책, 중공업 우선 정책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와 세계화	양적 성장에서 분배 형평과 지역균형 발전 추구	폐쇄적 자력갱생 노선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과 농업의 극단적 희생 강요
사회문화	사회의 특성	개인의 자유보장 사상의 다원성 인정 개인의 능력에 따른 업적주의 사회 정보의 공유화	집단주의에 입각한 통제사회 주체사상 유일의 사상적 획일주의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른 계급주의 사회 정보관리에 의한 폐쇄사회	
	주거	주거이전의 자유	주거이전은 국가의 계획에 의함	
	종교	종교선택의 자유보장	종교를 인정하지 않음	
언어	어문정책	관용법에 따라 언어의 자율적 흐름 중시	주체사상을 언어에 유착시키는 인위적이고 처방적임	
	맞춤법	언어의 변화에 따라 어휘, 발음 정리 (1988년 1월 한글맞춤법)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호까지 제정 (1954년 조선어 철자법, 1966년 조선말 규범집)	
	표준말	서울말(명칭:서울말)	평양말(명칭:문화어)	
	한자여부	국한문혼용	한자 폐지	
	외래어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사용	고유어로 고쳐서 사용	
	두음법칙	있음	없음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교육	교육이념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잠재력, 창의력 개발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 육성
	교육정책 방향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바탕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 양성
	학교제도	6-3-3-4제	4-6-4제
	의무교육	9년(일부6년)	11년(유치원1년 포함)
	대학입학 제도	적성과 능력 통해 자율 선택	당에 의한 선발 제도
	교원양성	중등교사를 사범대학 및 대학에서 양성	고등중학교의 고등반과 중등반을 각자 다른 기관에서 양성
	성인교육 기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	공장대학, 야장대학 등 기업소에 부설되어 기술 및 직업교육 실시
	영재교육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실시	혁명 유자녀 등 특수층 자녀대상으로 실시
가치체계		북한주민-주체사상, 전체주의, 집단주의, 반이기주의, 반개인주의, 타율적, 수동적, 자기중심적, 배타적, 폐쇄적, 자유보다 평등 중시,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 사회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나. 영역별 남북한 여성정책의 비교

남북한 여성정책을 여성 관련법, 가족정책, 여성교육, 여성노동, 여성정치, 여성지위, 여성관련 행정조직, 통일정책 등에서 영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남북한 여성들은 어떤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여성정책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여성관

남북한 여성들의 여성관은 남북한의 여성관의 차이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 민족으로서 상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깊다든지, 전통적 여성상인 현모양처를 선호한다든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50년간 분단된 상황과 이념의 차이가 가져다준 환경여건으로 인해 변화해온 사회적 상황이 남북한

간 여성관의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 즉 남한에서는 여성들이 현대적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 여성들은 진취적, 독립적, 열정적이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자립자강의 의지와 경제적 독립을 소유한 여성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여성을 노동력의 평등을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기본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본다는 점이다. 남북한의 여성관을 비교해본 자세한 상황은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남북한의 여성관

	남한	북한
여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적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음 ·직장에서도 남성들처럼 성공하려는 강한 욕구 가지고 있음. ·가사일, 자녀양육도 남편과 분담을 강조하며 여성자신의 주체성, 강한 사회적 지위를 바라고 있음.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구조,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며 남성과 함께 평등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있음 -남성적 특성(진취, 독립, 열정, 자신감, 자존심 자립자강의 의지, 경제적 독립과 부)을 소유한 여성을 더 바람직하다고 봄 -자녀관에서는 성차별적 전통적 자녀관이 두드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여성관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에 크게 영향 ·남녀평등은 인격적 평등이라기 보다는 노동력의 평등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여성상이란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기본적으로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품성을 갖고 당과 인민에 충성하여 최종적인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혁명적,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여성 -여성들이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억압 및 착취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움

(2) 여성 관련법³³⁾

(가) 남한의 남녀고용평등법(1987)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과 북한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북한은 1940년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을 제정하고 여성들이 직업에 종사하는데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 자녀관계, 부양의무, 후견, 상속 등 다른 가족법 분야는 규정하지 않아 문제를 낳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 이르러서야 가족법을 제정하고 있다.

남한은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까지는 여성들의 직업활동이 북한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경제발전에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남녀평등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북한을 능가하는 여성관련법이 차례로 제정되기에 이른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을 통해 고용에서의 불평등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1999년(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고용 이외에 교육, 재화와 용역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에서 남녀차별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5장 39조로 되어 있는 동 법률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총칙, 남녀차별의 금지, 전담기구, 조사 등의 절차, 보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남녀차별금지기준(1999)을 보면, 고용(채용, 임금, 승진, 배치, 퇴직 등), 교육(해외연수·직업훈련 등),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근로복지제도의 실시 등),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의 유형으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등을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

33) 관련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2001년에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전산후휴가 3개월을 확보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나) 낙태 관련법

낙태의 경우 남한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를 통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법규는 남북한에서 함께 여성과 유아의 인권과 관련된 조항이므로 여성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피임도구의 활용이 여의치 않고 원하지 않은 임신은 곧 절대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시각의 차이가 있다.

(다) 호주 및 호적제도 관련법

호주 및 호적제도의 경우 남한은 민법 제984조, 제779조, 제784조 등과 호적법을 통해 보장하며,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1995)의 제정으로 호적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기의 남북한 여성관련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때 간통죄와 낙태죄, 이혼제도 및 호주제 관련법규 등에서 차이는 남북한 여성관의 차이와 더불어 통일 후 여성관련법제 정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3〉 남북한의 여성관련법 I

항목	남한	북한
간통죄	-형법 제241조를 통해 간통 금지	-처벌하는 규정 없음
낙태죄	-형법 제269조, 제270조를 통해 범죄로 규정	-처벌하는 규정 없음
이혼제도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을 인정	-재판상 이혼만 인정
호주 및 호적제도 관련 법규	-민법 제984, 제779, 제784조 등과 호적법을 통해 보장	-1995년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폐지

전반적으로 현재 북한은 남한과 대비되는 관련 법제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성들의 평등의식의 부족과 가부장적 의식 속에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한의 여성 관련법을 시대별, 내용영역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보면 각각 <표V-4>, <표V-5>와 같다.

● 시대별 비교

<표 V-4> 시대별 남북한의 여성관련법

구분	남한	북한	비고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남녀관계에서 지속되던 일제잔재와 봉건적 남녀관계를 개혁하고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 마련,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 전근대적 가족질서 붕괴, 새로운 가족법의 초석 -9개 조문(제1조-경제·문화·사회·정치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선언, 제2-3조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노동권,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보장, 제4조 자유결혼의 권리 및 강제결혼의 금지, 제5조-자유이혼의 권리 및 이혼시 아동양육청구권, 제6-7조-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인 법정결혼연령과 일부일처제 원칙, 제8조-여성에게 남자와 동등한 재산상속권과 이혼시 재산분배청구권의 보장 등 -동 시행세칙(1946.9): 29개조문-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제1조), 교육과 문화생활권(제2조),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대우의 금지(제3조), 여성의 재산상속권(제5조), 토지분배청구권(제6조), 부부합동재산제(제7조), 결혼(제9-10조), 협의이혼(제10조), 재판상 이혼(제11조-19조), 양육비청구권(제20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21조),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과 규칙의 무효(제23조), 윤락행위금지(제28조) 등을 규정 ▶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3.5) ▶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6.24)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7.30) ▶ 인민공화국 헌법(1948.9.8) ▶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2.1) 	<p>-북한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동시행 세칙에서는 부부 자녀관계, 부양의무, 후견, 상속 등 다른 가족법 분야는 규정되지 않음</p>

(뒷장에 계속)

82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구분	남한	북한	비고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사회주의 헌법(1972.12.28)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29) -사회주의로동법(1978.4.18)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1991) ▶모자보건법(1994) ▶여성발전기본법(1995)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개정(1997.3.25): 육군사관학교는 98년부터, 해군사관학교는 99년부터 여학생 모집 허용 ▶국적법 개정(1998.8.17): 여성의 국적선택권 보장 ▶공무원수당규정 개정(1998.12.31): 가족수당에 있어 남녀차별조항 시정 ▶농업농촌기본법(1999.2.5): 법 제정시 여성농업인 육성조항 포함 ▶병역법 개정(1999.2.5): 전공사상자 가족 병역혜택 적용범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99.2.8): 고용평등 이행실태 공표제도 도입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1999.12.7): 출산휴가 강제 규정화, 특별휴가에 남계와 여계의 형평성 유지 ▶행형법 개정(1999.12.28): 성차별 금지조항 신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1999.12.31): 육아휴직 허가 의무화 및 휴직기간의 5할을 승급기간에 산입 ▶모성보호법(2001) 	▶가족법(1990.10.24):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2장 결혼, 제3장 가정, 제4장후견, 제5장 상속, 제6장 벌칙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2000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방송법 제정(2000.1.12): 성차별과 남녀평등에 관한 조항 포함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 (2000.1 개정 공포, 관련규정 2001.1 시행): 휴직신청 시 허가여부 의무 규정화 및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상훈법 시행령 개정(2000.1.28): 훈장대리 수령 시 배우자 우선권 부여 -교육기본법 개정(2000.1.28):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 처벌 및 인권보장 -정당법 개정(2000.2):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 도입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2000.5.25): 여경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2000.8):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출가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성평등적으로 개선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2000.8): 자녀취업 시 출가한 딸 포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0.12): 군가산점 제도 대안 마련-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3세의 범위 안에서 연장,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2000.1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대상에 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한 점 -정부조직법 개정(2000.12): 여성부 신설-여성 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관장-관장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 이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0.12):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전담하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임기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 -모성보호법(2001)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방송법 제정(2000.1.12): 성차별과 남녀평등에 관한 조항 포함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 (2000.1 개정 공포, 관련규정 2001.1 시행): 휴직신청시 허가여부 의무규정화 및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 -상훈법 시행령 개정(2000.1.28): 훈장대리 수령시 배우자 우선권 부여 -교육기본법 개정(2000.1.28):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 처벌 및 인권보장 -정당법 개정(2000.2):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 도입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2000.5.25): 여경의 응시연령을 18세이상 27세이하로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2000.8):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출가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성평등적으로 개선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2000.8): 자녀취업시 출가한 딸 포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0.12): 군가산점 제도 대안 마련-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3세의 범위 안에서 연장,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2000.1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대상에 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한 점 -정부조직법 개정(2000.12): 여성부 신설-여성 책의 기획 종합, 남녀차별 금지구제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관장-관장 법률(여성발전 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 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 이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0.12):남녀차별개선사무를 전담하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설치, 동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임기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 -모성보호법(2001) 		

● 내용별 비교

<표 V-5>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관련법규

구분	남한	북한
남녀평등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분야를 포함한 교육에서의 차별,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에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차별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또 차별 시정 대상 기관을 민간기업체 위주에서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로 확대 -남녀차별 사항의 조사·시정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담 기관이 되어 수행 -남녀차별 개선 사무를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1997.3.25): 육군 사관학교는 98년부터, 해군사관학교는 99년부터 여학생 모집 허용 국적법 개정(1998.8.17): 여성의 국적선택권 보장 농업농촌기본법(1999.2.5): 법 제정 시 여성농업인 육성조항 포함 병역법 개정(1999.2.5): 전공사상자 가족 병역혜택 적용범위 확대 행형법 개정(1999.12.28): 성차별 금지조항 신설 통합방송법 제정(2000.1.12): 성차별과 남녀평등에 관한 조항 포함 상훈법 시행령 개정(2000.1.28): 훈장대리 수령시 배우자 우선권 부여 교육기본법 개정(2000.1.28):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2000.5.25): 여경의 응시연령을 18세이상 27세이하로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2000.8):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출가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성 평등적으로 개선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2000.8): 자녀취업시 출가한 딸 포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0.12): 군가산점 제도 대안 마련-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3세의 범위 안에서 연장,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2000.1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대상에 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한 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 처벌 및 인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남녀관계에서 지속되던 일제잔재와 봉건적 남녀관계를 개혁하고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마련,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 전근대적 가족질서 붕괴, 새로운 가족법의 초석 -9개 조문(제1조-경제·문화·사회·정치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선언, 제2-3조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노동권,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보장, 제4조 자유결혼의 권리 및 강제결혼의 금지, 제5조-자유이혼의 권리 및 이혼시 아동양육청구권, 제6-7조-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인 법정결혼연령과 일부일처제 원칙, 제8조-여성에게 남자와 동등한 재산상속권과 이혼시 재산분배청구권의 보장 등 -동 시행세칙(1946.9): 29개조문-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제1조), 교육과 문화생활권(제2조),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대우의 금지(제3조), 여성의 재산상속권(제5조), 토지분배청구권(제6조), 부부합동 재산제(제7조), 결혼(제9-10조), 협의이혼(제10조), 재판상 이혼(제11조-19조), 양육비청구권(제20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21조),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과 규칙의 무효(제23조), 윤락행위 금지(제28조) 등을 규정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조로 구성되어, 몰수대상 토지, 몰수토지의 분류, 분류에 대한 법적 처리, 분류토지의 매매금지, 산림물수, 토지개혁 실시 기관 등을 명시 -토지를 경작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여하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토지 부여 •인민공화국 헌법(194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평등의 원칙,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 원칙 등을 헌법에 규정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남녀평등관련법규	<p>남녀고용평등법(19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급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 육아휴직, 육아시설, 복지시설 설치 •공무원수당규정 개정(1998.12.31): 가족수당에 있어 남녀차별조항 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1999.12.7): 출산휴가강제 규정화, 특별휴가에 남계와 여계의 형평성 유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2000.1 개정 공포, 관련규정 2001.1 시행): 휴직 신청 시 허가여부 의무 규정화 및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 법령 -목적과 적용대상, 근로시간, 임금, 휴식·휴가, 여성노동자 보호, 사회보험제도 등을 규정 -여성의 산전산후휴가제도, 젓먹이는 시간, 야간노동금지 등의 내용 포함 •사회주의로동법 -로동법령을 보완 변경시킨 노동관리제도를 종합한 것 -여러 가지 여성노동 대책(탁아소, 가내작업반 등), 여성의 노동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정기검진제도, 산전산후휴가제 등을 명시
보육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총칙,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 보칙,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보육보양법 -어린이의 보육교양문제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을 부모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법률 -여성과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제와 다산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을 모성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복지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복지법 -모자가정(母子家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寄與)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총칙을 비롯, 복지의 내용과 실시, 모자복지 시설, 비용,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31조와 부칙으로 명시. •모자보건법 -1973년 2월 법률 제2514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 법은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경비의 보조, 벌칙, 과태료, 형법·의료법의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규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로동법에 일부 포함되어 명시되어 있음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정치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법 개정(2000.2)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2000.12) -여성부 신설: 여성 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 금지구제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관장-관장법률(여성발전기본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 이관)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법 -종족유지를 위한 친족적 공동생활 형태, 신분의 승계(承繼), 신분에 기인하는 재산의 승계를 규율하는 실체법(實體法)의 전 체계.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 ·친족법 :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 승계법 등으로 구성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법(1990.10.24):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2장 결혼, 제3장 가정, 제4장 후견, 제5장 상속, 제6장 벌칙
여성 지위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발전기본법(1995):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 	

(3) 가족정책

남북한 가족정책은 가사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이혼 및 결혼정책 등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숭배와 장자에 의한 세습 등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인 여성의 노동력화를 위해 가사의 사회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밥공장, 옷공장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탁아소의 발달로 자녀를 국가 및 사회의 부담으로 양육하고 교육함으로써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명목 하에 아동 역시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결혼 및 이혼정책을 보면, 남한에서는 민법에서 혼인적령을 남자 만18

세, 여자 만16세로, 북한에서는 가족법에서 남자 18세, 여자 17세로 정하고 있다. 차이점은 북한에서는 1976년 이후 남자 30세, 여자 28세로 결혼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여성을 노동계급화, 혁명화하여 더 많은 일을 배우고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V-6>과 같다.

<표 V-6> 남북한의 가족정책

구분	남한	북한	비고
가족정책	-가족문화정책 -가정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성폭력 전담수사대 및 가정폭력 전담 검사제 실시	-가정은 사회의 기층 생활단위이며 가정생활이 건전하게 발전하여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온 사회가 혁명적이고 명랑한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전국어머니대회(1961)와 어머니학교: 여성들의 교양거점화 -여맹회와 노동당대회: 1968년 가정의 혁명화 문제를 제기-가정에서부터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전체사회를 위해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책 제시 -공산주의적 모성역할 강조, 사회주의적 인간생산 즉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 양육 의무화 -사회주의헌법과 가정의 혁명화: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63조-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가정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보고 사회주의 혁명의 요새임을 강조. 가정의 혁명화는 가족단합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됨-문제는 여성들이 이중역할 요구받음. 즉 가족, 부부관계나 가사분담 변화 없이 여성자신은 노동계급화 됨 -개인숭배와 장자에 의한 세습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가부장적 가족제도 강화-가부장적 억압 겪음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가사의 사회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의 사회화: 가정의 기술혁명-식료공업 발전, 옷 공장과 세탁소 설치, 가정용 냉동고와 전기가마 등의 부업세간 공급, 농촌수도화를 의미, 밥과 국공장 설치, 공동식당 설치로 확대 ●1970년 노동당 5차대회 3대 기술혁명의 하나로 '가정 일로부터의 해방'이 제기됨 -3대혁명: 인민경제부문 기술혁신운동으로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고,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여성들의 부업일 부담 덜기, 식료가공업 혁신, 현대적 가정용품과 부업세간들을 공급 =>여성들의 가정일, 부업일 부담 덜기 경공업, 봉사혁명을 통하여 편의시설망 설치,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 덜어주도록 교시(1984)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의 사회화: 여성을 가정 일에서 부터 해방시켜 여성노동력 수요 충족시키기 위한 것 ●어린이보육교양법: 모든 어린이를 국가화 사회의 부담으로 양육, 교육하고, 과학적 문화적으로 키우며, 주체적 인간으로 키우고, 여성들의 자녀키우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회진출 활성화, 혁명화, 노동계급화 도모한다는 것 -탁아소 1-3세, 유치원 4-5세, 주체형의 새인간 형성 	

(뒷장에 계속)

90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구분	남한	북한	비고
이혼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상이혼정책 -실질적 요건-당사자의 합치, 제835조, 제909조 제4항 -이혼의 신고-제836조 -협의이혼 취소-제838조, 제839조, 제823조 ● 재판상 이혼정책 -이혼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생사 불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이혼정책 ◦ 1946년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 ◦ 가족법: 가정의 평화를 피하는 것 ◦ 이혼 -이혼원인-가족법 제21조-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흠잡아 버렸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수 있다고 규정. -이혼절차-인민재판소의 관할, 두 번 이상 이혼한 자는 도재판소에 청구 -이혼결과-재판소가 이혼판결을 내릴 때에는 자녀양육 공동재산의 분배와 이혼 후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에 관한 문제도 해결된다. 	
결혼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혼주의 ◦ 민법에서 혼인적령을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이상이어야 가능. 단 20세 미만일 때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함. 연령의 계산은 호적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 결혼연령의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혼장려정책 ◦ 1946년 남녀평등법과 1990년 가족법에서도 남자18세, 여자 17세를 혼인연령으로 규정 1976년에는 정무원 결정으로 남자 30세, 여자 28세로 결혼연령을 제한함 -여성의 노동계급화, 혁명화하여 더 많이 일을 배우고 더 많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문제는 개인의 혼인문제에 당과 조직이 깊은 관여를 하는 것이다 	

(4) 여성교육정책

(가) 여성교육 목적 및 이념

남북한이 여성교육의 목적과 이념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남한은 현모양처론 → 남녀역할분업론 → 양성평등론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남녀역할 분업론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양성평등한 교육이념이나 양성성에 대한 논의가 열기를 띠었다. 그 결과 1995년부터 중학교 남녀학생들이 가정과 기술교과 동일 이수로 전환을 하였다. 앞으로 제8차 교육과정개정 시에는 고등학교에서도 남녀학생들이

가정기술교과를 동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여성계가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봉건적 여성상 → 혁명적·노동계급적 여성상으로의 진전→최근 전통적 여성상 강조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은 당초 유교적이고 혁명적인 여성상을 강조하였고, 성차별이나 불평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갈등을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여성실업자의 증가로 가정회귀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나) 교육기회

의무교육: 남한 6년(2001년 지역에 따라 9년), 북한 11년(1975년, 유치원 1년 포함). 남북한의 여자교육기회를 보면, 남한은 의무교육 연한이 북한보다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중등단계 및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여학생 99.6%(남학생 99.5%)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결과의 사회환원 흡입기제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북한보다 가사나 육아의 사회화가 미흡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의 성취를 사회적 성취로 연결시키지 않는 유사 자발적 포기가 많은 실정이다. 북한은 중등단계의 의무교육 실현, 고등교육의 대중화, 여성 인텔리화 정책을 시행할 시도를 하였으나, 국가주도의 직장배치는 성별조건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남녀 동일한 지위획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낳고 있다.

고등교육에의 진학률 :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남한의 경우 여학생 65.4%(남학생 70.4%)에 이르고 있어 남녀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점차 그 비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대학진학기회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단계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개인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진학 시 직통생, 군대 및 직장 추천생으로 입학하며, 여학생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교육기회는 사회·문화적 구성이나 이념, 제도적 문제에

서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교육자원을 사회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과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교육내용

교육과정에서의 남녀역할교육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의 사회환원 공감대 형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남한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가정역할의 변화가 미미했고,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책임과중, 고정된 역할변화 미흡, 남성의 가사일 참여가 미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의 역할과 활동을 가사활동의 보조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가정 내 역할변화가 미흡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 남성의 가정 내 역할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1990년 가족법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이끌어내고 있고, 어머니의 일차적 역할로서 자녀양육과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정이 '사회적 세포'로 존재하고 세포의 건강을 위해 부부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교육은 사회를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교육내용에서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재조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 외에도 남북연합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육관련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역사적 여성인물의 공동발굴, 여교원의 지위향상, 초·중등 교원의 남녀평등의식 향상 등의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이 공통으로 가진 역사적 인물(명성황후, 유관순, 신사임당 등)에 대한 재해석을 비롯하여, 남북한 여교원의 비율증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 상황 등의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시대별, 내용별 표를 살펴보면, 통일을 향한 남북한 교육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공동된 여성교육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표를 시대별 <표 VI-7>, 내용별<표 VI-8>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시대별 비교

<표 V-7> 시대별 남북한의 여성교육정책

구분	남한	북한	비고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초등학교 6년(1952. 6):1949년교육법제정 공포 후 1950년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워 그 실시에 착수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2년 6월에 교육자치제가 발족되면서 문교부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워 학령아동전원을 취학시키기 위한 목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의무교육실시 (1950-1958) • 중등의무교육실시(1958)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말 대학정비의 재수정시 여자 대학생의 정원의 증원 허가하게 되고 국가자격고시제(1962-1963)에서 여학생 합격률을 따로 정함으로써 여성교육의 육성 기회가 제공되었으나 1996년 다시 대학생 정원감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실시할 것을 결정-기술교육에 대한 강조 여성들에게도 요구 :여성들을 기능공학교, 직장기술 학교, 통신교육망, 강습회, 기능전습회에 널리 망라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 평준화정책에 의해 교육기회 확대 • 이시기는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확립하던 때라 교육정책에 별도의 여성관련 정책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던 시기. 따라서 여성의 교육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개선책을 내놓는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는 정도에 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실시(1975)취학전 1년, 인민학교 4년, 5년제 중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 통합하여 6년제 고등중학교 6년. 만 5살부터 16살까지 계층, 지역,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도 대학을 졸업한 후 더 많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대학진학기회에서의 여성 불리: 고등중학교까지는 평등, 대학단계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개인별 차이 존재 -1980년이전: 대학정원 폰트제도 기반 여학생 적은 입학할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통생: 고등중학교 졸업후입학 ◦ 군대추천생: 고등중 졸업후 2-5년간 복무자 군대내 당 책임자 추천 ◦ 직장추천생: 고등중 졸업후 2-5년 근무자 직장 당 책임자 추천, 1970년대 각각 10%, 70%, 20% 차지했으나 여학생은 적은 비율 차지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교육정책 도입기 :1985년 남녀 차별개선지침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면서 교육분야의 남녀불평등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부분실시 : 1985년 도서·벽지 대상 • 여학생의 입학률 제한하던 일부 특수대학입학제한 철폐-세무대학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전 사회의 인테리화' 정책 시행 : 여성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그 전 시기보다 어느정도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대학선발고사의 변화 일어나면서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의 문이 넓혀짐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의 입학울 제한하던 일부 특수대 학입학 제한 철폐-경찰대학 5명(1990), 철도전문대학 4명(1990), 농협전문대학 7명(1991), 공군사관학교 20명(1997), 육군사관학교 25명(1998), 해군사관학교 20명(1999) • 현재 각 군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정원 10%수준 여학생 모집 • 제7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1992-1996) 분야별 여성 발전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계기로 양성 평등한 학교교육을 위한 여성교육정책의 수립과 계획이 만들어짐. • 남녀평등한 교육과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교육과정(1992) -교과목편제에서의 평등 -초등학교-남녀 동일한 교과목 이수 -중등학교-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1학년-고교1학년까지11년)-'기술, 가정'교과를 남녀 공통 필수화 함,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정보사회' '컴퓨터' 등의 교과와 남녀구분 없는 선택 교과화 추진 ◦ 제7차교육과정(1997) -기술·가정의 통합교과로 고등학교까지도 남녀공통으로 필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별학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1990년 이후 남녀공학으로 전환 • 높은 여교사비율(인민학교 80%, 고등중학교 30-50%) 과 관리직 남교사 우위(인민학교 학교장 17.4%, 부교장 34.8%, 고등중학교 8.7%, 17.4%) • 김정숙 교과의 등장-1999년부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모든 단계에서 등장 • 대학진학기회에서의 여성 불리 : 고등중학교까지는 평등, 대학단계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개인별 차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국가고시제도 도입 직통생 비율 증가, 군추천 감소 여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감소 예상됨 • 대학입학정원에 중앙기관 차원의 성별 폰트가 정해짐. 그러나 남성에게 높은 폰트, 여성 낮은 폰트 배정 예상됨. (예: 김일성대학-이공계 남성 높은 폰트 배정, 상업이나 경공업계 여학생 높은 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폰트제도 여학생들의 대학진학 경로 제한 기제로 작용 =>여성들-3년제 전문학교나 단기 양성소 진학, 전공은 피복전문, 요리전문, 공예전문, 의학전문 등, 양성소는 6개월 또는 1-2년 코스 • 직업교육기회의 여성 제약 •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기회 ◦ 낮은 직급의 업무담당 ◦ 결혼이후 남편의 직장 따라 이동 • 교육과정상의 남녀평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인 남녀평등 목표와 교과서에 나타나는 남성 중심성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 잔존: 사회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인으로 작용 • 양가적 여성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유교적 여성상 -공산주의적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여성상 • 북한여성들의 교육이념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가적 여성상 갈등 없이 수용: 사회전반 여성들에 대한 낮은 대우나 수직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불평등하다는 생각 갖고 있으나, 당연시 -북한여성들의 여성의식이나 성차별적 문제에 대한 인식 교양의 어려움 있음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국가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인간관계 성차별적이라는 대해 무감각해져 있음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개정(2000.1.28) -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조항이 법조항에 추가. 동입법 취지의 실효성 거두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진흥법(안) 제정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균등 면에서는 남녀간의 차별이 없다고 하겠으나 학교의 교육과정, 진학·진로의 지도, 교재의 내용, 학교의 시설 등 교육현장에서의 남녀간의 차별적인 요소가 잔재하고 있음. 		

● 내용별 비교

<표 V-8>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교육정책

항목	남한	북한	비고
여성교육 목적 및 이념 (이것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모양처론->남녀역할분업론->양성평등한 교육이념이나 양성성에 대한 논의-남녀역할 분업론에 기초한 여성교육의 이념 비판 =>가정과 기술교과 남녀학생 동일 이수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건적 여성상->혁명적·노동계급적 여성상으로의 진전->최근 전통적 여성상 강조-유교적이고 혁명적인 여성상 강조-성차 별이나 불평등 가능성 배제 =>통합교육과정에서의 여성교육의 목표나 과정에서 갈등 야기 가능성 있음. '여성을 어떤 인간으로 기를 것인가?'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 양자를 어떤 인간으로 기를 것인가"로 넓혀 생각하는 것이 대안임. 성별의 문제를 화두의 핵심으로 두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토록 해야함 	
교육기회의 평등과 동일한 교육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 의무교육기간 낮으나,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중등단계 및 고등교육 진학을 급속히 증가, 교육 결과의 사회환원 흡입기제 부족 =>북한보다 가사나 육아의 사회화가 미흡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의 성취를 사회적 성취로 연결시키지 않는 유사(quasi) 자발적 포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단계 의무교육 실현, 고등교육의 대중화 여성 인텔리화 정책 시행 시도, 그러나 국가주도의 직장배치는 성별 조건이 저해요인으로 작용. 이는 사회생활에서 남녀동일한 지위획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놓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화적구성이나 이념,제도적 문제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함. -사회구조적 문제의 근원 각성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 => 여성 교육자원을 사회 환원시키는 지속적인 교육과제임

(뒷장에 계속)

96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항목	남한	북한	비고
가정 내 남성의 역할변화를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의 사회화원 공감대 형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유발 -여성의 사회진출, 가정역할의 미미한 변화, 오히려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책임과중, 고정된 역할 변화 미흡, 남성의 가사일 참여 미약 =>남성의 역할과 활동-가사활동의 보조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 제시 요구, 남성의 가정내 역할변화 미흡하나마 개선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내 남성의 가정 내 역할변화 보이지 않음 1990년 가족법-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끌어내고 있고, 어머니의 일차적 역할로서 자녀 양육과 교양 강조 =>가정이 '사회적 세포'로 존재,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필요 교육체제내에서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음 	
역사적 여성인물의 공동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인물 발굴 미흡으로 계속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일가 우상화에 치우침,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 취약 -북한 혁명시기의 여성투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모두역사적인 여성인물 교과서 내 삽입이 제한적 -남북한 공동인물: 명성황후, 한석봉 어머니, 유관순, 신사임당, 계월향, 행주대첩시의 여성들
여교원의 지위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교수 보직확대 -여학생 비율 39% -여교수 비율 14% -보직 여교수 : 국립 1.6%, 국립 6.2%, 사립 남녀공학 12.4%, 여자대학 39% =>향후5년간 여성 참여율 20%이상 권유 -보직: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 연구부실장 등 포함하여 주요보직임 -각종 위원회에의 여성참여율 20%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장학위원회 등 -대학평가 반영: 여교수 임용 실적에 반영, 우수대학 포상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여교원비율: 초등66.0%, 중학교 56.8%, 고등학교 29.3%(2000년)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초중등 교감 및 교장(7.7%, 6.9%) =>잠재적 차별 또는 장애를 시정하는 노력 필요 -시·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 사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 평가와 인사 감사시 점검 평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여교사비율(인민학교 80%, 고등중학교 30-50%)과 관리직 남교사 우위(인민학교 학교장 17.4%, 부교장 34.8%, 고등중학교 8.7%, 17.4%) 정치사상과목들은 주로 남교사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볼때 (2000) 북한의 여교사 비율이 남한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다른 한편 남한과 북한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교사비율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공통된 경향나타남.

(뒷장에 계속)

항목	남한	북한	비고
초·중 교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확대	-교원연수 시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 반영 -학교 단위의 자율연수 실시 =>연수교재 개발, 패넬과 토론 위주의 방법 개발, 연구발표회를 통한 남녀평등의식 고양		

(5) 여성노동정책

(가) 근로여성복지 : 출산휴가제도와 자녀양육의 사회화

남북한이 모두 여성의 노동보호를 위해 출산관련 휴가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산전산후휴가를 사회주의노동법 제76조에 제시 1986년 산전 60일, 산후 90일 5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수유시간(1일 2회 30분 허용)을 노동시간 후 휴식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탁아소규칙(1947년)과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년)을 마련하여 일·일·주·월·계절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모든 유아탁아소에 맡겨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 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보내게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제12조 1987년)와 영유아보육법(제7조 1991년)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로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모성보호법(2001)에서는 90일간의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받도록 하는 등을 통해 근로여성들의 복지와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한이 근로여성의 복지를 위한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주어지느냐가 여성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 하겠다. 남북한이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의 사회화 작업이 보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다른 정부로부터 시사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여성을 위한 훈련지원정책으로 북한에서는 여성의 인텔리화 정책으로 고등교육기회 제고를 통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농업교육 등 여성들에게 기술전문가의 대열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토록 하고 있다. 남한은 근로여성들의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화교육, 여성과학자 양성교육, 여성농업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표로 제시해보면 시대별 <표 V-9>, 내용별 <표 V-10>와 같다.

● 시대별 비교

<표 V-9> 시대별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

구분	남한	북한	비고
1940년대 - 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 (1946): 수유 1일 2회 30분 허용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아정책: 법-탁아소조직제, 탁아소규칙 제정 (1947), 탁아소에 관한 규정 마련(1949)-유형 : 일일탁아소, 주탁아소, 월 탁아소, 계절탁아소 등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관련휴가 : 산전산후휴가 ·사회주의로동법 제76조 산전산후휴가기간 동안 일시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로 기본임금과 기본노력공수(농촌)의 70%지급 ·해산전 35일, 해산후 42일간 ·매달생리휴가 ●여성의 노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노동금지 및 문화위생적 노동조건 마련 -일반여성 및 임신부의 건강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성 규칙 제2호 여성상당소에 관한 규정(1948), 산원에 관한 규정(1949)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 - 가정의 교육기능 박탈과 조기교육체제 준비: 자립적 민족경제도대에 의거하여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속에서 진행토록 함(1960 탁아소연령기의 64%를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 ●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 : 경제계획기간(1961-70) 중심 실현 노력 - 가사노동의 집단화 공동화 밥공장 만들고, 식료가공공업발전에 힘쓰며, 농촌의 중앙난방화 및 여성들의 부엌 일 털어주기를 중요한 과업으로 삼음 - 가사노동의 상품화 가정일로부터의 여성해방을 위해 가정소비용품 공급을 위한 경공업 발전도모, 농근맹조직에서는 농촌수도화 실현 도모 - 가사노동의 서비스산업화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공업혁명’인민봉사혁명’ 등 북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속에서 여성해방방안을 도출해볼 수 있음 ● 다태 분만 여성의 특별보호(1964) ·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0-21조 다태분만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 삼태자에게는 육과 포탄, 1년분의 젓제품 무상공급 양육보조금 제공,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건강 돌보게 함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 : 경제계획기간, 1971-1976) 중심 실현 노력 ● 노동시간과 휴식(1978) - 다자녀를 가진 모성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 사회주의 헌법 제62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6시간 노동을 8시간 노동으로 간주(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에 규정됨)-문제는 12시간 노동 허다함 - 휴식 및 수유시간 여성건강보호를 위한 휴식 중시 매시간 10분 휴식 협동농장 오전 오후 각 15분 휴식, 점심시간에는 독보회, 회상기 낭독, 작업평가회의, 비판회 등 실시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1987)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급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의 내용을 명시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 육아 휴직, 육아시설(직장탁아제도 도입), 복지시설 설치 등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 :경제계획기간,1978-1984) 중심 실현 노력 ● 출산관련휴가 : 산전산후휴가 ·1986년 산전 60일, 산후 90일 5개월간의 유급휴가 실시(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 여성의 인테리화 정책(1985) -고등교육기회 제고를 통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을 통한 근로여성들의 전문성 제고 ·산업부문의 기술기능수준 향상 ·농업부문의 기술문화수준 제고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 1985년 38국제부녀절 기념보고-녀성들속에서 기술전문가의 대열을 더욱 높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 . . . 등 여성 전문가의 양성 지원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교육훈련(1992)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원 강화(1995)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와 영유아보육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로서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사업자가 운영비의 50%이상 부담. -1995년부터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제도(1995)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남녀 고용평등법에 규정 -'95년 5월부터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 보육시설 인가제를 허가제로 완화와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1997) -영유아보육법 개정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 실시 근거를 마련 ● 출산관련휴가(1997) -산전산후휴가 ·매달 생리휴가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원래 임금 그대로 지급) ● 유망여성과학자 및 여자대학 지원(1997) ● 정보화교육 지원(1998) -대상별(초·중·고교생·대학생·전업주부 등)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 -1991년 탁아소와 유치원 6만여개소, 수용인원 166만명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실업대책직업훈련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계획 수립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사업 직종으로 개편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 내용별 비교

<표 V-10>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

구분	남한	북한	비고
가정과 직장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로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사업자가 운영비의 50% 이상 부담. -1995년부터 고용보험기금등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 -'95년 5월부터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 휴직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아정책: 법-탁아소조직, 탁아소규칙 제정 (1947), 탁아소에 관한 규정 마련(1949) 유형 -일일탁아소, 주탁아소, 월 탁아소, 계절탁아 소 등 =>가정의 교육기능 박탈과 조기교육체제 준비: 자립적 민족경제도대에 의거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속에서 진행토록 함 (1960 탁아소연령기의 64%를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 =>어린이보육교양법과 탁아제도의 공고화: 공 산주의적 인간형의 생산과 여성노동력동원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교육의 장 (1991년 탁아소와 유치원 6만여개소, 수용인원 166만명) •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계획기간(1961-70,1971-1976, 1978-84) 중실 실행 노력 -가사노동의 집단화 공동화 밥공장 만들고, 식료가공공업발전에 힘씀, 농촌의 중앙난방화 및 여성들의 부역일 덜어주기를 중요한 과업으로 삼음 -가사노동의 상품화 가정일로부터의 여성해방을 위해 가정 소비용품 공급을 위한 경공업 발전도모, 농근맹조직에서는 농촌수도화 실현 도모 -가사노동의 서비스산업화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공업혁명'인민봉사혁명' 등 북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속에서 여성해방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음 	

(뒷장에 계속)

구분	남한	북한	비고
근로여성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 출산관련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전산후휴가 ·매달 생리휴가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원래 임금 그대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노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노동금지 및 문화위생적 노동조건 마련 -일반여성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 사회주의노동법 제58조 건강보호관련 규정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성 규칙 제2호 여성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 산원에 관한 규정(1949) • 출산관련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전산후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노동법 제76조 산전산후휴가기간 일시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으로 기본임금과 기본노력공수(농촌)의 70% 지급 ·매달생리휴가 ·1986년 산전 60일, 산후 90일 5개월간의 유급휴가 실시(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다태 분만 여성의 특별보호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0-21조 다태분만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삼태자에게는 옥과 포단, 1년분의 셋째품 무상공급 양육보조금 제공,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건강 돌보게 함 • 노동시간과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를 가진 모성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 사회주의 헌법 제62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6시간 노동을 8시간 노동으로 간주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에 규정됨)-문제는 12시간 노동 허다함 -휴식 및 수유시간 여성건강보호를 위한 휴식 중시 메시간 10분 휴식 협동농장 오전 오후 각 15분 휴식, 점심시간에는 독보회, 회상기 낭독, 작업평가회의, 비판회 등 실시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수유 1일 2회 30분 허용 -자녀양육-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모든 유아탁아소에 맡겨짐. 만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보내게 됨 	
여성을 위한 훈련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실업대책직업훈련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사업 직종으로개편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 정보화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초·중·고교생·대학생·전업 주부 등)로 실시 •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 유망여성과학자 및 여사대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인테리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기회 제고를 통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을 통한 근로여성들의 전문성 제고 ·산업부문의 기술기능수준 향상 ·농업부문의 기술문화수준 제고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 1985년 38국 제부녀절 기념보고-녀성들 속에서 기술전문가의 대열을 더욱 높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 등 여성전문가의 양성 지원 	

(6) 여성정치 관련정책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남북한 여성들의 정치 및 정책결정에의 참여 현황을 보면, 북한은 1948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12.0%, 상임상설회의의 위원 2.9%에 달했고, 1957년 각각 12.5%, 6.2%였으며, 1990년 20.0%, 13.3%, 1998년 20.2%, 12.5%이다. 남한의 경우를 보면, 1940년대 여성의원수가 0.5%(1948년)였고, 1950년대 1.0%(1952년), 1.29%(1956년)였으며, 1992년에는 지역구 0.4%, 전국구 6.5%, 1997년 지역구 0.8%, 전국구 14.9%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남한의 국회의원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수에는 못 미치나 상임회의의 위원수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증가비율을 보면, 1995년 시·도 의회의원은 9.3%, 시·군·구 의회의원은 16%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30%까지 증가되도록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계에서 여성정치지방생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의원 후보자를 위한 기금마련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부에서는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 방안의 하나로 정부 각 부처 각종 위원회에의 여성참여 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각 정부부처의 실시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30%의 일정비율할당제는 유엔에서도 권유하는 사항으로 한 성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고, 스스로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VI-11>과 같다.

● 내용별 비교

<표 V-11> 내용별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

구분	남한	북한	비고
정치 사회 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맹의 정치사회화 사업 ◦ 정치사회화: 인간이 정치와 관련되는 가치체계, 신념 및 태도 등을 체득해가는 과정 ◦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여성정치사회화 사업(1945-현재): 공산주의 여성으로서의 개조기(1945-1956), 여성의 공산주의 사상혁명 강조기(1957-1971), 주체형의 공산주의 여성확립기(1972-현재) -김일성, 김정일의 주변 여성 -최고인민회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충원여성 -목적: ① 여성들을 유일사상체계에 충성을 가지는 정치성향을 지니게 하는 것 ② 열성분자나 능력있는 여성은 간부로 양성 국가 통치기구에 충원 	
여성 대표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위원 참여율 17.6%('99) -여성채용목표제 5,7,9급 공채 2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당에의 여성정치인들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평면적인 숫자로 나타난 여성의 대표성에서 북한이 남한을 크게 앞지름. -조선민주녀성동맹(18세에서 55세까지의 모든 여성의 무 가입) : 노동당의 엄격한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음. 여성의 지위향상 같은 단순한 여성운동이 아니라 당이 내세우는 주요 과업을 관철하는데 주력. 	

<표 V-12> 남북한의 여성의원 수 및 비율

구분	남한				북한							
	선거대수 및 연도	여성 후보수 (%)	여성 의원수 (%)	선거방식	기수 및 선거 연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상임/상설회 의위원			
						총수	여성 수	비율	총수	여성 수	비율	
1940년대	1대(1948)	22(2.2)	1(0.5)	소선거구최다득표제	1(1948)	572	69	12.0	34	1	2.9	
1950년대	2대(1952)	11(0.5)	2(1.0)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2(1957)	215	27	12.5	32	2	6.2	
	3대(1956)	10(10.83)	3(1.29)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1960년대	4대(1960)	5(0.59)	3(1.29)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3(1962)	383	35	9.1	27	3	11.1	
	5대(1963)	민의원	8(0.51)	1(0.4)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참여원	0(0.0)	0(0.0)							
	6대(1967)	지역구	4(0.4)	1(0.76)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4(1967)	457	73	15.9	18	1	5.5
	전국구	3(1.9)	1(2.3)	(비례대표제)								
1970년대	7대(1971)	지역구	4(0.57)	1(0.76)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5(1972)	541	113	20.8	19	2	10.5
		전국구	4(3.4)	2(4.5)	(비례대표제)							
	8대(1972)	지역구	2(0.34)	0(0.0)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6(1977)	579	120	20.7	19	2	10.5
		전국구	7(5.8)	5(9.8)	(비례대표제)							
	9대(1978)	유정회 1기	10(11.5)	9(11.5)	중선거구 2인선출 (유정회)							
		유정회 2기	6(7.69)	6(8.22)								
	10대(1979)	지역구	5(1.1)	1(0.65)	중선거구 2인선출							
		유정회 3기	7(9.21)	7(9.21)	(비례대표제)							
1980년대	11대(1980)	지역구	10(1.6)	1(0.6)	중선거구 2인선출	7(1982)	615	121	19.6	19	2	10.5
		전국구	13(5.7)	8(8.7)	(비례대표제)							
	12대(1981)	지역구	7(1.6)	2(1.1)	중선거구 2인선출	8(1986)	655	138	21.0	15	3	20.0
		전국구	9(5.3)	6(6.5)	(유정회)							
13대(1987)	지역구	14(1.4)	0(0.0)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전국구	13(7.5)	6(0.8)	(비례대표제)								
1990년대	14대(1992)	지역구	21(1.89)	1(0.4)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9(1990)	687	138	20.0	15	2	13.3
		전국구	16(10.4)	4(6.5)	(비례대표제)							
	15대(1997)	지역구	21(1.5)	2(0.8)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10(1998)	687	138	20.2	16	2	12.5
		전국구	22(14.2)	7(14.9)	(비례대표제)							

(7) 여성지위 관련 정책

(가) 여성지위현황

유엔개발기구(UNDP)가 설정하고 있는 여성지위현황을 보면, 2001년 현재 남한은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27위,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27위 그리고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여성개발지수와 여성권한지수를 정보부족을 이유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간개발지수는 75위(1997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남녀평등상 시상

남한에서는 남녀평등한 문화형성을 위해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상을 제정하고 있는 바, 남녀평등교사상, 남녀평등경찰상, 남녀평등방송상 등을 시상하여 남녀평등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표 V-13> 남북한의 여성지위 관련정책

구분	남한	북한	비고
여성 지위	UNDP-2001년 -GDI(여성개발지수) : 27위('01), 37위('95) -GEM(여성권한지수) : 27위('01), 90위('95) -인간개발지수 : 27위('01) 32위('97), 31위('95)	-GDI(여성개발지수) : 정보부족을 이유로 평가하지 않음 -GEM(여성권한지수) : 정보부족을 이유로 평가하지 않음. 50위('95) -인간개발지수 : 75위('97) 83위('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 주관 '여성주간'(7월 첫째 주) 실시 -남녀평등상 시상(남녀평등교사상-매년 초·중고 교사 32명, 남녀평등경찰상-범죄 수사시 여성인권 옹호기여 경찰관 15명, 남녀평등방송상-대통령상1편, 최우수상2편, 우수 4편) • 문화탐방 프로그램에의 여성참여 확대, 가정문화 프로그램 지원,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여성가장 돕기 캠페인, 실직가정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희망캠프, 실직가정 능력개발 모임터 지원 	-개인의 자율성과 기호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조차 당성과 계급 성에 기준 한 제한된 기회가 있을 뿐이고 예술 활동에 참가한다는 것도 여성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창의성을 배제한 김일성 정치선전의 도구역할에서만 가능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여성의 소득, 교육수준 및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여성개발지수
 GEM(Gender Empowerment Index)
 : 여성의 소득수준, 전문직 종사율, 여성의원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

(8) 여성관련 행정조직

여성관련 행정조직을 보면, 남한은 최근 여성부를 설치(2001)하여 각 정부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업무의 조정에서 집행업무(차별개선, 권익증진 등)까지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각 정부부처에서 주류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다. 1998년 설치되었던 정부 6개부처(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과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외 부처와 시도에서는 여성업

무담당자를 두어 여성정책 및 사업을 실행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법부인 국회에도 여성특별위원회(1995)가 임시위원회로 설치됨으로써 행정부와 함께 여성업무의 양·질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립(1945)하여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임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평양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제5기 34차 전원회의에서 조직문제를 상정하고 여맹의 중앙위원장에 박순희를 임명하고 있다. 가입 대상이 18세에서 55세이던 것이 최근 30세에서 55세까지로 자격이 제한되었으며, 직맹이나 사로청, 농근맹과 같은 다른 근로단체에 이미 가입된 여성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조직 위축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조선여성협회를 구성하여 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표조직으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 담당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남북한 교류협력 시 남한은 여성비정부기구대표, 북한은 정부대표가 만남으로써 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를 위한 양측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V-14>과 같다.

<표 V-14> 남북한의 여성관련 행정조직

구분	남한	북한	비고
여성관련행정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보건후생부 부녀국 창설(1946), 전국 각도 지방 부녀행정조직 착수(1947) -보건복지부 부녀행정 -정무장관(제2)실 여성업무 전담(1988),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8)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7) 및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설치, 그 외 부처에서는 여성업무담당자를 둠 -여성부 설치(2001) ▶ 입법부 및 여성비정부기구 -국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1995)가 임시위원회로 설치됨 -여성단체협의회(중앙회 및 지회)와 여성단체연합회(중앙회 및 지회) 등 2,000여개의 민간단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1945) -조직은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각 부서 및 시도위원회와 초급단체위원회를 두고 있음 (2000년 3월 평양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제5기 34차 전원회의에서 조직문제를 상정하고 여맹의 중앙위원장에 박순희를 임명) -가입 대상이 18세에서 55세이던 것이 최근 30세에서 55세까지로 자격이 제한되었으며, 직맹이나 사로청, 농근맹과 같은 다른 근로단체에 이미 가입된 여성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조직 위축되었음) -조선여성협회(1998): 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표조직으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교류협력 시 남한은 여성비정부기구대표, 북한은 정부대표가 만남으로써 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9) 통일정책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가 중심적인 주제로 논하고 있는 남북여성 교류, 통일역량강화 및 의식교육, 그리고 여성평화운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가 통일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남북교류측면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북한여성과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통일의식교육이나 평화운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V-15>와 같다.

<표 V-15> 남북한의 여성관련 통일정책

구분	남한	북한
남북교류	-교류 단계 및 목적 ·1단계-교류·협력 기반 확립기 : 여성의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남북한 여성의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2단계-교류·협력 확대발전기 : 여성들간의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3단계-교류·협력의 성숙기 : 완전통일 국가를 위한 준비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우선 영역 ·경제교류→문화교류→정치통합 ·인도주의적 지원관련 사업 및 문화교류→경제 교류→부문별·분야별 교류 ·여성의 보건·육아→비정치적이면서 남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관심 분야 ·남북한의 공동관심사인 정신대, 전쟁배상 등의 문제 해결, 학술과 학자의 교류, 가부장제 문화와 해결책 논의 부문 등의 교류 ·종군위안부문제나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토론회 등 남북한간의 공동관심사 분야→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경제적 교류분야와 정치 및 군사적, 남성중심적 분야	-남북교류 시 북한 여성들의 강조점 ①남북여성이 협력하면 세계적인 에너지 발휘할 수 있으니 세계 무대를 향해 함께 뛰자 ②여성은 선천적으로 관계와 조정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니 우리 여성들이 남북을 잇는 통일의 주역이 되자 ③여성은 자연친화적·모성본능적 특성을 지녔기에 삼천리 금수강산의 환경운동에 함께 참여하자 -남북한 교류가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가장 큰 요소는 양측이 이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하였기 때문

구분	남한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성 ·통일이 한반도 전구성원의 참여로 성취된다는 전제 하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됨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특히 남북한여성간의 이해와 통합을 모색해 나가야 함 ·여성 의견이 반영된 통일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통일 이후 제기되는 사회문제, 특히 여성복지 부문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함 -교육내용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함 ·통일과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함 ·현재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토대로 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실천원칙을 제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제시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되, 기본적이며 폭넓은 내용을 수용 	
여성평화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향점 ·자유, 기회,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분쟁과 갈등이 극소화된 조화로운 그리고 질서있는 사회의 건설 ·평화공존체제의 정착화와 여성평화운동의 결합,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 정립, 생활 속 실천을 통한 대중화, 세계사적 관점의 지향 -활동의제 ·남북간 화해협력 : 북한을 지원한다거나 북한(문화) 바로 알기, 남북 여성교류·북한여성 자매 결연 ·평화교육, 평화통일교육 ·평화문화 확산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그룹들간 네트워크 형성 	

V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본 장은 통일 관련 각계의 전문가에게 남북연합추진과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명해 본 결과이다.

1. 남북연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남북연합단계의 성사가가능성

남북연합단계의 성사가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문화 등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간에 상당한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될 때 남북연합의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어느 정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합의가 남북간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남북연합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한 바, 결국 남북연합은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성사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나. 남북연합의 시기

남북연합의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등 강대국들의 지지가 존재하고 남북 정부의 의지만 지속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시기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북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에, 남북한의 최고책임자의 의지 하에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부문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 평화협정 이후에 등의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또한 시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의가 되는바 이는 지금처럼 남북간 관계가 소강상태에 있고, 북한이 계속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등 변화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전망한 범주는 5년에서 30년까지이며 정치적 결단에 의하면 가능한한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북한체제가 내외적으로 강한 충격이 없다면 현 체제가 적어도 30년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30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다. 남북연합구조인 정상회담, 각료회의, 국회의원회의 및 공동사무처에 여성참여비율

북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큰 데 비해 남한보다 여성의 대우가 홀대시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참여폭을 넓힘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여성의 역할이 많도록 하되, 특히 남북평의회와 각료회의에서 여성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과 남북평의회 산하에 가칭 「여성의원 협의회」를, 그리고 각료회의 산하에 「여성분과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특히 여성은 비정치적 분야의 실리성을 갖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상호 인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많이 참여할수록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할 것이지만 10%에서 50%선에서 논의되었으며 30%정도의 여성의 수가 차지 될 때 역할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30%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남북연합 추진과정에서 상정되는 통일국가의 체제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궁극적인 체제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일국가의 체제를 미리 상정해 놓으면 그야말로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수준의 사회복지제도, 민주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 남북연합과정에서 남북한간 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때의 장단점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 촉진, 정치적·이념적으로도 동질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의 여건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인권의 증진, 남북한간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확대, 전쟁의 위협감소, 긴장완화, 적대의식 해소, 분단의식 극복, 민족공동체의식 회복, 북한의 기아상태의 해결,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상봉·교류 및 재결합이 가능, 상호이해와 사회 문화 경제발전. 경제 잠재력 상승,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 경제 잠재력 상승 (북한의 노동력 및 우수 인력 활용, 북한 지역 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등),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한 적응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의 남북교류는 서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그대로의 자유이동이 이루어지면 북한 주민이 대량 남하함으로써, 남한 노동자와의 경쟁(특히 미숙련 분야, 비공식 부문 등)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남북 노동자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주택, 상하수도, 치안 등 도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자유 이동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의 대거 남하로 인한 남북한의 불균형 발전과 이로 인한 남북 주민간 갈등의 초래,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 및 미귀환 사례 증대하여 남한 사회의 문제집단으로 등장할 가능성 존재, 북한의 대량간첩 남파로 인한 안보적 위기의 도래 가능성도 존재, 체제의 이질성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주민과 북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남한주민간의 갈등과 혼란, 남북의 격차(경제, 문화, 사회 등)가 직접적으로 목도됨으로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고, 좋지 않는 가치관의 유통가능성, 북한사회에 자본주의적 병폐에 대한 유입, 상호이해 부족에 따른 사회·심리적 갈등 고조, 남북한 격차에 의한 불평등의식 고조, 북한사회의 공동체적 연대 파괴, 물질적 가치의 숭배 및 개발논리 팽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남한의 과잉노동력 창출로 노동시장의 붕괴가 우려됨. 현실적으로도 남북연합단계에서 자유로운 주민이동은 불가능하고 연합 과정에서는 이산가족의 이동은 자유로와도 노동력 이주나 기타 이주는 일정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U에서도 노동력의 이주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히 보고 있다.

바. 남북연합 추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일

남북연합추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일로 남북한이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과 남한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야할 일과 국제적으로 해야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VI-1>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 해야 할 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남북한 함께 할 일	-군비축소와 평화협정 체결	-남북간 경제공동체설치 -남북한 인적교류확대(자유로운 서신 및 학술, 문화, 체육, 여성 등 상호방문	-남북간 경제공동체 설치 -남북한 인적교류확대(자유로운 서신 및 학술, 문화, 체육, 여성 등 상호방문
남한정부가 국내적으로 할 일	-정치적 안정	-민주화 신장	-민주화 신장
남한정부가 국제적으로 할 일	-북한의 국제경제기구(ADB, IMF, IBRD 등)에의 참여 유도 및 대외관계 개선지지	-북한의 국제경제기구(ADB, IMF, IBRD 등)에의 참여 유도 및 대외관계 개선 지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남북한 대사협의회 구성 등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남북한연합단계에서의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사. 외국의 사례에서 여성의 참여 및 역할에 대한 시사점

외국 사례들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먼저 국가연합을 위해서는 양국간 공동의 협조체제 구축, 성공적 운영경험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험이 없을 경우, 정치지도자 중심의 좌위적인 정치적 결합은 지속적이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험은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경우와는 다른 사례이지만 (남북예멘의 경우, 정치적 협상이나 교류를 통한 연합체가 아니고 무력으로 통합한 경우임) 분단보다 통합 시에 더욱 강한 국력을 지닐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 단계적 실현을 통한 제도 및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북연합을 통해 통일이 상호 이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참여는 여성이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볼 때 자칫 강경세력들의 방해로 깨질 수 있는 연합체가 여성들로 인해 타협점을 찾고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특별히 여성이 정치적 주체가 된 경우는 없었지만 이들 국가의 경험에서 연합과정에서의 여성의 일정비율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해외에서 활약하는 화교 여성들의 역할이 중·대만 여성교류 및 화해·협력에 공헌했음을 볼 때 재외 한인동포여성들을 통한 남북여성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부각되었다.

2. 남북연합과 여성의 역할

남북연합추진을 위한 여성역할은 여성들이 남북한 이원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동질체제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이 그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과 함께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각 지방의 문화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은 해소에 있어서 상호신뢰의 증진을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현재 상대적으로 반 북한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서 탈피하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남북한 주민이 21세기 새로운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지금과는 다른 상호이해하고 적응하며, 동화하려고 노력하는 적응지향형 통일의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대부분이 사회변혁형과 의식함양형이 병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반면 이러한 유형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유형에 의한 교육이 아닌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는 가정관과 여성의 사회참여관에 있는데 북한은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반면 남한은 가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북한여성들에게는 남한에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정의 중요성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여성의 권리, 의무를 포함하여 여성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주체적 능력제고에 목적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고, 남한 중심적 사고방식의 제거, 사회비판적 사고와 여성의식의 함양을 위한 것.
- 상층 지도자급 여성에게는 남성 엘리트층 대상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인식과 민족적 전망에 대한 거대담론적 접근의 통일교육의 내용이 필요하나, 일반 여성들에게는 남북한 공통의 여성적 관심사항의 미시적 구체적 내용의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 여성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은 남녀가 미묘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현실적으로) 남북한 여성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

-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것과 여성의 모성애와 사랑을 통해 남북주민들간에 적대적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한반도에서 평화와 조화, 안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나.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는 남한여성들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과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남한의 NGO 여성들이 할 일, 그리고 정부가 해야할 역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남한여성들간에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각종 모임과 교육과 활동이 있어야 하며 국가간 유대를 위한 접촉,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남한의 NGO 여성들이 할 일은 다각도에서 북한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함과 동시에 국제기구에 북한여성참여유도를 유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못지 않게 국제사회에서의 활약이 더욱 요구되었다. 정부가 해야할 역할로는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의 포함, 남북간 교류협력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보장,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보장, 남북연합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관련 법제화 방안 마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특별히 여성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와 여성부에 남북여성 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통일원과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되었다. 다음은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역할로 제안된 내용이다. 1순위 2순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관련 기구에 여성의 포함과 실질적인 참여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남북연합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항 목
1순위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2순위	-남북간 교류협력 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보장 -통일부에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3순위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보장 -남북연합 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관련 법제화 방안 마련 -여성들이 선호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류, 상호신뢰를 구축토록 지원
4순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5순위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남북연합 시 여성정책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화 방안 마련 -남북한 학술교류 및 여성정책 비교연구 지원

다. 여성평화운동

여성평화운동은 궁극적으로 인간심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화문화’의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지향한 계속적이 행동으로서의 필요함이 논의되었으며 남북여성교류협력을 평화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이 갖는 중요성을 보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평화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여성평화운동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로부터 일상 생활을 평화롭게 산다는 문제를 결합할 수 있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통일 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방향과 목표로는 반도의 남북간 평화와 함께 남한내의 각종 폭력 추방, 전쟁방지 및 평화적인 통합, 군사주의가 가져온 사회의 어둠과 비민주성, 폭력 등의 배제, 남북한의 화합과 상호인정, 배려와 돌봄과 나눔의 생활 등이 제시되었다.

3. 남북연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남북연합단계에서 남한의 여성정책적 과제는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남북연합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 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실업대책 및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 설치 등) 더불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모색 및 실천적 모델 개발)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해결되어야 할 여성정책적 과제들이 제안되었으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였다. 제안된 내용들 중에 통일 과정이나 통일이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강조되었다 (통일과정에서 정책수립시 여성의 참여 보장, 예상되는 실업과 성매매 문제등에 대한 여성의 보호정책, 공교육정책, 여성관련법제 등). 또한 남북여성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여성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을 남한측의 행위주체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역할 면에서 보면 남북한 연합단계를 거쳐 통일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북한 이질감의 극복이다. 여성 특유의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와 더불어 사는 자세, 섬세하고 부드러운 태도, 평화를 지향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의 의미를 파악하는 성향 등은 앞으로 남북한 주민이 함께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하고 더불어 잘사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어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여성이 감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남북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 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및 여성지원계획 수립 : 현재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두 합의서중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각적인 분야에 교류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종교부문과 여성 부문이 빠져있어 그 비중에 있어 중요성이 적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실제 남북간 이루어진 여성교류를 보았을 때 그 중요도는 크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이 체결하는 합의서나 각종 교류협력관련 법 등에 여성을 한 분야로 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남북연합단계와 통일단계에서 여성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교류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 동서독의 통일경험이나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통일작업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대표로 참석하여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전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대표로 활동하였으나, 서독에 의해 흡수되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예멘의 경우 통일이전에 아예 여성교류가 없는 상태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는 남자의 영역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적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나 국가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할당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1991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보다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합의한 후, 사회교류·분과위원회에 1명의 여성부 국장급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였는데, 앞으로 정부는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직접사회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 남북 상호 적절한 수의 여성인력을 참여시켜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기구에 30% 이상 여성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완성단계에

서는 헌법, 가족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법 및 관련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의 여성을 위한 제도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준비과정에 각계의 여성대표가 참여하는 남북여성공동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나 북방정책을 통한 여성교류 지원 : 이미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과 한계점에서 보았듯이 남북한 여성의 교류는 접촉 및 교류제외에서부터 서로간의 이질적인 체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남한은 여성교류추진에 있어 북한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류추진이 가능하나 북한의 경우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최고위부의 결정이 남북여성교류에 앞서 우선되기에 무엇보다 여성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권력층에 여성교류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경주할 때 어느 사회나 집단이든 점차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여성정치인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실례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IPU 총회,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러시아나 중국의 여성정치인들을 통해 북한권력층에 접근하여 여성교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남북한은 분단과정이나 분단이후에 있어서도 독일과는 달리 남한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북한은 통일전략전술을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 기조 하에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남북한은 서로가 국가중심의 교류협력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 사회체제가 개방개혁의 의지 없이 노동당 중심의 변화 없는 교류정책을 전개하여 상호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현시점에서 남한의 민간단체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작용하는 교류정책의 창구를 보다 민간화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독일이나 예멘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특히 인적교류에 있어 다양한 교류의 증진은 결국 상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독일의 통일을 도와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체제 자체가 좀더 비정치화, 탈

군사화되어야 하고 남북한 교류 또한 보다 민간화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한보다 북한이 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양쪽 모두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북한 여성들이 민간 교류차원에서 제3국에서 만나 회합을 갖거나 서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여 교류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95년 1월부터 2000년 10월 현재까지 남북한 여성주민접촉 10건, 남한방문 1건, 북한방문 4건 등 총 15건이 성사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여성대표들은 '99년 9월 '남북 여성계 교류 및 대북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뒤 2000년 11월에 다시 방문함으로써 남북한 여성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남북한 여성 교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이다. 특히 남북여성 교류에 있어서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여성단체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맞추어 남북여성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여성계에서는 먼저 여성교류협력기구 설치의 노력이다.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 참여의 범위와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98년에는 범국민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에 여성상임의장과 공동의장 및 정책위원장으로 여성이 진출하였다. 또한 그 하위분과로 24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논의와 남북교류에 여성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민화협 여성위원회에서는 '99년 8월에 '겨레손잡기 대회'에 참여하고 여성 8·15선언을 결의하였으며, 여성들의 금강산 통일기행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한 여성 교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뿐 아니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노력 외에도 우선적으로 여성계내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여성단체들의 조정·협의기구를 만들어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구는 지원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보채널

차원에서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남북 여성교류 제의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여성교류에 앞서 중요한 것은 남한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북한측에 제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이미 남북한 여성의 지위비교, 남북한 교류·협력사업과 여성교류의 한계점에서 보았듯이 아직 북한은 획일적인 사회로서 본질적인 사회변화가 없는 한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이나 주제, 행사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북한이 교류에 있어 정치적 성격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해 지나친 과민반응을 삼가하며 계속 교류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북한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교류자세가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구문화에 지나치게 흡수된 남한문화는 획기적인 쇄신이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국수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북한의 문화도 좀 더 유연하게 개방화되어 국제화시대의 경쟁을 견딜 수 있는 대외 적응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여성들이 교류를 제의할 때 교류의 한계 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우선 남북한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①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②요리대회, ③미용대회 ④여성의 건강문제 ⑤농촌총각문제 ⑥가정생활 ⑦결혼풍습 ⑧모성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와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문으로 ⑨체육, 연극, 영화 등의 분야에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북한여성에 대한 정보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나 학자들간 정보나 자료교류도 병행되도록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어느 정도 대화나 교류가 진전되면 보다 관심영역을 넓혀나가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어떻게 하면 여성정책을 바람직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향설정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①여성의 경제활동과 모성보호 조치 및 보육시설 문제, ②교육체제의 개선방향과 여성의 참여문제, ③여성의 정치참여 문제, ⑤자녀교육문제, ⑥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철폐방법, ⑦남북여성교류위원회 설치문제 등을 주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때에는 여성간 인적 교류로서 ①이산가족 노인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②남북한 여성의식조사, ③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④지방자치단체간 여성단

체중심의 자매결연 등을 병행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나 여성교류 제의에 있어서 가정이나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개별 단체별로 가능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평화문제나 정신대 문제 등 제 3국과의 연대가 필요하거나 다소 정치적인 색채가 있거나 비여성적인 분야인 경우의 교류제이나 접촉방법에 있어서 너무 직접적인 남북교류제의 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을 통한 접촉시도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후 제 3국을 통한 행사나 만남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여성들이 상호방문을 전개하는 점차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로서 UN이나 UNDP 등을 통해 남북 여성이 만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여성들과 만났을 때 어느 일방의 우월감과 업신여김으로 만남·대화·교류가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VII.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1. 남북연합 추진시의 여성정책 방향

가. 기본방향

- 성 인지적 관점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 여성들도 통일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게 해야 한다.
- 남북연합 및 통일에 대한 여성계의 인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즉 북한여성 및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북한여성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남북한 여성들이 단기간에 공동의식을 구축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 남북한 여성들간의 접촉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국제구호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한여성 및 어린이의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남한의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남북연합 시의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측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북한여성들의 정서적, 심리적 동인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매체교류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기본전제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맞추어 추진 기본 전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연합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남북한간 상호이해와 존중 하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정부와 맥을 같

이 하면서 여성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주제를 찾고, 다양화를 이루어 공동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 직·간접적 교류협력의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 및 지역단체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펼쳐야 한다.
- 국제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세계적인 성관점(gender-based)의 정책을 이슈로 북한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남북한 여성문제해결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한다.
- 남북연합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을 강화한다.

2. 남북연합 추진단계에서 여성정책 과제

가.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제

- 1)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남한 및 북한 중심적 사고방식의 제거
- 2) 이질성 인정 및 상호포용의 자세 갖기
- 3) 여성의식 및 평등의식 함양
- 4) 남북한 여성의 생활중심 및 남북한 공통의 여성적 관심사항의 미시적 내용개발
- 5) 통일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통일관련 여성지도력 향상
- 6) 여성간 통일연대 이루기, 여성문제해결을 통한 통일전후 사회변화노력
- 7) 상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내심과 관용정신 확립
- 8)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항목 수립
- 9) 여성의 모성애와 사랑을 통해 남북주민들간에 적대적인 미움을 극복하기
- 10)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조화, 안정을

이루는 방법모색

나.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과제

- 1) 북한사회에 대한 여성주의적 인식 확대
- 2) 북한여성 및 북한체제 이해증진 노력 필요
 - 북한이해증진모임 (탈북자와 공동체형성)
 - 통일관련여성모임연대
 - 북한교류에 대비한 각 전문분야의 여성지도자 발굴 및 네트워
 - 각 여성 사회종교단체에서 전문가 및 탈북여성 초빙특강실시
 - 중장기적 통일여성교육프로그램 실시
 - 탈북여성 돕기 모임
- 3) 통일전문인력양성과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사안 발굴
- 4) 여성단체협의회 내에 남북한 여성교류 및 통일과 관련한 사업추진
- 5) 북한여성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을 이해하는 소규모 이야기모임 구성과 활성화
- 6) 북한학에 대해 사회문화적 (문학, 역사, 예술, 전통문화 분야 등) 접근 시도로 실증연구 (북한여성의 의식 및 생활세계, 중국조선족, 연해주 고려인 여성의 생활상과 체제전화 후의 변화 등 연구)
- 7) 여성, 건강, 아동의 생육발달 문제 등 구체적 사안 공동논의 필요
- 8)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가능 주제 개발 (남북한 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비교연구 등)
- 9) 북한 여성대상으로 남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활성화
 - 의류, 생필품,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소자본 등 재정적 지원
 - 남북한 상호간 가정,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여성예술인 교류 및 지원, 평양산원과 남한 여의사협회 교류 및 지원, 북측탁아소와 남측 유아교육단체의 교류 및 지원 등)
 - 국제기구에서의 여성참여 유도
 - 북한여성들에게 남한여성이해 증진 방안 모색
 - 여성단체 중심의 대북 식량 및 의료품 지원, 아동구호활동

- 북한여성 돕기, 여성중심교류로 북한의 특정단체(북한간호사단체, 여교사단체 등)북한여성컴퓨터 전문가, 관광안내원 등과 결연사업 추진
- 중국동포(연변지역) 여성 및 재외동포여성들을 통한 3자간 교류활성화 방안개발

다. 여성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 여성을 중심으로 평화적 분위기를 구축함으로써 남북연합추진에 긍정적 환경구축
- 2)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남북여성교류 추진
- 3)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평화의식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문화 강좌 개최 등
- 4) 남북한 정부에 대해 군대 및 무력감축을 위한 캠페인 등
- 5) 반군사주의운동의 전개, 인권존중사회의 구현, 군사기술개발제한, 국방비감축, 평화지대 선언, 한반도핵문제 해결, 사회적 대립적 폭력적 분위기 근절, 전쟁과 사회불안이 가져다주는 비극에 대한 이해 수준제고
- 6) 대북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 7)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한여성 평화포럼개최,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 활용을 통한 평화운동
- 8) 정부는 통일과정에서 군사력을 감소시키고 전쟁의 불씨를 없애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개인과 가정에는 폭력과 다툼을 멀리하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실시
- 9) 통일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라. 여성의 통일역할 증진 과제

- 1) 남북여성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을 실천하는 역할 수행

- 2) 북한여성들에게 남한 이해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
- 3) 통일은 남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탈피, 통일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통일에서 탈피
- 4) 민족 간 상호 돌보고 나누는 정신과 실천을 숭선수범하고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역할
- 5) 비정치적인 면에서의 역할이 중요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 인식강화
- 6) 남북여성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
- 7) 여성대표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성정치세력화, 통일교육 강화
- 8) 많은 여성들이 통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 마련
- 9) 성 상품화에 대한 공동논의 및 대책모색
- 10) 반 핵운동 및 비폭력운동을 국제사회의 여성운동과 연계하여 전개
- 11) 경찰이나 군인들의 총구에 꽃을 꽂는 운동 전개
- 12) 음식문화, 예술분야, 여성수난역사 공동탐사 및 자료정리, 민족공지, 자랑거리 공동개발 등 공동문화개발, 공동운영
- 13) 여성 스스로 통일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식 강화
- 14) 남북한의 여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적 여성정책 형성
- 15) 문화적 동질감 형성을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 강조

3. 여성정책 강화방안

남북연합단계에서 여성정책은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양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될 때 정책이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을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여 단기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그리고 중장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가. 정부의 역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해서 정부는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 여성비정부기구의 통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수립,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여성부문실천과제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성인지적 통일정책수립

시기	성 인지적 정책수립
단기	1)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수립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최소한 30%까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부차원에서 정상회담 후속프로그램에의 여성참여 보장 •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에의 여성참여 • 민간여성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3) 통일부에 여성문제 전담부서 설치 4)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중장기	1)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2) 통일과정에서의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공동위원회 내에 구성 3) 통일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양성

(2) 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실시

시기	여성비정부기구의 지원정책
단기	1) 정부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와 과정의 단순화 시도 2)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3)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축 지원 4) 통일관련 학술교류 지원
중장기	1) 통일관련연구 및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지원 2) 여성비정부기구가 역할조정 및 여성교류의 민간화의 활성화 3)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여성 교류 지원

(3)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부문 실천과제의 수행

기간	여성부문 실천과제
단기	1) 여성자신들의 삶의 현장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프로그램의 내용과 유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류, 상호 신뢰 구축토록 지원 ▪ 정부지원 및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 (여성음악회, 영화감상 함께 하기, 토속음식 만들기, 미술·옷 등의 전시회) - 학술토론 (평화와 여성, 여성운동 등) - 전문가 파견(의사, 약사, 교사 등) - 지자체를 통한 남북한 자매결연 등에서 인권문제, 여성의식문제 등으로 확대 - 상호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 접촉활동 시행 - 여성계, 다양한 단체가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되, 영역에 따라서는 각 단체가 각기 고유의 특성을 갖고 교류토록 지원 2) 남북한 여성간 통일교육의 공교육화와 활성화 3) 숙박교류 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1)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와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통일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 모색, 실천적 모델 개발, 실현. 즉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를 생산 및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창조하는 통일사업 전개 2) 남북한 여성교류를 위한 공동의 장과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함.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남북연합단계에서 여성비정부기구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의 구상, 방법론, 그리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남북연합 추진사업의 내용구상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 내용 구상
단기	1)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 가능 주제 개발, 실현 - ① 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② 요리대회, ③ 미용대회, ④ 여성의 건강 문제, ⑤ 농촌총각문제, ⑥ 가정생활, ⑦ 결혼풍습 등 2)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교류영역 설정 - 남북한 여성간 인적 교류사업 ① 이산가족 노인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② 지방자치단체간 여성단체 중심의 자매결연 등
중장기	1)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구상 및 의제 개발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예민하게 제기된 통일방안, 자주의 문제 등에 대한 남북여성의 의견교환 - 남북의 사회문화 통합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대한 여성·생태주의적 관점의 제시 - 남북한 여성·가정 교육의 비교, 여성의 직업과 사회활동 현실 등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의제 2)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설정으로 교류가 지속되어야 함. - 공동의 학술문화행사 (평화, 민속문화재, 전통문화, 아동보육, 건강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가진 학술회의 개최 및 참여 등)와 공동연구 및 남북한 여성의식조사 - 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 경제영역: 북한여성들에게 소자본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육성 -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분야의 상호교류로 교류분야 확대 3) 지속적으로 남북한 상호 방문 - 동독의 서독 TV 및 라디오 시청이 가능하여 동독인들이 서독을 이해하는데 도움됨.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 점이 통일과정의 큰 수확이었음. -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및 접촉이 중요함. 즉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이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 개발 필요. 4)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여성교류협력센터 설치

(2)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방법론 구축

기간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방법론 구축
단기	1)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 2) 북한여성 및 아동 지원운동을 병행하면서 남북여성교류 모색 3)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인 교류·협력추진 - 여성단체들이 대북한 어린이나 여성지원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적인 지원은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 탈지분유 전달, 옷감 30만 야드, 북한 어린이 돕기 교회 여성연대(24개 단체)를 조직 20억 모금 시작 4) 북한의 전문가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여성접촉과 현재 북한을 이끄는 여성 지도자들과(부록참조)의 접촉 시도
중장기	1)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 2)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여성간 학술분야의 상호교류협력 ▪ 제3국 (북경, 연변 등)에서 상호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자랑할만한 영역 (한의학, 발해사, 단군사 등) - 상호간의 공통적인 영역 (전통민속, 무용, 음악, 미술 등) - 북한의 도움이 될 영역 (현대의학, 농업기술, 전자기술 등) - 비정치적 분야와 함께 정치적 분야에서도 <남북공동선언>에서 제기된 개념 (자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들을 주제로 하여 토론하고 토의하는 국제세미나 개최방법 3) 여성비정부기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 법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점진적 접근시도 - 여성들에게 익숙한 부분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남한여성들이 북한 및 북한여성을 이해토록 해야 함. - 남녀평등관련문제 (평등의식 고양, 여성복지 등) 접근 - 동서독과 같이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방문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4) 여성단체들의 연대들이나 정보교류네트워크의 구성 5) 재정지원의 확대, 즉 자국의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뿐만 아니라 북한여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주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이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이 총괄적으로 주어져야 함. 예로는 서독과 동독여성들의 교류상황에서 자료 구입비 및 세미나 참석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시되고 있음.

(3) 여성교류·협력 실천과제

구분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실천과제
단기	1) 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동분야의 확대 2) 모든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향상시켜 다수의 여성들의 교류 동참 3)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북한의 여성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할수 있는 사업의 구상
중장기	1) 남북한 여성들의 통일이해 및 실천자세 확립 - 남북한 여성들이 논쟁할 수 있는 주제 회피교육 필요 개념, 여성지위, 문제 해결방식 등에서 남북 여성의 인식차이가 토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제 회피 2) 다양한 주제의 선정 및 개방 - 남북여성교류의 기회 확대 및 지속적 만남 필요 -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주관할 “2000년성노예국제법정”(2000·12·7~11)에 현재 북한여성 10여명 참석,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5차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요청. 3) 여성교류를 실천해갈 인력자원의 육성 4)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의 성숙한 태도와 전문적인 능력 배양

다.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1) 협력관계 증진

구분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 과제
단기	1) 북한과의 협력·교류할 수 있는 주제와 분야, 교류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를 통하여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2) 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제공, 남북교류 시 대북 창구 역할을 하며 북한주민 접촉승인, 방북승인, 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남북협력기금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	1)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개입” 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먼저 북한의 정치,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구분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단기	1) 전세계적으로 성(gender) 이슈가 되고있는 여성의 빈곤문제나 여성 가주구의 문제를 통해 이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여성 및 어린이지원사업과 연대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2) 연변의 부련회를 중심으로 조선족여성들과의 교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UN 비정부기구의 소액신용(Microcredi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	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북한 내 활동하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예: UNICEF)를 파악하여 이들이 북한정부의 당 간부와 각종 사회단체들과 연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교류채널을 확대시키도록 한다. 3) 한국여성 비정부네트워크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비정부기구 활동을 시작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국가처럼 구조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슈화 한 것처럼 북한의 상황도 이슈화 할 수 있도록 한다.

V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은 성 관점(gender-based)의 통일정책과제이며 이를 추진하고 수행하는데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와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연합추진단계에서 여성정책은 결국 크게 다음의 일곱 가지 정책주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한 여성의 이질감 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실시해나가야 한다.

남북여성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합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통일의식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교육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평화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남한 내 비평화적 요소와 불평등 의식 제거가 필수적이다. 평화 지향적 여성통일교육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평화 지향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지만 동시에 남한 내의 불평등 의식 제거를 통한 통일환경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은 통일의 첫걸음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화해의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북한사회 및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함양토록 해야 한다. 특히 여성통일교육은 여성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에 맞추어 남북한 여성간의 이해와 의식공유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여성들의 삶과 의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는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통일문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공동문화 형성을 위해 통일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문화운동은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 가치관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다. 통일을 위한 과도기 단계로서 남북연합 단계는 다원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운동이다.³⁴⁾ 한반도 통일은 군사, 정치, 경제적 통합으로만 달성될 수 없다. 남북한 주민의 정서적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언어와 의사소통, 상호이해의 문화 형성, 즉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문화운동은 남북한이 상호이해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성교류협력 활동이 활성화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 사이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예술, 학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② 남북한의 공동문화형성을 위해 우선 우리 사회 안의 비평화적·비민주적 문화 요소를 제거하고 다원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군사주의 문화의 정착으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가부장적 가치, 남성중심적 위계적 문화를 극복하고 평등한 다원적·민주적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상황을 비롯하여 각종 대안적 활동이 펼쳐져야 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는 남북한 사회가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성의제의 발굴과

34) 김윤옥,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 여연 1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1997.6.) <http://www.women21.or.kr/html/peace/97sp08.htm>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작업의 착수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한 교류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통하여 남북한 여성들이 이산가족의 문제, 정신대 문제 등을 공동의 사안으로 제기하고 함께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 외에도 남북한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통일과정에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할 여성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통일과정에서 여성의제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독일의 경험에서처럼 여성들의 요구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안에 밀려 부차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의 문제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족의 복지기능문제가 그 쟁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는 여성들의 통일과정 정치적 참여확대 구축이라는 점이다.

장관급 회담 등 남북한 당국회담 시 여성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해야하며 남북공동선언 4항의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시 여성교류를 별도의 분야로 포함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남북연합추진과정에 서 정부창구 개설과 여성부로 일원화하도록 한다.

SOC 투자 등 대북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고 남북한 여성교류 시 여성부가 적절한 대상을 검토 선정하도록 한다 (통일부의 협조)

현재 장관급 (통일부 장관/전금진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회담 외에 국방장관회담, 관광, 문화관련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차 장관회담 시 협의, 설치기로 함)이 있어 이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현재 유일한 법적 기구인 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여성부가 참여하도록 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되며 협의회 업무를 통할, 위

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됨 (현재, 재경, 통일, 외교, 법무, 문화, 농림, 산자, 기획예산, 외교안보수석, 국정 3차장임),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있다.

여섯째는 여성들의 통일역량증진과 세력화(empowerment)를 위한 정부조직 강화이다.

이제까지 남한과 북한사회에서 여성이 정책대상자, 사회정책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도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성 인지적 관점(gender)을 사회정책 형성과 실현의 한 차원으로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O'Connor, 1996).

남한의 경우, 1990년대에 와서 이전 시기와 비교될 정도의 여성정책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1998년에 만들어진 여성정책 담당기구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에서 2001년 현 여성부로 개편된 후 남녀차별금지를 위한 의식전환 캠페인, 연구사업,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다면 양성평등적 사회제도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여성정책을 따로 전담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전국적 조직인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이 있다. 그러나 여맹의 주요기능은 정치학습에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1991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가족법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부각시켜 그 이전의 법령들 보다 여성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각각 그 사회에서 여성정책과 여성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조직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여성 비정부기구의 활동도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과정과 통일정책 수립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 여성운동 조직, 공동체 조직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통일의제들이 풀려 나갈 수 있

도록 해야한다.

일곱째는 북한사회 내에 자율적인 여성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 3국 여성과의 협조체제구축이다

북한과의 접촉이 가능한 재중동포여성과의 교류를 북한여성 및 여성정책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해야한다.

여성부 및 숙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주최로 연변조선족 자치주 부녀연합회 국내연수가 2001년 5월 26일에서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연변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자매결연으로 (2001) 연변대학교 여성연구소가 김일성 종합대 여성학자들과의 학술교류를 개최함으로써 이화여대 교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2. 결론

3단계 통일론 중 남북연합 단계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남북한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통일역량을 구축해가야 하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차원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회·문화적 통일분위기 형성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적 역할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맡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건강, 자녀양육 등 남북한간 여성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담론을 시작으로 상호 이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는 남북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의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이유가 된다. 남북연합 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는 통일국가로 진행해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현재 유엔에서는 각 분야에의 여성참여를 중시하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통일과정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도 각종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방안 강구, 여성의 참여모색이 우선되도록 해야할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회 모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는 유교적 가족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 여성들의 공동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여성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 상호 신뢰감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주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 여성 노동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성평등적 노동시장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며, 여성노동이 비사회적 노동으로 퇴출되는 경향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입장이 반영된 통일방안의 모색, 남북 여성의 합의된 통일방안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여성뿐만 아니라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여성들은 통일과정, 남북연합 단계에서 여성의 주체적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여성운동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위한 여성통일전문가의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통일운동의 세력화를 위해서는 각종 통일교육기관의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성통일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관이 필요하다. 전체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돕기운동과 같은 통일운동의 경우에는 각 대학,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여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세력화해 나가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여성민간단체는 정부기관과의 상호 공조관계가 필요하다. 여성통일 관련단체는 남북연합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통일관련 전문가 및 일반여성들까지도 협력하여 연계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여성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강화방안은 여성교류협력, 여성통일교육, 평화문화운동의 확산 등으로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고, 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천적 통일운동을 중앙차원에서 통일적·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으로써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미래가 우리들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귀옥 외(2000).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당대.
- 김국신(1994). 『남북연합 형성 및 방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대중(1995).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김선옥외(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양희·정숙경·양애경(2000).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희·장영아(2000). 『통일대비 여성관련 법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1998).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편).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서울: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 김재경(1992). “독일정부의 여성정책.” 『한·독 사회과학학보』, 제2호. 한·독 사회과학회.
- 김재인·양애경·허현란·유현옥(2000).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장혜경(2000).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김재인·유희정·양애경(1999).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민무숙·안재희(2001). 『북한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북한연구소·북한학회(1999). 『북한학보』. 제24집. 서울: 북한연구소·북한학회.

북한문제연구소(2000). 『연합통신』.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1998a). 『21세기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의 자세』,

_____ (1998b). 『여성들의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

손봉숙·이경숙·이온숙·김애실(1991). 『북한의여성생활』. 서울: 나남.

여성부(2000). 『여성백서』.

_____ (2001). 『2000년도 시행실적 및 2001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부.

유석렬(2001.4.30). “남북연합 개념 및 추진방안.” 2001년 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집.

UNDP·인간개발보고서(2000). 『인권과 인간개발』.

윤미량(1991).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이경숙(1991).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임순희(2000). “남북한 여성의 삶의 모습-남북한 여성 삶에 대한 이해가 남북여성교류의 기본조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편). 『여성』. 서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1989년 겨울.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전복희(2000). “통일 한국사회 건설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정책제안.”

_____ (2001). “남북한의 여성지위와 통일시대의 여성문제.”

정무장관(제2)실(1991.12).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_____ (1998. 1). 『통일 대비 여성정책 연구: 독일, 베트남, 및 예멘 등 통일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조 민. “남북연합 형성과 추진과제.” 2001년 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집.

통계청(2000). 『국제통계연감』.

통일부(1994).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_____ (2000). 『통일백서』.

_____ (2000). 『북한개요』.

통일원 교류협력국(1997.8). 『남북교류협력동향』 .

통일원(1995).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 서울: 통일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0a).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_____ (2000b).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최운실·한만길 외(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통일부(2000). 『여성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http://www.unikorea.go.kr>

<http://www.pcwa.go.kr>

<http://community.kongju.ac.kr/~sunny/Socil109.htm>

[http://home.ewha.ac.kr\(2000.6.30\)](http://home.ewha.ac.kr(2000.6.30))

[http://koreatimes.co.kr\(2000.3.8\)](http://koreatimes.co.kr(2000.3.8))

<http://wmp.jinbo.net>

Homans, George C. (1950). *The Human Group*,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_____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Howel, Jude(1995). "Prospects for NGOs in China."
Development in Practice 5(1):151

Richard M. Emerson(1976).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At Sociology 2, Palo Altoc Annual
Reviews, Inc.

UNDP(1995, 1997, 2001). *Making New Technologies Work
for Human Delelopment*

<부 록>

1. 남북연합 관련 자문 전문가 명단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정책연구 간담회1』 결과보고
4.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정책연구 간담회2』 결과보고
5. 한중학술회의 토론문
6. 남북연합추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및 여성정책 워킹 그룹 회의록
7. 남북연합추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및 여성정책 연구 전문가조사지

부록1. 남북연합 관련 자문 전문가 명단

이금라 의원	서울특별시
윤미량 과장	통일부 회담 2과 (경제)
김선욱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김준희 교수	진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김현옥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남인숙 교수	대구 효성카톨릭 대학교 여성학과
백영옥 교수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오유석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
이영애 교수	단국대학교 정치학과
장공자 교수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일화 교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정현백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제성호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과
고성호 교수	통일교육원
김귀옥 박사	경남대학교 북한문제연구소
박의경 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복희 박사	아태평화재단
조민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윤여상 박사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우영 박사	통일연구원
이기동 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소
임순희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황영주 선임연구원	부산 외국어대 국제관계연구소
고기효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통일위원회 한국통일여성 협의회
김윤옥 회장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송경민 부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문숙 총무	한국교회여성협의회

전숙희 회장
조영숙 정책실장

하나로 교육복지연구원 통일공동체 지원센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

김영림

전 북한 외교 공무원

문현희

전 북한 인민배우

안찬일 박사

현건국대학교정치행정학부

장인숙 회장

현 (준)탈북인연합회

전혜숙

전 북한군인

최진이

전 북한기자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남한측 의견]

1. 남북연합 추진을 위하여 남북한이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보기 내에서의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 군비축소와 평화협정 체결	- 남북간 경제공동체설치 - 남북한 인적교류확대(자유로운 서신 및 학술, 문화, 체육, 여성 등 상호방문)	- 남북간 경제공동체 설치 - 남북한 인적교류확대(자유로운 서신 및 학술, 문화, 체육, 여성 등 상호방문)
2순위	- 남북한 인적교류확대(자유로운 서신 및 학술, 문화, 체육, 여성 등 상호방문)	- 군비축소와 평화협정체결 - 국가보안법이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이념 철폐 -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3순위	- 국가보안법이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이념 철폐 -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 남북한 각료회의의 정례화 및 공동사무처 설치	- 한반도 비핵지대화	- 언론인들의 자유취재 및 방송개방

[보기 외의 의견]

- 남북의 특수관계 설정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 및 설득외교관계 확립
- 국민들의 통일교육과 상호 대립적인 가치관 지양과정
-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현안의 해결을 통한 신뢰회복
- 대북경협(경제지원)제도화 및 지원확대
- 남북간 학교교육 공통과목을 위한 전문가 회의, 국제관계의 신뢰

- 인적교류의 일부이지만 학생들의 교류(교환학생)
- 상호신뢰를 제도화할 수 있는 system 개발
-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승인
- 남북한의 대안 체제 논의의 심화

2. 남북연합 추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한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야 할 일

[보기 내에서의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 정치적 안정	- 민주화 신장	- 민주화 신장
2순위	- 경제력 강화	- 경제력 강화 - 국가보안법 철폐	- 사회복지증대 - 국방비 삭감 - 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
3순위	- 민주화 신장	- 사회복지 증대	- 정치적 안정

[보기 외의 의견]

-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통일 및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구조 내지 제도적 장치마련
- 자주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
- 최고지도자와 정치인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
- 통일방안 등 통일논의에 대한 국론 정립
- 국민화합(지역문제 해결), 사회통합(빈부격차 감소)
-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 사회전반의 반공이데올로기를 해소
- 부조리, 부패 척결.
- 정권에 대한 신뢰 및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
- 민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확대

3. 남북연합 추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한 정부가 국제적으로 해야 할 일

[보기 내에서의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 북한의 국제경제기구(ADB, IMF, IBRD 등)에의 참여유도 및 대외관계 개선 지지	- 북한의 국제경제기구(ADB, IMF, IBRD 등)에의 참여유도 및 대외관계 개선 지지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남북한 대사협의회 구성 등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 남북한 연합단계에서의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2순위	- 한국 주도의 대북 정책추진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남북한 대사협의회 구성 등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 국제기구(유엔,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한 북한지원 - 북한의 국제경제기구(ADB, IMF, IBRD 등)에의 참여유도 및 대외관계 개선 지지
3순위	- 국제기구(유엔, 세계식량계획)등을 통한 북한지원	- 국제기구(유엔, 세계식량계획)등을 통한 북한지원	- 한국 주도의 대북정책추진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구축 -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동등한 방향의 투표권 행사등 행동통일사례 확대

[보기 외의 의견]

-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 유도
- 북미관계개선 촉구
- 미국이나 중국 등 이해당사국에 남북연합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된다는 점, 그리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것
-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의 노력
-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당위성 구축과 북한의 협조에 대한 인식 확대
-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는 일. 왜냐하면 미국의 이 조치는 남북의 경협이나 교류를 기본적으로 통제 및 제한하는 조치가 되기 때문임.

- 북한 문제에 대한 남한의 확고한 지지의지 표명

4. 남북연합을 이룬 외국의 사례들(이집트-시리아, 남북예멘, 중국-대만, 러시아-벨로루시)이 남한과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과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및 역할에 대한 것.

[시사점]

- 두 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가 완전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기능적 차원에서 결합하여 공동의 협조체제를 구축,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그러한 경험이 없을 경우 정치지도자 중심의 다소 작위적인 정치적 결합은 오래 가지 못 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 각 사례는 상이하여 공통적인 시사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상이한 조건 하에서도 내적 필요성이 존재하면 그러한 연합국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통일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풍요로웠으며,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의 논지가 일관적으로 명쾌하였다. 두 체제간에 통합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였고 통합후의 현실적인 이익이 뚜렷하였다. 분단 때보다 통합 때에 더욱 강한 국력을 지닐 수 있다는 청사진이 있었다.
- 상기 사례들은 동일한 체제를 가진 국가들간의 연합인 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지 않음. 즉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례와 거리가 있다.
-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 제도 및 정치적 통합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 문제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이념의 차이가 없는 국가들인 연합을 이룬 경우로 본 질문의 예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우리와 같이 이념이 서로 다른 체제가 연합을 이룬 것은 남북예멘이 유일한 경우임. 그리고 남북예멘의 경우는 정치적 협상이나 교류를 통한 연합체를 이룬 경우가 아니고 무력으로 통합한 경우임.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것

은 군사력이나 안보, 경제적 면에서 강세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음. 따라서 남북예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남북연합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북한보다 여러 면에서 특히 군사력이나 안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남북연합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될 것임. 남북연합을 통해 통일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 나타나야 함. 연합이 되도 상호 불신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멀어질 수도 있다.
- 국가연합이 국가 간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분쟁과 분단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연합체가 1세대를 넘겨 계속된 예가 없음은 그만큼 체제의 취약성을 시사한다.
- 이들 국가의 연합 과정과 우리가 다르고 우리가 이들의 문제로부터 배울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참여와 역할]

- 특별히 여성이 국가연합이라는 정치적 주도에 주체가 된 경우는 전혀 없다. 그것은 독일과 같은 사민주의 하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연합단계 이전부터 여성들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 국가연합은 그 체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위한 과도기이므로 이 시기에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여성들이 철저히 배제되어왔음을 볼 때 특히 국가연합 성사 이전과 이후의 여성에 대한 시각과 배려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는 이를 교훈 삼아 그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여성의 일정비율 참여를 성사시켜야 한다.
- 해외에서 활약하는 화교 여성들의 역할이 중·대만 여성교류 및 화해·협력에 공헌했음을 볼 때 재외한인동포여성들을 통한 남북여성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여성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 구축).

5. 남북연합추진을 위한 여성역할 추진 방향

- 남북한 이원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동질체제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이 그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연합단계에서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위하여 남북한 각 사회 체제에서의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여성정책을 형성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과 함께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각 지방의 문화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달랐다. 동질체제 형성을 위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은 해소하도록 노력하되 각 지방의 문화는 존중되는 가운데 동질감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원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을 없애나가는 노력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설령 남북 정부가 연합단계로 접어든다고 할 지라도 남북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신뢰 증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합은 언제든 가역(可逆)의 방향을 탈 수 있습니다. 동질성 형성의 문제는 어찌면 먼 미래의 일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상이 현재 다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이원체제란 동질제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동질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질체제라기 보다는 점차 통합체제로 향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남북한 여성들의 동질체제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는 접촉증대를 통해서 이질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상대적으로 반 북한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집단의 기존 허위의식을 타파하여야 한다.
-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합을 위한 상호 수렴 즉, 남북한 동질성의 기반확대를 위한 여성의 역할증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에서 여성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평화군축운동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老子的 격언처럼, 한반도의 엄청난 대결상황을 해소시키는데 남성의 전투적 평화운동 보다는 ‘어머니’의 본성적 평화 이 미지에 기반한 강렬한 호소가 필요함.
- 반핵운동을 국제사회의 여성운동과 연계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경찰이나 군인들의 총구에 꽃을 꽂는 운동 전개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여성단체의 지지
- 비폭력운동과 여성운동과의 연계

단순히 여성이 참여했다고 해서 남북간 관계가 부드러워지거나 돈독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남북연합은 성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피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대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면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1) 남북연합단계에서의 통일의식교육의 유형

- 남북한 주민이 21세기 새로운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지금과는 다른 상호 이해하고 적응하며, 동화하려고 노력하는 적응지향형 통일의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대부분이 사회변혁형과 의식함양형이 병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반면 이러한 유형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유형에 의한 교육이 아닌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는 가정관과 여성의 사회참여관에 있다. 북한은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반면 남한은 가정을 중요시함.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여성들에게는 남한에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정 의 중요성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내용이 통일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여성이라고 하여 다른 통일의식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통일 의식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며 다만 남북 공히 여성이 인구의 반을 점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여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관심 (자녀 교육, 남녀 역할분담/평등 등, 물론 다른 사회적 이슈에서는 여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적일 뿐임) 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통일은 남북한 여성 모두가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성 평 등 사회를 만드는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함. 현재 남북한 여성은 다른 체제 하에 있지만 성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면에서 동일함. 이를 적극 감안할 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이 매우 크며 남성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성과 통일을 연관지어 볼 때 여성 문제가 독립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즉 통일의식 교육이란 결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교육자, 보육 자, 사회적 약자 등등)속에서 여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보다 올바른 통일관을 갖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
-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여성의 문제와 통일문제의 결합. 사회적 소 수자의 문제, 차별의 문제와 결합시킴/ ‘가정주부’(housewives)로부터 ‘통일주부’(The Unification Housekeepers), ‘민족 주부’(The National’s Housekeepers) 프로젝트 추진(Margaret Mead, 1965 참조)/ 전환기 사회의 여성의 고통과 轉落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통일 자매회(부인회)’, ‘한백 자매회(부인회)’ 등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National Sisterhood)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Elise Boulding, Cultures of Peace (Syracuse Univ. Press, 2000), 참조)/ 남북연합 단계 시, 최근 중국조선족 사회의 붕괴와 가정파탄 그리고 조선족 여성의 한국 내 3D 시장의 노동력 공급 및 매춘업 종사 등의 상황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충분히 예상

되는 현상으로 학습해야 함/ 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전제로 공익을 찾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2) 여성을 위한 통일의식교육의 목적

-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민족 의식의 고취
-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상대측에 대한 이해도의 증진과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한 민주주의식의 함양
-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양성과 상호공존의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은 남북통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더 우월하며 결과적으로도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준비에 대한 의식함양
- 성으로 볼 때, 여성은 통일세력의 1/2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력인 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들간의 인식차이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일상생활에서 분단구조의 폐해를 인식하고, 통일문제와 여성문제의 결합
- 적극적 차원에서 통일의 토대 쌓기로 평화와 동포애를 배양하기 위한 '여성성'의 재발견 비폭력, 평화와 '여성'의 역할/ 소극적 차원에서 통일과정의 전환기적 과도기에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에 대한 예상과 극복 방안 모색
-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주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음. 이런 측면을 반영하여, 여성이라고 하여 집안일 만 하라고 할 수는 없음. 통일교육도 한편으로는 자개개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원하는 여성에게는 자료와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할 것임.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통일교육은 우선적으로 북한실태와 남북 간 관계, 통일환경, 남북한 주민의 삶 등

기초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

- 통일이라는 것을 정치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신장의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
-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상대측에 대한 이해도의 증진과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한 민주의식의 함양
-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전쟁 방지.
- 평화와 민족번영
-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
- 통일이 만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뒤야한다. 모두가 행복한 통일, 민족의 긍지가 살아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 소외 받던 층이 소외를 깨닫고 주인노릇 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봅니다. 통일공동체의 시민, 국민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통일의식교육의 기본 목표여야 합니다.
- 여성의 통일의식 제고 및 올바른 통일관 정립
- 여성들에게 통일 이후의 사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3)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방향

- 사랑, 포용, 조화, 평화, 대화와 협력, 공존 등의 가치 지향
- 북한사회 대한 편견없는 올바른 인식을 위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교육, 통일을 위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연관시킬 수 있는 안목
- 공존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시민의식 고취
- 실질적인 상호공존 프로그램 참여
- 남북한 여성들의 가치관, 생활양식 등의 이질성과 동질성 수준, 그리고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력에 대한 우월성보다는 ‘나눔의 미덕’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여성들은 화장품과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재에 관심이 높은

바, 이것을 북한여성들에 대한 과시의 대상이 아닌 나눔의 대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임

- 분단구조와 여성문제의 결합. 통일을 통한 여성문제 해결
- 북한 여성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이해
- 북한 여성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성 중심적 사회의 최후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이해시켜야 함.
- 일반 주부의 북한관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통일비용, 북한떼 거지, 가까이 하기 싫은 이웃 등)를 먼저 불식시켜야 함.
- 북한 여성들의 꿈과 희망은 남한 주부들과 다름없으며, 그들도 남성 중심적 세계에서 억압받는 자매임을 일깨워 동류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함.
- 북한이해, 통일환경,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여성교류, 민주주의와 시민성, 통일준비를 위한 여성활동, 통일을 위한 여성지도력연대,
- 북한주민의 생활과 가치관, 여가활동, 통과외례(졸업식, 관혼상제 등), 북한의 가족제도, 남녀관계, 교육제도 등
- 북한정체와 여성의 의식에 대한 이해 또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태도의 확산
- 북한사회 대한 편견 없는 올바른 인식을 위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교육, 통일을 위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 각 지방의 역사적인 문화의 고유성과 차이, 전쟁이 주는 폐해,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주체적 사고훈련과 토론하는 능력.
-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기
- 문화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다양성에 관한 지속적인 훈련과 관용 등의 전통함양이 필요하다.
- 남북한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 공포감을 없애는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공포감은 기본적인 사리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 허무감을 만연시켜왔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 먼저 실시되면서 동시에 남, 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 남북한 사회·문화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특히 남북한 여성의 생활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올바른 정치교육

(4)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고, 남한 중심적 사고방식의 제거, 사회 비판적 사고와 여성의식의 함양.
- 이질성 인정, 포용의 자세, 우월의식의 배제
- 평등한 사회의 구현과 통일된 사회의 일체성
- 상층 지도자급 여성에게는 남성 엘리트층 대상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인식과 민족적 전망에 대한 거대 담론적 접근의 통일교육의 내용이 필요하나, 일반 여성들에게는 남북한 공통의 여성적 관심사항의 미시적, 구체적 내용의 개발이 요망됨.
- 현재 수행되는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함.
- 통일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통일관련 여성지도력 향상, 여성간 통일연대 이루기, 여성문제해결을 통한 통일전후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
- 여성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은 남녀가 미묘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현실적으로) 남북한 여성의 생활을 중심으로
- 북한의 이래서 나쁘다 혹은 이래서 문제다라는 태도보다는 왜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여성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고, 남한 중심적 사고방식의 제거, 사회 비판적 사고와 여성의식의 함양.
- 학교에서 간단히 스쳐 넘어간 민족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여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것과 현대 국제사회의 냉정하고 혹독한 자국이익을 위한

경쟁에 대해서

- 상호간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관용의 정신이 필요.
- 서로 다른 것 가운데 선후 취합 선택 통해 쉽게 이룰 것은 먼저 처리하고 다름이 커서 합의도지 않는 건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한다/ 조급함을 버릴 것. 당대에 될 이뤄야 또는 내 임기 내에 통일해야...하는 조급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분단된 기간만큼 필요함을 인정해야 함
-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것
-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여성의 모성애와 사랑을 통해 남북주민들간에 적대적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평화와 조화, 안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교육 실시

6. 남북한 교류협력

- (1)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남한여성들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
 -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모임 활성화 (북한이해 증진 여성모임, 통일여성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문화활동 등)와 동시에 국가 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비구축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인력의 양성과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의 발굴.
 - 남한의 여성단체들은 각기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바, 모든 여성단체들은 통일과 관련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여성단체협의회’내에 남북한여성교류 및 통일과 관련한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여성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을 이해하는 소규모 이야기모임의 구성

과 활성화

- 지역단위 여성중심의 북한 돕기 모임의 구성
- 실증적 연구의 활성화. 북한학은 정치·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개 정치·군사적 접근이 대중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사회·문화적(문학, 역사, 문화예술, 전통문화 분야 등) 접근이 많은 관심을 끌었음. 그러나 여성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주 미약하여 북한 여성의 의식 및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 바,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요망됨. 비교사회학적 접근방법으로 중국조선족, 연해주 고려인 여성의 생활상과 체제전환 후의 변화 등을 연구하는 것도 기대됨.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여성 동아리 모임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 건강, 아동의 생육·발달 문제 등 구체적 사안을 호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도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봄. 북한이해증진모임(탈북자와 공동체), 통일관련여성모임연대, 북한교류에 대비한 각 전문분야의 여성지도자 발굴 및 네트워크, 각 여성 사회·종교단체에서 전문가 및 탈북 여성 초빙 특강 실시, 중·장기적 통일여성교육프로그램 실시, 탈북여성 돕기 모임구성 등/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 가능 주제 개발: 종군위 안부 문제, 남북한 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비교 연구 등/ 남한 여성단체 상호간 갈등·대립관계 지양, 북한사회에 대한 여성주의적 인식 확대
- 일반적인 남북교류든 여성 교류든 이를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국민적 합의)가 중요함. 여성단체라고 하여 다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심분야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남북한 여성이 공유하는 관심사를 개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남한 여성계들의 한건주의를 지양하고 일종의 상실한 된 교류체를 만

들어 나가는 것

-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을 조정하고 모아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여성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여성들이 남북한 사업에 많이 개입되어야 하고 일반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통일문제는 여성의 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통일에 관한 여성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향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배제되어야 하며, 다양한 group 및 단체에서 발굴된 전문인력의 전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며, 기능성 살리는 전문인력 발굴에 힘 쓸 것 (여성단체, 여교수, 여성경제인 등)

(2) 남북 간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남한의 NGO 여성들이 할 일

-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류, 생필품, 소자본 등 재정적 지원/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제안/ 국제기구에의 북한여성 참여 유도/ 북한여성들에게 남한여성에 대한 이해 증대
- 우선적으로 여성단체 중심의 대북 식량 및 의료품 지원, 아동구호활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 다음 학술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이 가능할 것임
- 북한 여성 돕기, 여성중심 교류로 북한의 특정 단체(예컨대, 북한 간 호사 단체, 여교사 단체 등), 특정 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 우선 자매결연의 방향은 파트너 단체, 지역을 통한 대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북한 여성 컴퓨터 전문가, 관광안내원 등에 대한 남한 NGO의 결연 사업 추진/ 북한의 여성 특수 직종을 발견하고 그에 조응하는 남한 여성 NGO와의 결연 모색
-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지원.
- 국제기구에 북한여성참여유도가 가장 중요하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을 많이 지원하는 것. 남북한 상호간 여성간의 이해 증대

를 위한 문화교류.

- 우리의 NGO에 대한 우선 점검이 요구됨.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못지 않게 국제사회에서의 활약이 더욱 요구됨
- 남북 여성들이 상호 신뢰를 지원할 프로그램을 개발

(3) 남북연합 시 남북여성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역할

[보기 내에서의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 통일부에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2순위	- 남북간 교류협력 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보장	- 여성들이 선호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류, 상호신뢰. 구축토록 지원
3순위	-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보장 - 남북연합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관련 법제화 방안 마련	-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4순위	-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 남북연합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관련 법제화 방안 마련
5순위	-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남북한 학술교류 및 여성정책 비교연구 지원

[보기 외의 의견]

- 여성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
- 여성부에 남북여성 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통일원과 협조체제 구축

7. 여성 평화운동

(1) 평화의 개념

- 물리적·심리적 폭력의 부재 및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여건의 조성
- 전쟁이나 모든 종류의 직접적, 간접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격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
-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
- 상호의 이익에 기초한 공존의 상태
- 상호적대감 해소와 전쟁의 위협 감소
- 국가 간 및 사회 내의 폭력(Violence)부재의 상태
- 군사적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
- 국가폭력(경찰, 군에 의한)의 부재상태
- 지금까지의 평화의 개념은 주로 이념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으로 남북한 실질적인 교류협상 진전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평화의 개념을 실질적인 교류협력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화할 것이 요구됨.
- 폭력과 전쟁이 없는 자유하고 안정된 상태
- 상호 체제에 대한 위협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교류·협력하는 상태
- 모든 종류의 억압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인권의 보장
- 전쟁이나 모든 종류의 직접적, 간접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 공동체를 이루는 것.
- 전쟁이 없는 상태
- 단순한 전쟁의 부재상태가 아니라, 안정과 질서의 제도화
- 전쟁의 종식
- 남북 민족의 공존, 외세 불개입, 전쟁의 가능성의 영구히 없애 비핵지대화 설정, 평화체제 구축
- 상호불가침, 정전협정

(2) 평화운동의 개념

- 비인간적·반문명적 폭력의 퇴치 및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공존문화 및 풍토의 조성운동
-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운동
-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격하되,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핵, 국방비, 군사기술 등 현실적 문제를 특화시키는 운동
- 평화에 대한 보장과 확대를 추구하는 운동
- 평화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권력과 동떨어진 개인이나 단체들의 활동
- 실질적 체제와 이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실천운동
- 평화는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운동의 삼각형적 구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평화운동은 평화연구(이론접 접근), 평화정책(정부의 대내외적 갈등 해소정책)과 더불어 비정부적 시민사회의 역할로, 군사적·사회적 갈등을 비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실천적 활동임.
- 평화운동은 갈등의 협상을 통한 해결, 폭력기제의 거부, 갈등발생의 근원 해소 등을 위한 캠페인, 대중호소·대중동원(예로 반전반핵 평화운동의 한 방법이었던 인간띠 잇기운동), 강연·강의 등의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 등
- 평화는 궁극적으로 인간 심성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점에서 ‘평화문화’의 형성이 중요함.
-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평화개념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임
-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지향한 계속적인 활동
-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벌이는 제반 운동.
- 위의 평화개념을 확인하고 확산시켜나가는 작업
-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운동
- 평화를 위한 실질적 주체적 활동.
- 무력사용금지

- 결과가 아닌 과정의 평화
- 전쟁추방
- 평화운동은 남북 민족이 같이 화목하게 살자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곧바로 생활 속에서의 평화실현과 직결된다. 남녀의 차별, 장애인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을 없애고 더불어 같이 살자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개념이다.
- 비핵지대화, 중립화, 전쟁반대 등

(3)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이 갖는 중요성

- 통일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남북한 주민들이 먼저 평화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남북한의 분단을 평화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통일로 이끌 수 있다. 군사주의적 제도적 장치와 사고를 평화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고로 바꿀 수 있음.
- 평화가 전제되어야 통일이 가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통합과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쟁반대와 사회 안정에 대한 중요성 강조
- 평화공존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일이란 적화 아니면 흡수라는 극단적 방식임
- 단순히 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것으로 통일 개념을 변화하는데 기여
- 남북한 엄청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시켜야 하는 절박성/ 중요, 대결, 갈등의식으로 내면화된 한민족의 강박한 심성을 공존공영, 협조, 연대의식의 배양을 통한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평화운동이 절실
- 비 이념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실질적인 남북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임. 그리고 민간주도의 탈 이념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한의 국

민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

- 우리의 통일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은 평화 통일이므로 일상생활에서의 평화운동은 통일준비를 하는데, 또는 통일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 남북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됨. 일방이 돌출적 행동을 할 경우, 역효과가 올 수도 있음.
- 통일은 일종의 정치적·개인적 억압을 해소하는 작업의 일환
- 남북한의 분단을 평화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통일로 이끌 수 있다. 군사주의적 제도적 장치와 사고를 평화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고로 바꿀 수 있음.
- 매우 중요하다. 서로 이질적인 양측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목표이다.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절약하여 식량난 등으로 대변되는 북의 곤란함과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 동족간의 전쟁은 민족 말살이므로 누구 좋으라고 전쟁하며 전쟁으로 얻는 평화는 의미가 없다.
-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과정이 평화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본다.
- 전쟁의 공포를 줄임
-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치렀으므로 남북 상호 불신의 골이 깊다. 이것을 해결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운동은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중요한 열쇠이다
- 한반도가 전 세계 체제대결의 군사기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4) 세계적으로 여성이 평화와 평화운동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정도

- 평화운동확산에 기여: 특히 국제사회에서 지뢰제거를 위한 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보임
- 평화운동확산에 기여
- 폭력과 전쟁 근절을 위한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
- 평화운동이 체제의 문제인 동시에 문화적이고 가치의 문제인 바 전

투적인 남성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기여하고 있음.

- 전쟁은 남성중심적·남성적 행위로, 예술과 문학은 남성적 가치인 강인함, 용맹, 비겁에 대한 비난, 권력의지 등을 예찬해왔는 바, 여성(여성성)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류사적 보편가치를 전도시키는 대안 가치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임.
- 물론 창조적 인식과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 요청됨(강인한 근육질의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과 유약해 보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단호한 의지와 동여맨 머리띠가 상징하는 운동형태를 비교해 본다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라는 여성이 주도한 캠페인 형태의 평화운동임.
-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이러한 국제 NGO 평화운동은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세계질서의 흐름에 큰 충격을 가했음/ 인권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남성 보다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음.
- 주로 지금까지의 평화 및 평화운동의 개념은 이념적 성격이 짙은 남성 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내용은 탈 이념적인 성격이 강함으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됨.
- 적극적인 안보개념의 확산에 기여
- 여성 고유의 모성애가 평화에 대한 본능적 지지를 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감각은 남성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이므로 여성분야의 활동을 자칫 고립시킬 수 있다. 여성의 역할이 전체 통일운동과 끈끈한 관련을 갖을 때 평화에 대한 여성의 우위가 빛날 것이다.
- 전 여성이 진심으로 전쟁을 마다하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일어난 전쟁을 중지시킬 힘은 없으나 일어나기 전에 막을 힘은 가지고 있다.
- 평화운동과 전쟁의 개념 변화에 기여
- 운동의 차원과 제도를 움직이는 차원, 즉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같이 움직여 나갈 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아직은 미흡하다.

-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는 여성들이 더 평화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항상 평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 여성들을 통해 매우 기여할 것으로 봄

(5) 남북연합추진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이 할 수 있는 역할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 남북여성 교류 추진/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평화의식 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문화 강좌 개최 등/ 남북한 정부에 대해 군대 및 무력감축을 위한 캠페인 등/ 여성에 대한 학대, 인신매매 근절은 통일한국에서도 필요한 것임을 강조, 미리 뿌리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는 운동 추진
- 반 군사주의운동의 전개, 인권존중사회의 구현,
- 군사기술 개발 제한, 국방비 감축, 평화지대 선언, 한반도핵문제 해결, 사회적 대립과 폭력적 분위기 근절...
- 전쟁과 사회불안이 가져다주는 비극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
- 대북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한여성 평화포럼 개최, 여성의 유약한 이미지를 활용한 평화운동 등
- 여성을 중심으로 평화적 분위기를 구축함으로써 남북연합추진에 긍정적 환경구축
-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증진 (구체적 지표로 나타나는 성과를 통해)으로 남북한간 상호이해 증진 방향
- 국가·사회적으로는 통일의 과정에서 군사력을 감소시키고 전쟁의 불씨를 없애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개인과 가정에는 폭력과 다툼을 멀리하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준비한다.
-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넓혀 나가는 것. 관심영역을 확대시키는 것.
- 통일이 지상과제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태도의 확산
- 반 군사주의운동의 전개, 인권존중사회의 구현,
- 통일운동의 목표가 평화로 모아지게 한다.
- 민간지원이 될 것인데 한국 내에서 여성의 힘이 없으면 역시 남성들의 돌러리라고 생각한다.

-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 전쟁불식 및 민족서로 돕기 운동 등
-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로부터 일상 생활을 평화롭게 산다는 문제를 이러한 거시적인 문제와 결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모든 어머니, 딸, 연인들에게 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는지 알려 줄 수 있다.

(6) 남한 여성평화운동의 성과와 한계

[성과]

여성평화운동이 시작되는 단계로 확연한 성과를 아직 제시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 평화의식 교육을 통한 내면화와 핵문제나 평화교육문제 등에서 많은 성과
- 활발한 소비자중심의 운동
- 평화운동의 구체적 실천기제로서 기여하고 있음
- 통일운동에 평화 개념을 도입시켰다. 남과 북의 만남을 실현시켰다.
- 평화와 안보에 대한 대안적 개념의 적극적 모색
-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통일의 문제를 여성의 삶, 군축이나 평화의 개념과 결합시켜 운동화한 점.
- 여성과 평화담론을 연결지웠다는 점
- 문화적 공존의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사례 제시
- 민족의 유대감 인식시키는데 기여 (단 이것이 지나치면 배타적 민족주의가 유발될 수도 있음)/ 통일 및 평화의 중요성 인식시킴/ 세계화 대열에서 북한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점
- 한반도의 비핵화, 중립화, 전쟁반대, 사호불가침, 군축 등등

[한계]

- 평화가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 사용의 금지, 전쟁의 반대, 핵 반대, 지레반대, 강대국 반대 등의 힘의 논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
- 아직 평화 개념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핵심적인 평화의 장애물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여성평화운동이 사회저변에 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남성들의 참여 유인 및 범국민운동 또는 범여성운동화 하는 데 어려움, 홍보부족 등으로 활동소개가 미흡
- 하지만 평화의 문제를 직접적인 전쟁과만 연관짓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는 모든 행동(첨단 군사기술 개발 등)과, 국내의 여러 폭력현상(여성에 대한 남성의, 약자에 대한 강자의...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등)들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운동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엘리트 위주의 운동으로 한계를 맞게 될 것이다.
- 정치세력화의 실패
- 보편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일이 부족
- 여성평화운동이 사회저변에 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아직 정책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지 못하고 민간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 실권이 없다는 한계성
- 북한의 불바다...등 발언으로 볼 때 평화운동은 쌍방이 함께 의견이 같아야 하는데 북한의 발언으로 공감대 형성에 이견초래. 성과 크게 부각 못 시킴.
- 이 모든 문제가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남한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직장이나 가정, 사회 등에서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협조문화를 창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미흡
- 여성평화운동과 통일정책의 상관성을 설득하는 것이 부족

- 여성의 지위가 약한 상태에서의 여성평화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먼저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임. 그래야 통일문제든 다른 문제든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겠지요.
- 북한의 동의
- 일방적인 북한지원운동 전개보다 국내 여론 응집이 요구됨/. 여성평화운동 전개가 북한돕기 운동만으로 비쳐져서는 안됨. 반발세력에 대한 설득으로 전개되도록 해야함/ 여성평화운동이 북한측 옹호세력으로 비쳐져서는 안됨.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일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함/ 운동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함

(7) 통일정책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

- 한반도의 남북간 평화와 함께 남한내의 각종 폭력 추방
- 전쟁방지 및 평화적인 통합. 군사주의가 가져온 사회의 어둠과 비민주성, 폭력 등의 배제. 남북한의 화합과 상호인정, 배려와 돌봄과 나눔의 생활
- 전쟁반대, 남북평화협정의 체결.
- 방향: 변화하는 국제정치 사회에서 대안적 안보개념 설정
 목표: 평화통일을 통일로 인식하지 않고 통일되는 상태

8. 통일과정과 여성의 역할

(1) 통일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여성의 역할

- 남북여성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여성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개발 및 관련 경험의 대북한 전파 및 교육
- 사회구성원의 반으로서 통일관련 비정부, 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사회건설을 위한 제반 법과 제도적 장치에서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인 노력.

-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역할
- 북한여성들에게 남한 이해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
- 통일 및 정치문제는 남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탈피, 통일문제에 적극 관심 표명
- 남성중심적인 국가 중심적인 통일을 제어
-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의 구체적인 역할을 보여지지 않음. 단지 다음질문인 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여성의 보호 (Take care)하는 역할 즉 사회복지적 역할을 통해 북한의 상태를 소외 혹은 이탈로 보면 북한주민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답이 주어질 것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여성의 역할이 클 것으로도 보임. 정부가 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정책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성의 감각적 지혜를 활용하도록 함. 국가는 여성의 역할을 반영하고 이들의 정책에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기존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 좀더 적극적인 통일의식 등 민주사회의식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같은 민족 간 상호 돌보고 나누는 정신과 실천을 숭선수범하고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역할
- 여성의 역할도 다양.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통일문제에 적극 개입 하고, 다른 여성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이라면 남녀 가리지 않고 통일문제에 참여.
- 통일된 조국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공동인식 개발.
-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여성들끼리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야함
- 미래를 위한 준비
- 정치적인 것 외에 비정치적인 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함.
- 전문 인력의 개발과 여성 대중에의 통일교육
- 남성주도의 통일이 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자기역할 다 할 것

(2) 통일 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과제

- 남북여성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들의 보

다 많은 참여 확보

- 여성대표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성정치세력화, 통일교육이 필요함
- 많은 여성들이 통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
- 남북한 여성들의 다양한 접촉의 증대
- 여성단체들 내에 북한 돕기운동과 같은 대북 관심 유도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하고 단체들내에 통일관련 부서를 설립토록 함
-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의 관심도 제고
- 여성지도력 향상. 여성간 연대.
- 통일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통일 상을 역점 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 통일 교육의 일상화, 대중화
- 통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것 통일 뒤의 개인의 인권과 모든 종류의 억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고를 확산시키는 것
- 여성대표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성정치세력화, 통일교육이 필요함
- 성 상품화에 대한 대책.
- 여성들이 언론매체와 여성단체를 통해 여성교류를 계속 요구.
- 현재 통일운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모두 높여야 함.
-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공통분모를 찾는 역할이 필요. 식문화, 예술분야, 여성수난역사 공동탐사 및 자료정리, 민족공지, 자랑거리 공동개발 등.
- 여성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할 것

9. 남북연합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남한의 여성정책적 과제

-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남북연합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 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실업대책 및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 설치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모색 및 실천적 모델 개발)
- 형식적인 것 (남북연합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 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바람직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실업 대책 및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 설치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모색 및 실천적 모델 개발, 통일여성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육성)
 -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통일정책에서 모든 정책에 여성의 소리 반영 및 기구 및 회의에 30%이상의 여성참여 보장/ 여성실업대책 및 복지 특히 상담소를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 및 전문가 육성/ 상호 상이한 이념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치교육훈련 및 인간관계 훈련/ 모든 통일 기구에 여성의 일정 비율확보, 남북한 취재 시 남북 언론기자단에 여성비율 확보
 - 남북한에서의 가부장제 철폐 등 여성의 인권보장이라는 차원과 맞물려서 생각
 - 통일여성운동을 전담할 시민단체의 육성.
 - 통일의 교훈에서 보면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실업대책 및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 설치가 매우 중요하며/ 이제까지 통일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했으나 다양한 부문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완전 가동할 수 있고 여성인력 조사가 선행되고 부족한 부문에서의 직접육성이 요구됨/ 「협상」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임
 - 여성의 사회복지 향 성과 정치적 참여 확대

10.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이 함께 해결되어야 할 여성정책적 과제

- 남북연합 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남북협력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남북한 여성공동의 장과 어린이집 설치/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정보교류네트워크의 구성/ 남북한 통일관련연구 및 지속적인 학술 교류 강화 과제가 있지만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정보네트워크의

- 구성면에서는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으로 학술이나 연구활동을 계기로 한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음
-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통일과정에서 정책 수립에 여성의 참여 보장
 - 예상되는 각종 문제(실업 혹은 성매매 등) 여성의 보호 정책
 -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여성교육의 공교육정책을 통해 남북공동으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즉 북한의 경우 여성선생이 적고 남한의 경우는 여교사가 많다. 이것의 예를 볼 때 여성의 참여 및 역할을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기구설치가 요구됨.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김정일이 아버지로 되어있는 것을 변화시켜야할 것 임.
 - 상호 접근할 수 있는 여성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략준비/ 상호 이해 연구 및 교육/ 정부 및 비정부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 남북한의 각종 억압적 기제를 해소하는 공동적인 작업의 추진
 - 남북연합 단계의 새로운 여러 제도 속에서 주류화를 달성할 방안에 대한 공동 대책.
 - 남북연합 각료회의와 사무처에 여성할당 은 물론 국제회의에서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들끼리라도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함.
 - NGO 정보네트워크뿐 아니라 세계에 걸쳐있는 한민족 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됨. 이를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 간의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중재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수집 요구됨 (여성부, 세계한민족여성네트 워크 활성화).
 - 여성의 사회복지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 많은 연구와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 로는 가능한 한 많이 여성의 진출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우선은 정부가 여성들의 역할을 신뢰하고 기대한다는 가시적인 배려 혹은 능력인정을 보여야 하며 여성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입안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통일문제에의 참가. 직접대화 및 회의, 조직 등에 30% 참여가 되어야 여성의 역할이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남북연합, 평화공존을 위해 이제껏 거론되지 못한 여성관련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으므로 특별기구설립이 요구됨
 - 통일대비, 각 가정에서의 가정사, 가정교육, 도덕교육 등이 남북한간에 서로 이해되어야 통일 수 가치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남북교류, 연구, 학술회의 지원)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여성부와 여성개발원, 여성학과,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유대가 요구되지만 타 분야에서 연구하고 여성과 반대적 견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견해도 경청하여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정치적 문제와 사회·문화적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노력하되 정치적 문제는 일시에 해결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회·문화적 과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 통일은 일시적 과도기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수십년 동안 만연된 통일허무주의, 통일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화된 남북 관계와 함께 남한 정부, 사회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평화공존을 위하여 여성들은 왜 평화인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부록 3.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정책연구 간담회 1』 결과보고

[북한이탈주민 의견정리]

1. 남북연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남북연합 유사점과 차이점

-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공존을 인정한 것, 서로의 자주권 행사, 당분간 자신들의 권력을 보존하면서 과도기 상태로 가려는 점진적 통일방안
- 통일에 대한 인식과 목적 차이, 남한측은 경제, 체제, 문화 등에서 자신감 넘치는 능동형이 라면 북한은 반대인 수동형

□ 남북연합단계 성사가능성

- 북과 남의 이질성 극복한 후, 완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 성사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음. 북한의 체제위기 불안,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3-5년 뒤에 논의의 타협점을 있을 수 있을 것임, 남북연합단계는 순차적이고 필연적이며 통일과도기에 해야할 일로 그 가능성은 현실적

□ 시기

-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이는 어느 한 쪽의 체제가 서로 양보하거나, 북한체제가 스스로 붕괴하거나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함. 20-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공통점이 귀합될 때,
- 북한은 4단계 통일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본다. 1단계는 화해협력단계 (현정권 임기까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3-2008), 고려민주연방공화국탄생 (2015) 통일실천완성단계 (약15년 후) 지난해 6월 이 같은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볼 때 5-8년 후면 연합가능성이 대두될

것 같음.

- 정부의 지속적인 통일정책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 여성의 역할증대 참여비율

- 북한의 제 10기 여성대의원비율이 20.1%인 점을 감안할 때 대략 10-15%의 여성 등이 각 통일 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성별을 떠나 능력이 된다면 구애됨이 없이 참가
- 여성이 인구의 절반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볼 때 20-30%는 참가

□ 통일체제

- 북한도 현재 자체 내에서 시장경제체제를 경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할 것임
-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사회제제
- 사회민주주의 체제 (정치-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경제, 사회복지-사회주의)

□ 남북한간 주민이동의 장점과 단점

- 자유의식의 확산
- 실제적인 통일상황으로 볼 수 있다.
- 지속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민족동질성 회복과 적대감과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 북한사람들의 모습을 남한사람들이 직접보고 관광 및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북한사람들을 자유를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에 따른 빈부격차로 어느 한쪽으로도 인구가 몰리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 민족동질성 회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 낙후된 북측이 남측에 이질감(위화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무질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통제속에 살아온 북한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 남북한 함께 해결해야 할 일

1순위: 군비축소와 평화협정체결 (4)

2순위: 남북한정상회담의 정례화, 단일화된 통일방안의 형성, 한반도 비핵지대화 설정

3순위: 남북한 인적교류 확대 (자유로운 서신 및 학술, 문화, 체육, 여성 등 상호방문)(3), 국가보안법이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이념철폐

□ 남한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야할 일

1순위: 정치적 안정 (4)

2순위: 경제력 강화 (4)

3순위: 민주화 신장, 사회복지증대(2)

□ 국제적으로 할 일

1순위: 한국주도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 (4)

2순위: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ADB, IMF, IBRD 등)에의 참여유도 및 대외관계 개선지지,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2)

3순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남 북한 대사협의회 구성 등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20)

□ 국제적 사례들의 시사점/ 여성의 참여와 역할

- 남과 북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평화공존을 토대로 한 연합방안을 찾아내어야 함,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사회변혁과정에서 등장한 국가연합체들은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집단, 지역단위의 공존이라는 타협점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도 함께 살자고 연합을 모색
- 여성 등의 참여로 연합체가 안정되고 유연해지며 쉽게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곧 이러한 과정의 중요역할이라고 봄, 자칫 강경세력들의 방해로 깨질 수 있는 연합체가 여성의 참여로 함께 타협점을 찾고 안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2. 남북연합과 여성의 역할

□ 남북한이원체제인정 동질체제 형성분위기

- 남북연합추진은 두 권력이 하나됨을 의미함으로 상대방의 제도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해야 함. 활동양상이 유연하고 매사에 침착한 여성들이 많이 참가한다면 성과 배가 될 수 있음.
-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사업

□ 통일의식교육의 유형

- 남과 북의 공통점을 되살리는 단계부터 시작
- 의식함양형, 적응지향형

□ 교육의 목적

-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여성의 권리, 의무를 포함하여 여성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만능여성의 기준을 목표
- 여성도 주인이라는, 통일의 주역이라는
- 모든 여성을 어머니답게
- 통일에 대한 주체적 능력제고

□ 실질적인 교육내용

-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이해시키는 것, 즉 무엇보다도 먼저 맹목적인 적개심과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강압적인 공포의식을 서서히 지워나가도록 함
-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온 여성들과
- 통일에 대한 진정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도록 교육
- 상대방 체제와 문화, 동포를 혈육으로 이해하는 포용의 마음이 중요함으로 인간성의 회복 및 강화교육

□ 과제

- 여성들도 통일의 꽃이 되어야 함. 정치, 이념,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이질감을 해소하는 촉매제적인 역할을 해야함
- 통일의 중요성과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 통일외식함양을 위한 교육여건마련
-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도적 참여와 더불어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작용 (문화적 충격)해소에 앞장서는 교육

□ 남한여성들간 해야할 일

- 예문에 동감. 1회성이 아닌 꾸준한 인내가 중요
- 북한여성들에 대한 이해증진 모임 활성화

□ 남한의 NGO 여성들이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해야할 일

- 예문에 동감
- 북한여성대상으로 가정, 학술, 예술 등 다양한 교류 제안

□ 남북여성교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1순위: 남북 간 모든 교류협력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보장(4)

2순위: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남북연합 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관련 법제화 방안마련(2)

통일부에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3순위: 남북연합 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관련 법제화 방안마련

남북한 여성간 통일교육의 공교육화의 활성화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4순위: 남북한 학술교류 및 여성정책 비교연구 지원 (2)

통일부에 여성전담부서 설치

여성의 남북연합 시의 역할 할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순위: 여성의 남북연합 시의 역할 할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남북한 여성간 통일교육의 공교육화의 활성화

□ 평화의 개념

- 적대적의 개념을 버리는 것
- 전쟁이 없고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없는 것
- 분단구조 속에서 서로 상대방체제를 파괴, 전복하려는 입장을 버리는 것

□ 평화운동의 개념

- 북과 남의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은 범위에서 군축실현
- 평화와 상호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나 활동
- 군축의 실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화

□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이 갖는 중요성

- 군사적 타협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평화운동의 지속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임
- 서로 적으로 대하는 물리력과 사관을 버리지 않는 한 통일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

□ 평화와 평화운동에서 여성의 역할기여

- 북한에서 통일의 꽃으로 불리우는 임수경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
- 지뢰제거 운동 등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여성

□ 여성평화운동이 할 수 있는 역할

- 평화운동확산에 기여, 전쟁종식기여
- 군부 당사자들로서는 불가능한 군축과 긴장 완화를 여성들이 평화운동으로 촉진. 방법은 전쟁위험의 과대선전 폭로, 군수산업의 반 민족성 폭로 등으로 진행

□ 남한여성평화운동의 성과와 한계

- 두드러지는 성과는 없었지만 남과 북의 여성단체간의 접촉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본다, 화해와 협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육, 교양함, 주제는 평화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남북여성들의 접촉으로 평화분위기 조성
- 비 주체성을 띠고 있다. 스스로를 양념감으로 생각하는 의식, 규모와 내용에서 협소, 독자성을 지니지 못한 데서부터 자신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 독창적인 성과부문이 미약, 여성들의 지위가 제도화하지 않은 한 평화운동에서의 성과가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들의 참여가 적음

3. 남북연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 여성정책적 과제

- 여성참여의 정당화 보장
- 남북연합당시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 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 모색 및 실천적 모델 개발
- 남북연합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할 정책과제

- 각 분야에 걸친 남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
- 남북연합당시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 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 남북한통일관련 연구 및 지속적인 학술교류 강화

□ 통일과정에서 구체적인 여성의 역할

- 여성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참여 강화
- 회담 칩 기구에 여성을 포함시키고 발언권 강화

□ 구체적인 과제

- 남북 여성들의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한다
- 상대방 여성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교류협력 활성화

□ 기타

- 남북여성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부록 4.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정책연구 간담회 2」 결과보고

이번 간담회는 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통일연구원 총괄 하에 9개 국책연구기관 협동과제인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2001)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그 목적은 협동연구 참여자 공동으로 러시아 및 독일학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러시아(구 소련) 및 독일의 연방제 경험을 통한 남북연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러·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전개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본원과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본원에서는 김재인 수석연구위원과 장혜경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는 모스크바의 IMEMO(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를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따른 러·북관계 및 향후정세 전망을 주제로 Kunadze 대사와 Alexander Fedorovsky 및 Viatcheslav Amirov 박사, 그리고 Georgi Toloraya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 부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특별히 한반도통일에 대해 러시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통일과 이러한 통일만이 동북아의 안정과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한반도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독일 헤센주 평화 및 분쟁연구소의 연구원이며 녹색당 당원인 Manfred Sapper 박사부와 독일연방제 및 통일경험에 대한 간담회였다. 세 번째는 Mannheim 대학교 정치학교수인 Egbert Jahn 교수와 함께 러시아 개혁현황과 군사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본원은 연구주제인 “남북연합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및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두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였다. 본 간담회를 통해 독일의

경우 정당들이 지도부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성의 몫’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무엇보다도 개별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성과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1961년 이래로 적어도 1인의 여성장관이 있었으며 1980년 서독 연방하원에서 여성의원은 8.4%에서 통일이후 현재까지 26%로 증가하였다. 유명한 여성 정치인으로는 1988년 이후 연방하원 의장이었던 Rita Süßmuth 교수, 쉬레스비히 홀스타인주 지사 Heide Simonis 등이 있었고 이들은 동서독간의 법적, 행정적, 인도적 문제의 처리 등 독일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기반이 되어 통일 후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청의 설립과 주 정부들에서 많은 여성장관들과 여성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간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의 경우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정상회담,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 등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여성들이 통일관련 정책입안 및 정책 결정에 보다 많은 역할의 필요함이 새삼 강조되었다.

부록 5 한중학술회의 강해순교수의 토론문(연변대학 법률학부)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인한 남북교류와 리산가족 간의 여러 차례의 방문은 몇 십년 동안 분단되어 생활했던 한국과 조선 7,000만 민족의 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한테도 더 없는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여성들의 교류협력에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잇따라 여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길지도 않은 시간 내에 김재인 선생님께서 남북연합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토록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탐복 했고 또한 많은 학습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저의 몇 가지 소견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남북여성들간의 교류협력의 가능성

남북여성들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한테는 전반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여성들 자신의 문제, 또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욱 많이 관심 하는 문제가 공동 주제로 될 수 있습니다. 일례하면, 여성들의 사회 여러 분야와 가정에서의 지위, 건강, 보건, 생육, 자녀부양, 부부관계, 업여생활 등을 비롯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방면의 공통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건적인 문제는 남북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연변대학에서 소집하고 연변대학, 한국 이화여자대학과 조선 김일성종합대학 지간에 진행되었던 <중·조·한 청소년 교육과 양성>이라는 주제가 비교적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김일성종합대학 여성학술단체의 중국 방문은 조선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비준한 첫 학술단체라고 합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역할

중국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 여성들이 남북교류에서의 특수한 역할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한마디로 개괄할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작용이 다만 남북여성들한테 만남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데만 그치는 유대적 작용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활했고 한국을 먼저 접촉했기 때문에 상호 이해 증진에서의 작용이 더욱 컸음을 알았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간 립장으로서의 작용을 해야 함을 심심히 느꼈습니다.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에서의 중국동포여성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그 어느 한편의 립장에도 설 수 없는 우리의 심정도 이해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3. 남북관계 개선에서 필요한 사업

① 조선사회 실태를 좀더 객관적이고도 심도 있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급 관원으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회주의 체제와 구쑈련, 동구라과 사회주의 체제기간의 차이점을 인식해야만 서부독일이 동부독일에 대한 그러한 조치가 아닌 우리 동방문화에 알맞는 정확한 정책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인민과 조선문제를 담론하고 판단할 때에는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 비추어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통일에 대한 조급적인 정서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하나같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몇 십년동안 분단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대외개방 정책이나 활동들이 반복을 가져올 수 있고 퇴보를 가져올 수 있더라도 당황해 할 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내심하게 처사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③ 보다 넓은 흥금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대하여야 합니다.

통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 민족이 보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경제적인 협력에 중시를 돌려서 조선의 경제를 어느 정도 부추켜야 합니다. 대방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하여 다만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국적으로 쌍방에 모두 유리하다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 논문은 187페이지에서 <남북연합시의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측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로 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지? 자신의 민주주의 체제가 우수하고 경제가 더욱 발달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 특히는 경제상황에 대하여 리해를 못한다면 협력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용은 언제나 서로를 리해하고 존중하는 기초 상에서의 상호 포용으로 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방조 면에서도 량식과 같은 급수요도 문제로 되겠지만 인터넷과 같은 통신산업을 건설함으로써 조선인민들한테 자기절로 각성하고 자체의 힘으로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면 상상키 어려운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 상호간의 리해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부동한 사회제도, 부동한 교육과 부동한 생활환경으로 말미암아 같은 문제를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며 또한 부동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폐하면 학술회의에서 조선측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토론하고 한국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폭로합니다. 때문에 서로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서로의 우월성을 긍정하고 통일민족으로서의 민족의 민족성을 느끼면서, 미풍양속을 계속 발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상호가지고 있는 적개심이라든가 불신임을 없애기 위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 등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록 6. 남북연합추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및 여성정책 워크숍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4일 (월) 16:30 한국여성개발원 3층 회의실

◎ 참석자 : (외 부) 김영림, 문현희, 안찬일, 장인숙, 최진이, 김귀옥
(연구진) 김재인(팀장), 장혜경, 김원홍

- 김재인 : 남북연합체제가 되었을 때 여성의 역할과 대책에 관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한 논의를 하려 한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여성정책 연합의 과정에서 남북의 정책비교를 통해 남북연합이 되었을 때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의해 보자. 연구방법의 하나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제도나 법을 통일시켜나가는 작업을 설정해 보자. 현재는 각기 다른 유형을 지니고 있다. 남한이 어떻게 해야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변화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얘기해 보자.
- 장인숙 : 오늘 ‘전국교학신문’에 북한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절대다수가 “간나” 라는 말을 쓴다고 보도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언론보도는 중요한 문제다. 항상 북한을 무시하는 보도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 김재인 : 남녀평등의 ‘언어’를 정립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서로 몰이해에서 나오는 오해이다.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많은 논의를 요한다.
- 장인숙 : “간나” 라는 말은 욕이다. 북에서 쌍욕 할 때나 쓴다.
- 김재인 : 첫 번째 남북한에서의 여성과 관련하여 동질성과 이질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 장인숙 : 북경에서 북한여성대표를 만났다. 300여명 규모였다. 이 만남 또한 여느 때와 같이 주어진 각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별 효과도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북한 여성들 또한 분류별로 다 있다. 주부, 교수, 판매원 등의 각기 계층을 분류해서 만나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여 그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분

류해서 종합적으로 공통부분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돈’이 문제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북한만 다른 게 아니다. 북한 여성이 색안경 끼고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안에서도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의 여자들은 남다른 강인함이 있다. 여자의 힘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끌어왔다. 근면하다. 여자들이 이끌어 간다. 대학졸업 후 노는 것은 비양심적이 되는 것이다.

- 김재인 : 그렇다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은?
- 장인숙 : 고유한 본능은 같다. 다른 점이라면 노동 속에서 그리고 당의 통제 속에서 생활하며 북한여성들이 대체로 순진하다. 남한여성은 서울대 졸업하고도 놀 수도 있으며 사치를 한다. 그리고 남한 여성은 반말하는 행위를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말이 평등은 아니다. 북한은 남편에게 반말하지 않는다. 순종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 김재인 : 남한에서도 장인숙 선생님과 비슷한 연대는 같은 생각을 한다.
- 안찬일 :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남한은 민간단체와 관변단체가 있으나 북한은 정부 하나이다. 정치적(제도적)인 사항과 비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사항을 구별하여 접근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군위안부’같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나 문화(요리, 패션)와 같은 비정치적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분명한 우월하고 북한 또한 남한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 김재인 : 너무 비정치적인 교류만 이루어지면 정치적인 문제가 맞물려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 안찬일 : 현실적으로 경직된 제도 하에서 비정치적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문제는 비정치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중요하다.
- 김재인 : 보슬비에 옷 젖듯이.... 정치적·비정치적인 접근 방법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 VS 정부기구가 접촉할 때

- 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안찬일 :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8·15 대 회에 참가했던 남한의 민간단체도 사실상 관변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비정치적 접근의 회수를 늘리면서도 북한에 끌려가면 안된다. 부분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주면서 반대급부를 노려야 한다.
 - 장인숙 : 완전히 다르다. 말할 때 북한은 걸릴까봐 말을 안하고 시키는 말만 한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 문현희 : 자꾸 만나면 통제 속에서도 무언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무의미하게 꼭두각시 노릇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 사람들 역시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안목 없고 맹목적인 사람은 아니다. 큰 것을 노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분명히 모임에 나올만한 사람들은 안목이 있고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다.
 - 김재인 : 같은 과 다른 이 있다면?
 - 문현희 :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 관념과 사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잠재적 교육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러나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남북여성의 차이는 없다. 탈북 후 그들도 남한에 와서 생활하면 결국 남한여성과 똑같아진다. 속성은 같다. 이데올로기나 잠재의식이 다를 뿐 다른 건 없다. 본인이 남한에 온 후의 첫 느낌은 ‘교육받은 것과 다르구나!’ 라는 것이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은 없지만 북에서는 남으로 온다. 남한체제를 센스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사회가 암담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환경이 변하면 같아질 것이다. 북한여성의 50%이상은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북에서 “왜 통일이 안 되는가?”의 문제에 ‘인민들은 다 통일이 됐다. 사회적 율타리가 문제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 장혜경 : 남한에서는 통일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통일을 의식하고 알고 있는지?
 - 문현희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정부에서 공시하고 선전하여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는 ‘바람’이며 ‘통일이 되면 남북한은 세계최고로 잘산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계층이 ‘통일’을 믿고 바란다.

○ 김재인 : 고려연방제가 아닌 남한의 통일방안이나 제3의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정말 만약에 남한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 장인숙 : 그 상태로는 통일 안 된다. 통일염원은 같아도 북한의 속성은 안 변하며 절대 꺾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통일은 가당치 않다.

● 김영림 : 막연해서는 안되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 정도 차에 대해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쪽 여성 모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가정에서의 같은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고 사회유지의 한쪽 동맥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생활의 인간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듯이 말이다. 이런 점에서 공통적인 지위와 역할과 동질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질성이라고 하면, 지위에 있어서 북한의 여성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피동적, 강제적, 수동적이거나 반면 남한의 여성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이다. 가정 내에서는 북한은 봉건 세속적 유교문화를 답습하고 있다. 70%정도가 그렇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남한은 자유분방하다. 문화·생활·교육의 차이는 “정도”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본다. 가치관은 남북이 전혀 다른데 이는 환경이나 교육수준으로 인해 당연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만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의 정치적 부분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없는 교류는 자원낭비이다. 현재 분명 불필요한 관련행사가 존재하는데 이는 안하는게 낫다. 김정일 답방에 대한 성과는 회의적이다.

전통적 여성가치관에 부합하는 모임 (어머니회, 전통문화 연구, MT 방식 등)을 통해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 결론을 제시할 때가 아니다. 서로가 주도한 통일 (국내, 국외)을 바라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는 신축성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 김원홍 : 남북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장인숙 : ‘전쟁을 통한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깨달을 수 있게 각성시켜야 한다. 55년 전 똑같이 출발했는데 현재의 다른 모습을 통해 제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 개혁과 개방의 개념을 북한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왜 남한에 북한사람들이 오는가? 그것은 남한을 알기 때문에 온다. 같은 날 해방되었고 같이 전쟁을 치렀는데 왜 북한은 못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북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에 의해 무너지게 해야지 지금 상태로 손댈 수 없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을 보라. 북한사람들 생각에 처음에는 무지하게 잘 사는 사람들 몇 명 오고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잘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각성하게 된다. 알려지면 각성한다.
- 최진이 : 동질성 - 정이 많다. 이질성 - 북한은 거절을 못하지만 남한은 거절문화에 익숙하다. 만남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치를 비정치화’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여성’이란 말도 ‘페미니스트’라는 말도 없다. ‘북한은 안되어 있는데 우리는 되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의 인간적인 면 (아기, 남편..)에 쳐들어가라.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내걸면 북한은 심하게 거부한다. 본능적일 수 있는 문제, 가령 ‘남편이 나를 때리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납득하기 쉬운 생활적인 접근을 통해 그러한 접촉이 여성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북한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편은 의식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그러나 함경도에서는 가부장제가 엄격하다.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
- 김재인 : 북한은 오래 전부터 남녀평등 법령과 가족법이 정비되어 있다.
- 최진이 :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무조건 사회진출을 하고 타아소가 잘 되어 있는데 여성의 낮은 지위에 관해서.. 여성해방의 정도는 그 나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존중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 정도가 떨어진다. 체력 면에서나 의식고양을 위

한 제도적 장치 면에서나 말이다.

- 장인숙 : 여성제도는 북한이 잘 되어있다. 그러나 경제가 안돌아가니 제도도 따라가는 것이다.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많으나 의식의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 나름의 문제이기도 하다.
- 김재인 : 경제가 제도를 지배한다?
- 김귀옥 : 만남의 구체적 장은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대중매체(북한 여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통해 북한을 접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면 차이가 크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중요하다. 동질성·이질성에 따른 분석은 기계적이다. 가부장제가 가장 동질적이다. 90년대와 80년대의 서울의 삶 혹은 동시대의 지방과 서울, 영남과 호남은 또 다른 차이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공존한다. 단순비교는 안 된다. 이북사람 역시 세대차가 존재하고 활동분야별 차이 그리고 지역차, 북한을 떠난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르다. 최근은 ‘탈북자’는 줄었다. 다만 해외 체류하다가 남한에 들어온 사람이 늘었다. 현대는 ‘남자(30-40대)가 가사노동을 하자’라는 하나의 행사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대는 ‘협업’에 대한 개념에 과거와 달리 보편화되고 있다. ‘협업’에 대한 마인드는 북한이 부족하다. 1920년대 소련의 법령이 거의 1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협업에 대한 테제가 빠져있다.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 분위기는 따라가는 것처럼 남과 북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개념 속에서 차이점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적인 성규범- ‘가부장제’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해서 ‘성상품화, 낙태....’를 통해 북한이 낙태를 없앤 현실적 배경과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가부장제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류꺼리가 나온다. 정치적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부분(위안부) 남과 북 여성의 지위가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감안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한 시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김정일 답방 효과 있다고 본다. 경의선 철도나 식량지원 같은 문제는 실무자들의 몫이다. 다만 ‘평화’의 문제는 당국정상이 매듭지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다. 큰 것을 풀어놓았을 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가시적 성과보다는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역사 속에서 잦은 교류가 정세변화에 따라 두절되는 예를 수없이 보았다. 구체적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므로 유기적 사고가 필요하다.

- 장인숙 :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다. 다만 김정일 답방에 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김정일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킨 것이 많아 그 점이 겁이 나는 것뿐이다.
- 김재인 : 남북 모두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성문제가 일순위로 밀려난다. 여성관련 법제에 관해서 얘기해 보자(2안) 북한에는 낙태나 간통에 관한 법안이 폐지됐다. 서로의 장단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 김귀옥 : 서로 다른 법령을 꼭 통일 이후의 문제로 미뤄둘 필요가 있나? 낙태나 간통, 호주제는 우리 민주주의체제하의 우리 자체의 문제이다. 사실 위의 제도가 현실에서 무용지물이란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 안찬일 : 1940년에 남녀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서로 닮아가자’ 라는 말은 추상적이다. 두 개의 체제에서 질보다는 상징적인 것이 중요하다. 가령 북한은 여성의 의회진출이 50%이고 남한은 2%라고 가정한다면 남에서 여성의 의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에 따라 가면 연합체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법률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권의 침해가 심하다. 산하제한을 폐지한 이후 피임을 해제를 강요하였다. 하나의 법률만 가지고 제도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단계별 연구를 통해 서로 수렴해 나가야 한다. 의회나 민주적인 측면에서 지배인, 책임자, 행정관등의 고위직 비율이 북한이 높다. 엘리트 등용 면에서는 남한의 북한의 방식을 수용하면 된다.
- 김원홍 : 법령에 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장인숙 : ‘법’과목에는 없으나 각 교과목의 줄기마다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나 혜택은 다들 알고 있다.
- 김귀옥 : ‘낙태’에 관한 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남한 여성들은 부끄러워한다. 이는 제도적인 차

이라고 본다.

- 장인숙 : 북한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자식 1명은 좋다, 2명을 할 수 없다, 3명은 양심없다’ 라고들 한다. 제도가 있다 혹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다.
- 김재인 :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문현희 : 90년대 3-4분 정도 보도하고 사진을 공개했다. 데모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잘 살면서도 피를 흘려가며 왜 투쟁을 하는가? 그것은 더 잘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 짧은 뉴스를 보면서도 각기 생각들을 했다.
- 장인숙 : 떠도는 말보다는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한다.
- 김원홍 : 남한의 ‘옷 전시’나 ‘음식 만들기’ 와 같은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현희 : 위와 같은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법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 최진이 : 그렇지만 북한에서 그럴 때마다 계속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 문현희 : 북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다. 북한은 도덕적, 문화적 측면에서 강하다. 가정 내 여성의 지위는 달라졌다. ‘나도 사회의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현장에 뛰어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여성을 예전처럼 보지 않는다.
- 김귀옥 : ‘고난의 행군’이 오히려 회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여성의 자립심을 높아졌고 인식에 자극을 받았다.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 김영림 : 변화? 인간에 대한 변화가 가장 타당하다. 사회적 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수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포면화되기 마련이다. 김정일을 아버지로 한 사회의 가정화, 표면화, 정책화는 이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김정일은 철저히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체제에서 변화논의는 성급한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려면 형식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은 철저히 이중사회임을

명심하자. 따라서 있다 혹은 없다는 도식주의밖에 되지 않는다. 보편 혹은 특수 혹은 전통 혹은 암시 혹은 비교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에서 대립의 원인은 가치관이다. 남북/남녀관계 또한 가치관의 문제이다.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동상이몽의 상태이다. 이는 권력의 속성을 감안해야 한다. 남과 북이 변해야 한다. 사실 남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신뢰 ⇒ 믿음 ⇒ 사랑으로

- 장인숙 : 신뢰?
- 김영립 : 이중사회(강제적, 물리적)에서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 거의가 본의가 아니므로 대안을 찾기 힘들다.
- 장혜경 : 조선족, 중국, 북한의 해외연계는 어떤가? 현재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 김영립 : 본인은 중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국의 무역사업을 2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담당했다. 조선족은 두 유형으로 여겨진다. 남조선의 간첩이거나 중국의 간첩(특무)으로 말이다. 중국에 사는 북한국적의 사람들(조교)을 이용한 정보사업을 한다. 탈북자(난민)들이 이들에 의해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조선족이 북한 의식화 추진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라는 말이 이들의 역할을 잘 나타내 준다. 이들의 생활, 습성이 외래에 빠르게 전파된다. 중국의 조선족 여성도 이중적이어서 자신의 이득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 김귀옥 : 이중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냐?
- 김영립 :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최진이 :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한국여성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 김영립 : 비공식적 접촉이 좋다. 제3국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 문현희 : 예술인들은 내부/외부에서 생활을 통일한다.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서로에 대한 ‘인정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 김영립 : 고려호텔에 묵으면 도청국에서 숲소리까지 도청한다. 호텔마다 301호는 보위국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방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다 도청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안산호텔에서 한 당정위원회 비서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가 그 날 저녁에 정치범 수용소

에 끌려간 일이 있다. ‘미행국’ 사람들은 입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곳에 근무한다. 1인당 3-4명이 붙는다고 보면 된다 그 속엔 어린이, 노인, 제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각성해야 한다. 많은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그쪽의 경비가 허술하고 뇌물의 문제 등이 걸려 북경경비(★★★)가 철수했다. 반면 탄압은 강화하고 있다.

- 김재인 : 좋은 얘기 감사하다. 시간상 이만 정리하겠다.

부록 7.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및 여성정책 연구 전문가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협동연구과제인『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일환으로『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및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연합 추진과정에서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남북연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여성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연합과 여성참여, 여성평화운동과 남북한 평화공존, 나아가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진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지의 각 문항별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연구진 : 김재인·장혜경·김원홍
 전 화 : 356-0332 / 356-0070(303/306/310)
 팩 스 : 384-7168 / 384-7164
 e-mail : Janekim@kwdi.re.kr;
 hkchang@kwdi.re.kr;kwh56@kwdi.re.kr

I. 남북연합에 관한 일반적 사항

통일에 대한 염원은 국민 모두의 의지입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을 정부는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1국가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중간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그 성격과 특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북

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도 유사한 단계라고 보여져 합의도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극적인 준비 및 과정진입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본 연구진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의미와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의미

- 남북연합의 의미 : 남북연합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르는 과도기동안 남북한간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형성을 그 목표로 한다. 남북연합은 남북한간의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 공동생활권의 형성,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갖는 과도적인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국방·외교권을 보유하면서, 쌍방정부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관리한다. 남북연합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지니게 된 남북한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란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장명봉, 유석렬, 2001).
-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의미: 북한의 통일방안의 형태는 1980년의 고려연방제안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그 연방정부가 국방 및 외교권을 행사하고 남북의 각 지역 정부는 다른 체제하에서의 자치를 한다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제도이다. 그런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1991년 1월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완전한 연방제 달성에 앞서 잠정적으로 중앙에 상징적인 연방정부를 두고 남북 양지역 정부에 내치권 뿐 아니라, 국방·외교권까지 부여하는 ‘느슨한’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다(유석렬, 2001).

□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 1국가의 조국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입니다. 본래 북한의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인데,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 지역정부에 대해 외교권과 군사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연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한의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는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단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사점: _____

차이점: _____

1-2)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남북연합단계의 성사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 우리가 바라는 남북연합의 구조는 남북간 정상회담,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남북연합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2) 여성의 역할증대와 관련하여 남북연합 구조인 정상회담,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에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남북연합 추진과정에서 상정되는 통일국가의 체제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본주의 바탕 사회체제, 사회주의 바탕 사회체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사회체제, 시장경제바탕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등)

4. 남북연합과정에서 남북한간 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_____

단점: _____

5. 남북연합 추진을 위하여 남북한이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예 중에서 중요한 것 3가지 (1, 2, 3순위)를 적어주십시오.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3) 3순위: _____

- [예]
- 1) 군비축소와 평화협정 체결
 - 2) 한반도 비핵지대화 설정
 - 3) 국가보안법이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이념 철폐
 - 4) 단일화된 통일방안의 형성
 - 5) 남북한정상회담의 정례화
 - 6) 남북한 각료회의의 정례화 및 공동사무처 설치
 - 7) 남북간 경제공동체 설치
 - 8) 남북한 인적교류 확대(자유로운 서신 및 학술, 문화, 체육, 여성 등 상호방문)
 - 9) 언론인들의 자유 취재 및 방송 개방

5-1 위 문제에 5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6. 남북연합 추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한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예 중에서 중요한 것 3가지 (1, 2, 3순위)를 적어주십시오.

1)1순위: _____ 2)2순위: _____ 3)3순위: _____

- [예]
- 1) 정치적 안정
 - 2) 민주화 신장
 - 3) 경제력 강화
 - 4) 사회복지 증대
 - 5) 주한미군 철수
 - 6) 국방비 삭감
 - 7) 국가보안법 철폐
 - 8) 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
 - 9) 남녀차별 해소

6-1. 위 문제 6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7. 남북연합 추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한 정부가 국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예 중에서 중요한 것 3가지 (1, 2, 3순위)를 적어주십시오.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3) 3순위: _____

[예]

- 1) 국제기구(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북한지원
- 2) 북한의 국제경제기구(ADB, IMF, IBRD 등)에의 참여 유도 및 대외관계 개선 지지
- 3) 남북한 연합단계에서의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4)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5) 한국 주도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
- 6)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남북한 대사협의체 구성 등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 7)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동일한 방향의 투표권 행사 등 행동통일 사례 확대

7-1. 위 문제 7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8. 우리의 남북연합안과 유사한 국가연합체를 형성한 국제적 사례들(이집트-시리아, 독립국가연합, 영 연합, 1781년부터 1787년까지의 미국국가연합 등)이 남한과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및 역할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사점: _____

여성의 참여와 역할: _____

II. 남북연합과 여성의 역할

□ 통일 의식과 통일 교육

통일을 앞당기는데 있어서 정치적·경제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문화적 여건조성일 것입니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정서가 긍정적이고 상호 신뢰감이 쌓일 때 가능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성은 평화를 만드는 힘’이라는 구호와 같이 남북한 여성들이 상호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선 접촉하고 교류함으로써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을 통일 의식화 시키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며, 여성평화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한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9. 먼저 남북연합추진 시 여성의 역할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은 남북한 이원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동질체제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이 그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 임시정부 시절부터 민족통일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우익과 좌익의 사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족분단의 비극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모형 (예: 사회변혁형, 의식함양형, 체제유지형, 적응지향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10-1) 선생님께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여성을 위한 통일의식교육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특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10-2) 여성을 위한 통일의식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통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존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공존의 문화형성은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여성의 통일의식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통일의식화 교육은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남북한 여성들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여성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1) 선생님께서는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2) 그리고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무엇이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한 교류협력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여성교류는 1988년 7.7선언이후 남북교류협력지원법이 제정되고 주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는데, 그간 남북한여성교류가 성사된 것은 안건별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4번과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2번과 “중군 위안부관련 국제세미나” 1번, “판소리의 밤 연주회” 1번, “One Korea Festival” 2번, “제4차 북경여성대회” 1번, “조청련 여명과 학술교류협약” 1번, “버클리대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움 참석” 1번 등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이 남북연합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 여성교류가 활성화되어 이질감을 극복하고, 보다 동질감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2.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남한의 NGO 여성들간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북여성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남한여성들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 [예] 1) 여성교류를 실천해 갈 전문인력의 발굴 및 추천
2)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모임 활성화(북한이해 증진 여성모임, 통일여성교육, 세미나, 워크숍 및 문화활동 등)
3)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 가능 주제 개발(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요리대회, 여성의 건강문제, 가정생활, 풍습 등)
4) 남한여성간 대표성 협의기구 설치

13. 남북연합 시 남북간 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한의 NGO 여성들이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음의[예]를 참고하여 모두 적어주십시오. _____

- [예] 1)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류, 생필품, 소자본 등 재정적 지원
2)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제안
3) 국제기구에의 북한여성 참여 유도
4) 북한여성들에게 남한여성에 대한 이해 증대

14. 남북연합 시 남북여성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예] 중에서 중요한 것 5가지 (1, 2, 3, 4, 5순위)를 적어주십시오.

- 1) 1순위: ____ 2) 2순위: ____ 3) 3순위: ____
4) 4순위: ____ 5) 5순위: ____

[예]

- 1)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 2) 통일부에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 3)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기구 및 협상회의에 여성참여 보장
- 4)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여성채널 상설화
- 5) 남북연합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관련 법제화 방안 마련
- 6)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 7)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구축 지원
- 8) 남북한 학술교류 및 여성정책 비교연구 지원
- 9)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류, 상호 신뢰 구축토록 지원
- 10) 남북한 여성간 통일교육의 공교육화와 활성화
- 11) 남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의 공
- 12) 여성의 남북연합 시의 역할 할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13) 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제공
- 14) 남북연합국가 실현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들의 평화운동 지원
- 15) 기존의 여성비정부기구의 평화운동 기능과 상호 연계 강화 지원

14-1) 위 문제 13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평화운동

15. 세계적으로 평화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평화와 평화운동의 개념은 무엇이며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5-1) 평화의 개념 : _____

15-2) 평화운동의 개념: _____

15-3)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이 갖는 중요성:

16. 세계적으로 여성은 평화와 평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여성의 역할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평화운동확산에 기여, 전쟁종식기여 등)

17. 국내의 평화운동의 일부분은 통일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남북연합 추진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으며, 2)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3)우리 나라가 추구하는 통일정책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1) 남북연합추진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이 할 수 있는 역할

17-2) 남한 여성평화운동의 성과와 한계

성과: _____

한계: _____

17-3) 통일정책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

성과: _____

한계: _____

Ⅲ. 남북연합의 추진과 여성정책

18. 남북연합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성정책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

- 1) 남북연합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각종 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 2)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실업대책 및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 설치
- 3)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모색 및 실천적 모델 개발
- 4) 통일여성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육성

19.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이 함께 해결되어야 할 여성정책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예]

- 1) 남북연합 당시의 각료회의 및 사무처 등 남북협력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 2) 남북한 여성공동의 장과 어린이집 설치.
- 3)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정보교류네트워크의 구성
- 4) 남북한 통일관련연구 및 지속적인 학술교류 강화

20. 전반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1)구체적인 여성의 역할과 2)이를 위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 여성의 역할: _____

20-2) 과제: _____

21. 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남북연합과 평화공존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